
2020년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 일러두기 >

-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지침이며,
 - ◆ 시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 실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주시의 공식적인 긴급구조대응계획이며, 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 또는 재난대비훈련에 따른 긴급구조 대응활동 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

2020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4.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진주소방서 직 책 : 진주소방서장 성 명 : 김 홍 권(서명 또는 인)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7.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진주시 도시건설국 직 책 : 도시건설국장 성 명 : 정 중 채(서명 또는 인)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7.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진주경찰서 직 책 : 진주경찰서장 성 명 : 김 정 완(서명 또는 인)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6.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진주시보건소 직 책 : 진주보건소장 성 명 : 황 혜 경(서명 또는 인)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2020년도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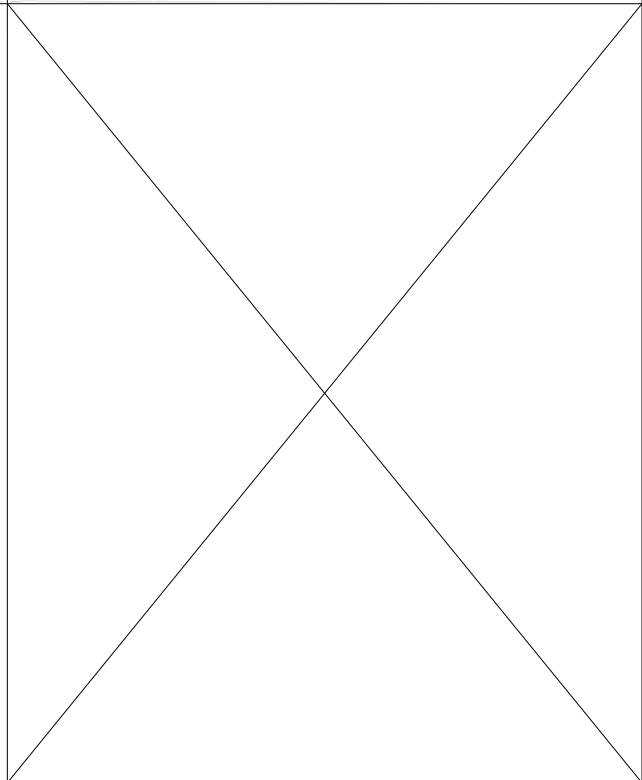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7.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8361부대 1대대 직 책 : 1대대장 성 명 : 강 지 혁 (서명)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7.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한국전력공사 진주시사 직 책 : 진주시사장 성 명 : 정 만 길 (서명)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2020년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안)		
심의내용	대규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와 대응방안을 확립을 위한 2020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근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30조		
심의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항을 수정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	可	否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2020. 2. 17. 진주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소 속 : KT 진주시사 직 책 : KT진주시사장 성 명 : 하 우 열 (서명)			
진주소방서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장 귀하			



용어정의

- **구급차대기소** :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임시 대기하는 장소
- **기관별지휘소(기관별 비상대책상황실)** :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당해기관 소속직원을 지휘·조정·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 **긴급구조(긴급구조 대응활동,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 **긴급구조관련기관**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 같은법·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 **긴급구조대응계획(긴급대응계획)** :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및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계획서
- **긴급구조요원** : 긴급구조에 참가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소속직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지원기관, 유관기관단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긴급구조지휘대(긴급구조현장지휘대, 현장지휘대)**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원, 경찰관서의 연락관, 응급의료기관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사고와 재난발생 초기(통제단 운영 전) 상황에서 현장지휘를 담당

- **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긴급방송체제**(긴급방송체계, 비상방송체계, 비상방송시스템) : 라디오, TV 등 방송을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하는 단계
-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2단계**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대응3단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 **비상경고**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긴급히 전파하는 대피명령 등 주민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
- **비상경고체제**(비상경고시스템, 비상경고체계) :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 사이렌,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

- 비상연락통신체계(비상 지휘소 Hot-Line) :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 주요 지휘관간의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통제단) : 소방서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통제단) : 시·도의 소방본부에 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됨
-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및 시설
- 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특정장소에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자원의 임시집결지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대응구역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마비된 경우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소방지휘작전실 3C 센터, 유관기관협조체제) :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지휘본부 상호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의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간 통신조정시스템
- **표준현장지휘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구조,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 **현장지휘관** :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사전명령이나 위임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의 지휘대장 또는 선착대의 장
-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및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단의 현장지휘부서이며, 구조진압반·응급의료소·현장통제반 및 항공통제반으로 구성
- **현장지휘소**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기관별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조정·통제하는 등의 재난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

목 차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3
1. 목 적	3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3
2.1 재난위험성 분석	3
2.2 계획적용 범위	4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4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4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5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7
3.4 초기대응	7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8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10
5. 계획서의 운용책임	12
5.1 일반 책임	12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13
제2절 긴급구조체제	20
1. 긴급구조통제단	20
1.1 운영책임	20
1.2 통제단 운영조직	20
1.3 현장지휘	21
1.4 설치장소	21
1.5 기 능	21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22
1.7 상황판단회의	22
1.8 운영규모 및 기간	23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24

2. 상황실	25
2.1 운영체제	25
2.2 위 치	25
2.3 대체 119종합상황실	25
2.4 정보통신체계	26
3. 통합지휘체계	29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29
3.2 통합지휘팀	30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1
4. 통제단-대책본부의 연계성	34
4.1 상호협조관계	34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34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34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34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35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36
5.1 자원집결지	36
5.2 자원대기소	36
5.3 수송대기지역	36
6. 재난대응구역	37
6.1 운영개념	37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37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38
6.4 대응구역 통신	38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39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1절 지휘통제계획(#1)	43
1. 목 적	43
2. 조직 및 운영	43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43
2.2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46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48
2.4 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49
3. 임무수행	50
3.1 총괄지휘부	50
3.2 대응계획부	56
3.3 자원지원부	60
3.4 현장지휘대	75
3.5 긴급복구부	87
제2절 비상경고계획(#2)	89
1. 목 적	89
2. 조직 및 운영	89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90
4. 임무수행	90
4.1 재난대비 임무	90
4.2 재난신고의 접수	90
4.3 비상경고 발령	91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92
4.5 인접 119상황실 통지	92
4.6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	93
4.7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93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94
4.9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94

제3절 대중정보계획(#3)	95
1. 목 적	95
2. 조직 및 운영	95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96
4. 임무수행	96
4.1 연락공보담당	96
4.2 대중정보센터	100
4.3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102
제4절 피해상황분석계획(#4)	103
1. 목 적	103
2. 조직 및 운영	103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05
4. 임무수행	105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105
4.2 초기 조사	105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106
4.4 최초보고	106
4.5 재난사태 선포	106
4.6 지원요청	106
4.7 정보의 표시	107
4.8 대중정보 제공	107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107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107
제5절 구조·진압계획(#5)	108
1. 목 적	108
2. 조직 및 운영	108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09
4. 임무수행	110
4.1 수색 및 구조	110

4.2 안전점검	110
4.3 비상발전 및 조명	110
4.4 가스 차단	111
4.5 오염제독	111
4.6 방사능 탐지	111
4.7 고립주민 원조	111
4.8 자원집결지	111
4.9 응급의료	112

제6절 응급의료계획(#6) 113

1. 목 적	113
2. 조직 및 운영	113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16
4. 임무수행	117
4.1 현장응급의료소장	117
4.2 중증도분류반	117
4.3 응급처치반	118
4.4 이송반	119
4.5 의료자원지원반	120
4.6 임시영안소	121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122
4.8 응급의료 통신(예)	122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123

제7절 긴급오염통제계획(#7) 125

1. 목 적	125
2. 운영조직	125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27
4. 임무수행	127
4.1 긴급 오염통제반장	127
4.2 식품오염통제팀	128

4.3 감염병 통제팀	129
4.4 환경오염통제팀	130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131
제8절 현장통제계획(#8)	132
1. 목 적	132
2. 조직 및 운영	132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33
4. 임무수행	133
4.1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134
4.2 교통지원팀	138
제9절 긴급복구계획(#9)	140
1. 목 적	140
2. 조직 및 운영	140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42
4. 임무수행	142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 시·도청 등	142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소방본부(소방서)	143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경찰(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144
4.4 비상전력 공급-한국전력 긴급복구팀(지역본부 또는 지사)	145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가스 긴급복구팀(지역본부 또는 지사)	146
4.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 - 민간 안전진단팀	147
4.7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지역본부 또는 지부)	148
4.8 통신 - KT긴급복구팀	149
4.9 기타(필요에 따른 임무 목록)	149
제10절 긴급구호계획(#10)	150
1. 목 적	150
2. 조직 및 운영	150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52

4. 임무수행	152
4.1 대피수용팀	152
4.2 구호자원지원팀	155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58
1. 목 적	158
2. 조직 및 운영	158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159
4. 임무수행	159
4.1 119종합상황실 통신시스템	159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160
4.3 대체 119종합상황실 통신	161
4.4 현장지휘소 통신	161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161
4.6 대피소와의 통신	161
4.7 통신 유지관리	162
4.8 119종합상황실 메시지 흐름	162
4.9 지원 및 후생업무	162

제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165
1.1. 홍수(집중호우)	165
1.2 태풍	171
1.3 폭설	177
1.4. 지진	184
2. 사회재난	191
2.1 붕괴사고	191
2.2 가스폭발	196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00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205

부 록

1. 각종현황	1
1. 각 지원기관 지휘소	1
2.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통제단	1
3.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1
4.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2
5.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3
6.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4
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5
8.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6
9. 주요기관 목록	7
10.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8
11. 2019년 진주시 중점관리대상 현황	9
12.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라디오 방송국)	10
13.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10
14. 현장응급의료소 및 의료기관 현황	11
15. 지하대피소 현황	14
2. 서식	18
1. 긴급구조대응지침서	18
2. 상황예측 매뉴얼	19
3. 상황요약절차	20
4. 상황요약양식	21
5. 재난상황보고서	22
6. 재난상황보고서(통보서)	23
7.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24
8.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25

9. 응급부담 명령서	26
10. 응급부담 확인서	27
11. 지휘권이양협약서	28
12. 긴급통제단 운영일지	29
13. 병원별 수용능력표	35
14. 사상자 이송현황	36
15.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37
16.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	37
17. 사상자 조치현황	38
18.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39
19. 자원동원매뉴얼	43
20.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44
21. 피해상황분석편람	46
22. 최초보고서	47
23. 지원요청서	48
24. 대중정보보고서	55
25. 피해상황최초보고서	49
26. 피해상황분석반 표준작전절차	50

3. 참고자료 51

1. 표준현장지휘체계	53
2.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구조대응매뉴얼	54
3. 지진 규모별 상황관리	55
3-1. 지진규모 및 진도에 따른 현상	55
4.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56
5. 비상경고메시지(예시)	57
6.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59
7.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73

기 본 계 획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 목 적

이 계획은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주시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 활동 및 재난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 그리고 국가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과의 연계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대응계획서이다.

2. 재난위험성 분석 및 계획적용 범위

2.1 재난위험성 분석

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유형과 위험도 순위는 아래와 같다.

《 재난유형별 위험도 》

재난유형	발생가능성(빈도)			위험도(피해량)			등급 (발생가능성 × 위험도)	순위
	상(3)	중(2)	하(1)	상(3)	중(2)	하(1)		
대형화재	*			*			9	1
교통사고	*					*	3	4
폭발	*			*			9	1
항공기사고			*	*			3	4
화생방사고		*		*			6	2
붕괴		*		*			6	2
호우	*					*	3	4
홍수	*			*			9	1
태풍	*			*			9	1
폭설		*		*			6	2
지진		*		*			6	2
가뭄		*			*		4	3
조류독감		*				*	2	5
테러			*			*	1	6
수상사고			*		*		2	5
산악사고		*			*		4	3
구제역	*					*	3	4

※ 현장대응단-427,428호(2020.01.13.) 진주시 재난위험성 평가를 위한 자료조사에 의함

2.2 계획적용 범위

- 기본계획과 기능별대응계획은 재난위험 분석결과에 나타난 재난유형과 기타 모든 형태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각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재난유형별 계획(유형별 대응상의 방법과 절차)은 각각의 재난유형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2.2.1 자연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2.2.2 사회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화재(산불 포함),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축물 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인적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재난발생에 대비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대응방침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4(재난대비 훈련 등) 및 15(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 훈련 필요성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
 - 신속·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상시 훈련체제 구축



-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통제단 부·반원 및 각 기관 임무·역할을 수행
 - 대상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년 1회 실시
 - 참여범위 :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 긴급구조관련기관(경찰, 군, 지자체, 공사 등)
 - 훈련내용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통제단 가동능력 점검, 통합지원본부 가동 점검
 - ※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지역긴급통제단 연계 가동 「국가단위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실시(연 2회)

- **(불시훈련)**
 - ① 비상연락망 불시점검훈련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점검을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황실에서 일제동보장치를 가동, 긴급구조지원기관 응답률 평가
 - 실시횟수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각 월 1회
 - 실시방법 : 동보장치 활용 응소율, 비상연락망 정비상태 점검
 - ②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 재난발생 장소·상황을 설정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분기 1회)

- **(도상훈련)**
 - ① 기관합동 도상훈련(연2회) : 유관기관이 참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가정 통제단 각 부·반 및 지원기관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 ② 기능숙달 도상훈련(월1회)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요원의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하는 발표·토론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가.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 제55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4조, 제66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호

나. 교육개요

- (대 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관리자, 담당자
- (교육기간) 신규자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 관리자(1일, 7h), 실무자(2일, 14h)
- (운영체계) 각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주관으로 중앙·지방소방학교와 협조하여 교육 실시
 - 소방본부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연간 교육계획 수립·운영
 - 중앙·지방학교 : 교재개발,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관파견 및 교육운영
 - ※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소방서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예시) 장소 : 소방서 회의실에서 소집교육
- (강 사) 학교 재난교수, 교관요원, 소방서장 등 간부
- (교 재) 8과목*, 2권, 1~2월(중앙소방학교 => 교재파일 소방서 공유)
 - ┌ 1권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평가실무, 자원관리, 긴급구조실무)
 - └ 2권 재난관리(국가재난관리, 재난법,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체계)
- (교육유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기관통보, 교육수료시 학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다 지원기관 협조사항

- 관할소방서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수요 제출
-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참석 독려(신규자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정기교육 매2년마다)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 법적근거
 - 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
- 추진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 · 분배와 현장 통제로 혼란방지 및 효율적 재난대응
- 실시개요
 - 평가주기 : 년 1회(시행령 제66조의4 제1항)
 - 평가기관 및 대상기관
 - 소방본부 : 시 · 도 소재 지방청, 공공기관 지역본부 등
 - 소 방 서 : 시 · 군 · 구 소재 공공기관 · 단체 및 지사 등
- ※ 2 이상 긴급구조기관과 관련된 지원기관 평가 → 주된 소재지 관할 긴급구조기관이 평가
- 평가절차 : 개선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지침(2018.11.08.시행) 참조
- 평가결과 활용
 -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재난현장 대응활동 시 신속한 자원동원 등 지원협업체계 강화

3.4 초기대응

- 일반적으로 재난(테러, 자연적 재난 등 제외)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는 최초의 대응 기관이다. 소방관서는 초기의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재난의 규모와 대응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시작한다.

3.4.1 일상적 소규모 사고

- 만약 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단순한 사고인 경우 소방과 현장대응에 필요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며,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3.4.2 재 난

- 만약 비일상적 대응절차가 필요한 중규모 이상의 재난이거나 다수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참여가 필요하여 다수 유관기관의 지휘통제가 필요한 경우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의 전반적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때, 통제단장은 개략적인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사항을 요청한다.

- 만약, 재난의 규모가 시·군·구통제단 차원의 동원자원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고 시·도통제단이 운영될 경우, 통제단장은 지역재난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건의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법령에 승인된 권한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 제10항)
- 통제단장은 지역재난 선포가 있는 후 긴급한 대응활동이 종료되고, 재난현장의 위험상황이 진압된 경우에는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 선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국가차원의 자원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 지원을 요청하고,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긴급대응협력관 주요임무
 - (평시 임무)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소속기관 보유자원 관리
 - (재난시 임무)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 협조,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재난관련업무 부서의 실무책임자 중 지정
- 긴급구조대응협력관 수행업무
 -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긴급구조 관련 보유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 등 재난대응 업무의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활동 지원 등 해당기관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변경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사실을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초기대응

-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 재난시 동원된 각 요원의 일상 업무는 이 계획상의 임무로 대체된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포함)의 각 요원(대응계획상의 필수요원)은 119종합상황실 비상경보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되고, 이 계획상의 임무와 현장에서 분담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각 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해당기관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에 임함**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나. 평가기준 및 절차

- 평가대상
 1. 재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실시한 대응활동
 3. 기타 중앙통제단 또는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활동을 실시한 사고에 대하여 대응활동에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나.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통제단장) 및 단원 5 ~ 7인
 - ※ 구성 : 통제단장, 통제단 부·반장,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요원 등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표를 활용 평가(본부, 서별 연1회 이상 원칙)
 - ※ 세부평가표는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참조

다. 평가내용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운용
- 긴급구조대응계획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 통합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체계
- 긴급구조교육·훈련 실적
- 그 밖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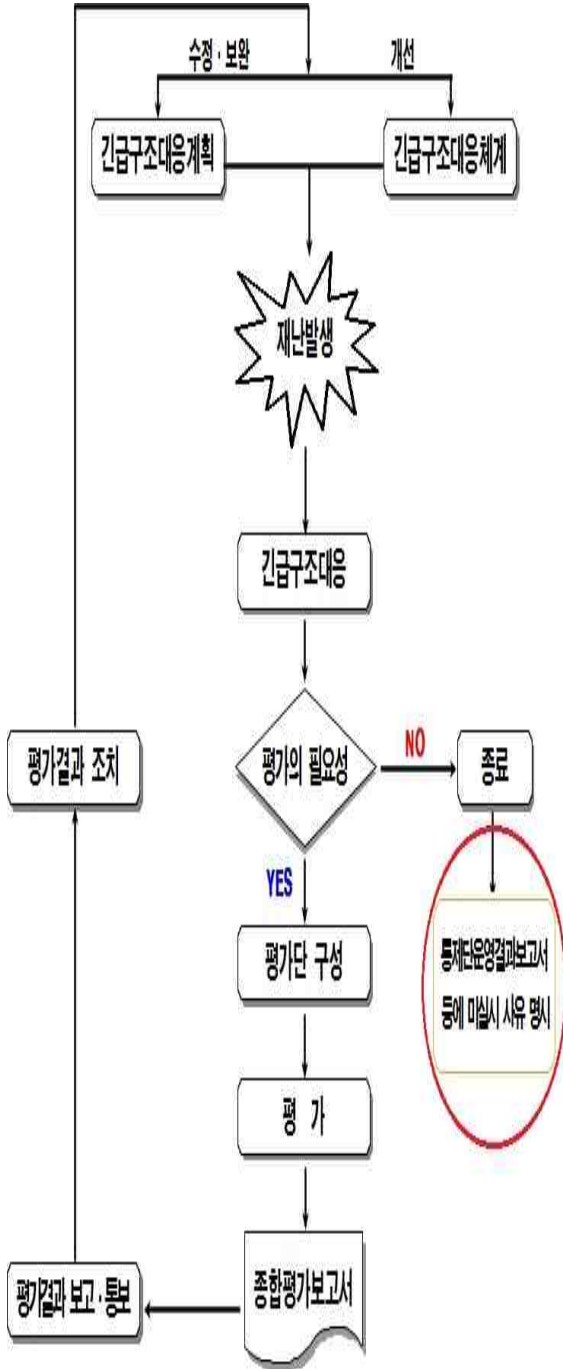
라. 평가 미실시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과의 활동평가를 미실시 할 경우 통제단운영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 기록 관리

긴급구조활동 평가절차

< 평가절차 흐름도 >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1)



평가의 필요성 판단

-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평가대상 해당여부, 평가실시 필요성 등 결정
-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실시
- 평가 미실시 경우 통제단운영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 명시 기록·관리



평가단 구성

- 평가단장은 통제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등 평가근거자료 조사



평가

-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별 1~5점까지 평점 부여 후 평가표 작성, 평가위원장에게 제출
- 평가위원별 평가표를 취합하여 평가실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취합된 평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평가단의 결을 거쳐 확정



평가결과 조치

- 통제단장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 등 필요 대책 수립·추진
-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장이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평가결과 통보

5. 계획서의 운용책임

5.1 일반 책임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일반책임이 있다.
-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한다.(『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30조)
 - 필요에 따라 이 계획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응능력을 유지한다.
 -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 장비, 시설들을 현장에 배치한다.
 - 임무수행 중 작성하는 각종 기록서식, 대원과 장비의 재배치, 부여된 임무의 수행, 현장 안전관리, 자원배치현황을 작성·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절차들을 확인·감독한다.
 - 통제단장에 의해 지시된 사항이 재난대책본부 및 기타 지원기관의 지휘소에 시기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 계획과 지원계획에서 정한 재난시 행동절차들을 훈련(연습) 및 평가하는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
 - 각 요원이 이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지원기관 지휘관(연락관) 및 자원봉사자는 통제단의 전반적 피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필요시 현장의 대응요원에게 인력, 장비, 시설 등 즉각적 지원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자원대기소를 설치 운영한다.
 - 현장 자원대기소는 각 통제단(현장지휘소)이 운영하는 통합적 현장대기소와 각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현장 자원대기소가 각각 운영될 수 있다.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5.2.1 지휘통제 계획(기능별 계획 #1)

- 이 기능별 계획 #1은 재난대응의 전반적 지휘통제절차를 규정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과 각 지원기관의 장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필요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자원 동원
 - b.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가동
 - c. 대응작전 계획(대응방침) 승인 및 재검토
 - d.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자원을 배치하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재난현장대응 및 긴급복구 활동 관리·통제
 - e. 재난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를 포함한 생명과 재산상 보호조치
 - f. 현장대응요원과 지원기관의 현장대응정보, 대응계획부의 상황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보호조치(긴급대피,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g. 필요하다면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책본부, 상급 통제단 등에 추가적인 지원요청
 - h. 필요하다면, 일상적 행정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 및 자원 재배치
 - i. 주요 상황기록 자료를 관리
 - j. 이 계획에 포함된 각 지원기관과의 임무를 조정하고,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5.2.2 비상경고 계획(기능별 계획 #2)

- 이 기능별 계획 #2는 각 유관기관에 대한 비상연락과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시스템의 전반적 운영절차를 규정한다.
-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통합지휘조정통제 센터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권자(시장, 통제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대응계획의 가동 (비상체제 가동) 시점으로서의 기능-수행
 - b.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필요시 즉각 긴급대피시스템 가동
 - c.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d. 이 계획서 상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기타 주요 인사에 대한 비상경고 및 비상연락 실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말하는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곳은 상황실이 이 기능을 하도록 작성할 것

5.2.3 대중정보 계획(기능별 계획#3)

- 이 기능별 계획 #3은 재난지역주민, 언론매체, 시장, 의회의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진주시장 및 통제단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연락공보담당이 계획서에 대한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신속한 주민보호정보(뉴스) 제공을 위한 지역언론매체와 119종합상황실간에 설치된 주민보호 긴급방송체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 b.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비상방송매뉴얼(메시지)을 개발 및 유지·관리
 - c.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VIP에게 주요상황에 대한 브리핑
 - d.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중정보의 요청(질문)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5.2.4 피해상황분석 계획(기능별 계획 #4)

- 이 기능별 계획 #4는 피해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에 대한 계획이다.
- 이 계획은 재난발생 장소와 관련자료 수집, 현장지도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응계획부장이 이 계획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 시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
 - b. 통제단의 재난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장지휘대장, 기타 주요 참모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
 - c. 자원의 배치 및 활용상황을 감독하고 필요시 추가자원을 조달
 - d.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상급 통제단장에 지원요청
 - e. 보고서 준비

5.2.5 구조진압 계획(기능별 계획#5)

- 이 기능별 계획 #5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일반적인 소방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계획으로, 진주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이 임박한 경우 대중에게 비상경고체제(기능별 계획 #2) 가동
 - b. 적절한 재난통신체계(기능별 계획 #11) 확립
 - c. 인명구조를 실시
 - d. 필요시 오염제거 및 확산방지 임무를 수행
 - e. 필요시 긴급대피 결정을 내리고 경찰 연락관과 협조
 - f. 주민보호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연락공보담당과 대응계획부에 제공
 - g.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수단들을 발표 실행
 - h. 구조 진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지역의 교통통제 및 일반인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경찰 연락관에게 협조 요청한다.

5.2.6 응급의료계획(기능별 계획 #6)

- 이 기능별 계획 #6은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시의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춘 응급의료소장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인력, 구급차, 응급의료시설,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을 조정·통제
 - b. 임시영안소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5.2.7 긴급오염통제 계획(기능별 계획#7)

- 이 기능별 계획 #7은 재난시 긴급오염통제(감염병 등 생물학적 재난에 한한다.) 및 공중보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계획에 대한 가동과 대비책임은 긴급오염통제반장에게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오염통제 및 공중보건에 대한 조치사항 발표 및 수행
 - b. 재난발생지역내 긴급오염통제 및 보건위생자원의 전반적 배치 및 관리 조정
 - c. 전염성 질병의 역학조사 및 억제활동을 지시 통제
 - d. 주민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예방책 강구
 - e. 식수를 보급하고 식수로 사용가능한 물의 조건에 대해 규정 발표

5.2.8 현장통제계획(기능별 계획 #8)

- 이 기능별 계획 #8은 진주시 관할구역 내 현장통제 및 치안유지에 책임이 있고, 법 질서 유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조정·통제 할 수 있는 진주경찰서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재난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역주민 및 주요 재난관련 직원에게 전파 지원
 - b. 비상경고(기능별 #2) 계획을 지원
 - c. 대책본부, 통제단, 재난발생지역, 119종합상황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보장 활동 수행
 - d. 긴급대피(소개) 절차 수행
 - e.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
 - f. 재난발생지역 및 위험지역에의 일반인 출입 통제
 - g. 필요시 통행금지 실시
 - h. 탐색구조 및 경상자 이송업무 지원

5.2.9 긴급복구(기능별 계획 #9)

- 이 기능별 계획 #9는 긴급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2차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임시) 복구활동에 책임이 있는 긴급복구반장이 이 계획서의 가동과 대비의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고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9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 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업을 포함)자원의 사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
 - b. 붕괴사고 등 중장비를 사용한 구조작업 지원
 - c. 통제단장(통합지휘팀)의 승인을 받아 재난으로 인한 잔해물을 긴급 제거, 처리
 - ※ 재난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다.
 - d. 구급차 통행로, 긴급구조 비상출동자원 수송로를 확보 유지
 - e.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의 수송, 분배, 저장(보관)임무를 지원
 - f. 교통로 확보에 필요한 자원(자재, 인력, 장비 등) 제공
 - g. 비상전력을 공급
 - h.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 협력업체의 동원 및 배치임무 조정
 - i. 2차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적·공학적 정밀검사 실시

5.2.10 긴급구조계획(기능별 계획 #10)

- 이 기능별 계획 #10은 재난희생자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재난심리 상담, 의식주, 수송을 포함한 긴급구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긴급구조기능은 다수의 공·사적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 이 계획의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은 긴급구조반장(소속기관 및 직책명)에 있다.
- 자치단체 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이 기능별계획 #10의 지휘권은 대책본부장의 승인 하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된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구조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조정 통제
 - b. 긴급대피한 이재민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식사와 의류보급 등 긴급 구조서비스 제공
 - c. 재난심리상담프로그램(외상 후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과 기타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 조정 통제
 - d.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임시숙소 및 긴급대피소 임시 운영
 - e. 주민과 긴급구조 활동에 참가한 인력에게 비상수송서비스 제공
 - f. 실종자 수색, 노약자 도우미 등 재난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조정 통제

5.2.11 재난통신계획(기능별 계획 #11)

- 이 기능별 계획 #11은 재난통신체계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요원, 통신장비, 긴급 통신메시지 흐름에 대한 감독능력을 갖춘 경상남도 소방본부 상황실장(또는 3C 센터장)이 이 계획 가동 및 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통제단과 대책본부, 통제단과 지원기관, 주요 지휘관간의 통신체계 및 통신절차 확립 조정
 - b. 상급 통제단, 인근 지방자치단체 통제단, 자원동원 매뉴얼상의 주요 공·사기업체, 자원봉사단체, 기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단체간의 통신체계 확립·유지
 - c. 현장대응활동에 참가한 주요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가 설치된 경우 이들 현장지휘소와 통제단간의 통신체계 확립
 - d. 비상방송메시지 등 메시지관리 책임자의 119종합상황실 배치 및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메시지 수정보완 및 전달절차 조정통제
 - e. 3C 센터의 근무인원을 보강하고 지원기관단체의 추가 통신 연락관의 파견근무 요청

제2절 긴급구조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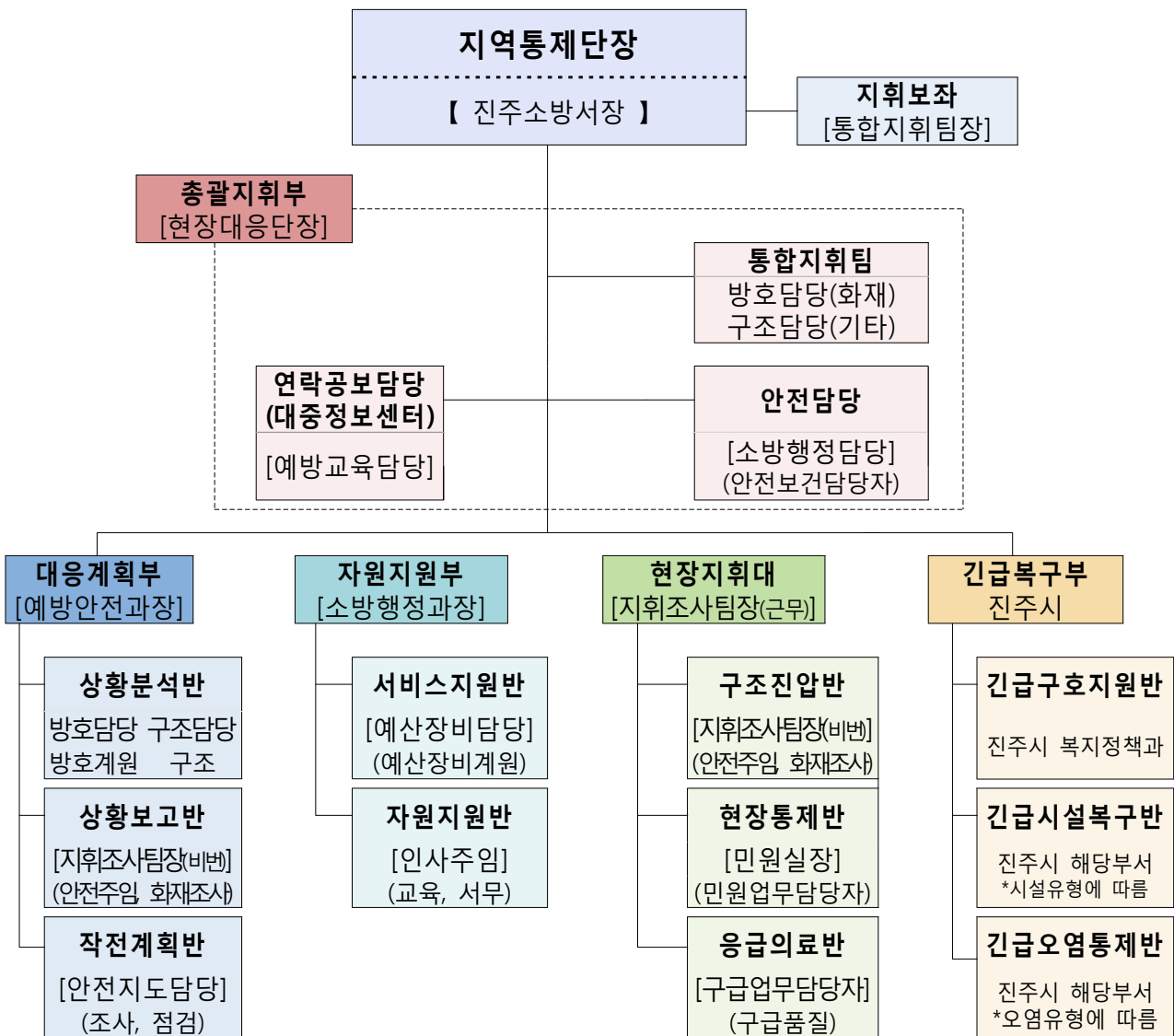
1. 긴급구조통제단

1.1 운영책임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통합조정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진다.

1.2 통제단 운영조직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



1.3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는 사천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 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 내용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내용에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1.4 설치장소

- 긴급구조통제단은 사회재난(국소지역 재난)시에는 현장에 설치하고, 자연재해(광범위한 지역재난)시에는 지휘작전실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이 규모, 각종 여건 등을 고려, 적의 판단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은 주요 지원기관 및 진주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통제단 운영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1.5 기 능

- 긴급구조통제단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하여 진주시 차원의 긴급구조 활동을 통합 조정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소는 긴급구조통제단에 해당 지휘소의 가동여부와 운영 위치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지원기관의 장은 시 전역에 걸친 대응활동의 통합조정을 위한 지원책임을 진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초기 재난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기능과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활동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가동되는 중앙현장지휘소의 역할을 한다.

1.6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시기

- 긴급구조통제단은 대응1단계 이상에서 가동된다.
- 재난시 진주시 통제단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요 지원기관(부서)의 일상적인 운영체제는 일시 중지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된다.

1.7 상황판단회의

- 개최시기 :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 회의주재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 회의참석 :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장(필요시 반장), 재난주관 부서의 과장, 긴급구조 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
- 주요결정 사항
 -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확대가능성, 피해현황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종합분석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여부와 운영단계 및 운영시기
 - 진행되고 있는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8 운영규모 및 기간

-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규모는 재난상황 및 규모에 의해 통제단장이 각 부장의 상황 판단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이 경우, 통제단장은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 상황 및 규모에 따라 통제단 운영규모 및 구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1.8 대응단계별 통제단 운영개념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 차원의 긴급구조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발생 상황. 긴급구조지휘대(소방·경찰·응급의료)의 일상적 현장지휘체계가 운용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한다. 상황실에서 사고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부분적 운영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통제단(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소방본부 통제단(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가동된다. 부분 가동되는 소방본부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소방서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일상적 업무수행이 곤란, 경상남도 차원의 전면적 지원 필요, 중앙통제단의 지원활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구 및 시·도통제단이 완전 가동되며, 중앙통제단 일부 또는 전면 운영된다. 시·도 통제단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한다. 진주시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의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한다.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긴급대응계획에 참여하는 모든 지원기관은 통제단 운영요원을 배치시킨다. 	

1.9 각 반별 조직 및 임무

- 긴급구조통제단은 4개의 하위단위조직(부)을 가지고 있다.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응계획부 : 재난상황분석, 대응정책 개발, 우선순위 결정, 전반적인 대응활동의 조정
 - 현장지휘대 : 기능별 대응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대응활동을 총괄 조정·통제
 - 자원지원부 : 통제단 각 부의 업무지원 및 현장대응자원을 제공
 - 긴급복구부 : 긴급시설복구, 재난희생자의 긴급구호, 긴급오염통제 등의 총괄 조정
- 통제단 부서별 책임자 지정 : 기능별 계획 #1(지휘통제) 참조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임무 》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응계획
진주시 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 지휘통제계획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 전반적 대응목표 및 전략 결정,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기타 통제단장 지원활동	- 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
	연락공보담당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계획
	안전담당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지휘통제계획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 지휘통제계획 - 피해상황분석계획
	상황보고반	-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지휘통제계획
	작전계획반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 지휘통제계획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 지휘통제계획 - 재난통신계획
	자원지원반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지휘통제계획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 각 시·군·구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기타 각 시·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자원대기소 운영	- 구조진압계획
	현장통제반	- 시·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현장통제계획
	응급의료반	-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사상자 현황과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응급의료계획
	항공통제반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 항공구조활동 지 침
긴급복구부	긴급구호반	-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 긴급구호계획
	긴급시설 복 구 반	-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긴급복구계획
	긴급오염 통 제 반	-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군·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 오염통제계획

2. 상황실

2.1 운영체제

- 상황실의 운영체제는 재난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다르다.
- 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심각한 경우(대응3단계)에 119종합상황실이 완전 가동되고, 현장대응활동의 통합지휘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된다
- 119종합상황실의 비번조(교대조) 및 통제단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에 의해 비상동원 된다.
- 각 지원기관은 비상출동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 및 3C 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상시 파견대상 기관은 필요에 따라 보강근무 요청

2.2 위치

-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본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2.3 대체 119종합상황실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정상적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119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 대체 119종합상황실은 진주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이 되며, 진주소방서 2층에 위치하고 있다.
- 대체 상황실로 지정된 곳에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준하는 기본적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2.4 정보통신체계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체계의 구성요소를 기술한 것이다.

2.4.1 진주시 비상연락통신체계(비상지휘소 Hot-line)

- 이 체제는 진주시의 주요 지휘관간 유무선전화망으로 구성된 Hot-line 이다.
- 재난 및 비상사태시 진주시장, 진주경찰서장,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등 진주시 핵심 간부와 지휘소와의 재난발생 초기 비상통신 연계를 위해 설계된 것이다.

2.4.2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진주시 아마추어 무선(HAM), 응원협정을 체결한 각 택시 사업장(TRS), 기타 긴급구조 통신망훈련에 참가하는 통신자원봉사자간의 통신네트워크이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의 구성원은 긴급구조활동시 통신지원 임무를 맡는다.
- 이 임무에는 긴급구조통제단 통신지원팀 보조, 119종합상황실 운영지원 외 다음과 같은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 a. 대규모의 자원봉사자 통합관리를 위한 각 대별 통신원 역할 수행. 정기적 통신훈련 실시
 - b. 진주시 재난대응구역과 시 긴급구조통제단간 통신 연계 제공
 - c. 통신자원봉사자 지원임무
 - d. 긴급대피정보 확산
 - e. 진주시 전역에 대응요원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수송대기지역 통신망” 제공
 - f. 메시지 센터 운영지원
 - g. 도보, 자전거, 차량 메시지 전달
 - h. 재난발생시 통신 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술상의 지원
 - i. 통신자원봉사자 근무기록
 - j. 기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긴급의사전달 임무 등

2.4.3 긴급구조보조통신체계 조직

- 긴급구조 보조통신체계는 소방본부 통제단 자원지원부 통신지원팀이 조직하고 운영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 서비스는 통신지원팀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
- 긴급구조 보조통신 서비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 및 요원은 연 4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긴급구조 보조통신시스템	
조직망	운 영
자원관리통신망	각 대응구역별 배치되는 재난대응자원을 시군구 및 시도 긴급구조통제단과 연계
수송통신망 (수송대기지역)	긴급구조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육해공 수송수단간 통신망 제공. 진주시 전역에 위치한 무선중계국 교환원을 119종합상황실 보조통신담당자에 연결(추진예정)
특별망	긴급구조통제단을 특정 재난지역과 연계
비상통신망	재난상황에 따른 임시통신망 구성

2.4.4 비상경고시스템

- 119종합상황실 비상경고시스템은 각 방송사(신문매체 포함) 및 주요 민간 무선중계국에 경보 및 주민보호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재난 공공정보를 배포한다.
- 119종합상황실 비상경고시스템은 각 대응구역별 비상경고시스템 및 소방청 비상경고시스템과 연계된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다.

2.4.5 3C 센터

- 119종합상황실 3C 센터는 재난발생시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에 의해 통합운영되는 주요 지원기관간 통신조정시스템이다.
- 이 통신시스템은 현장대응활동을 수행하면서 각 지원기관간 통신 및 기타 긴급구조 관련 비상통신시스템을 중계 또는 연계하기 위한 중앙 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 이 시스템은 대응2단계와 대응3단계에서 가동된다.

2.4.6 긴급방송체계(비상방송시스템; 긴급구조 케이블 TV 방송국)

- 이 케이블 TV는 일상적으로, 혹은 재난발생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비상경고, 긴급대피, 기타 공공정보의 핵심 요소를 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상남도 전용 TV 채널이다.
- 119종합상황실에 위치해 있는 이 방송국에서는 자치단체장, 통제단장이 직접 방송을 할 수도 있다.

- 또한 소방본부 옥상에 설치된 위성안테나로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긴급메세지 위성방송 중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긴급방송 및 중대발표가 가능하다.
- 비상경고 메시지의 내용은 비상경고시스템 또는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해 전파된다.

2.4.7 이동 지휘통제시스템

- 이동 지휘통제시스템은 소방본부 통합지휘차에 탑재되어 있다.
- 소방본부는 현장지휘소에 소방본부 통합지휘차를 배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 지휘소(지휘소)는 통합지휘차의 인근에 위치하여 유기적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한다.
- 각 지휘통신차량은 지휘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회전경광등을 장착하고 현장대응기간(특히 야간) 동안 작동시킨다.

3. 통합지휘체계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1.1 통합지휘 개념

-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하나의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전반적 대응체계를 말한다.
- 통합지휘는 현장지휘대, 표준현장지휘체계, 3C 센터, 긴급구조통제단 통합지휘팀을 통해 확립된다.

3.1.2 통합지휘 적용기준

-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합지휘체계(통합지휘팀)를 가동한다.
 - 2개 이상의 관할구역(자치단체)에 걸친 재난
 - 하나의 관할구역 내 다수의 지원기관(국가기관을 포함)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

3.1.3 통합지휘 책임

-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각 재난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 기능별계획 가동책임이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통제단장의 통합지휘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3.1.4 단계별 통합지휘절차

대응단계	통제단 운영	통합지휘(팀) 운영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소방서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가 통제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원기관 연락관은 현장지휘대장과 공동으로 소속 기관의 대응 자원을 통합 조정한다. -3C 센터, 통합지휘팀은 운영되지 않는다.

<p>대응2단계 (중형재난)</p>	<p>대응구역별 통제단 가동되는 경우</p>	<p>-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편성 운영되고,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각 대응구역 통제단 소속 통합지휘팀의 임무를 수행한다. -대응구역별 3C 센터가 완전 가동된다.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가동된다.(통제단 부분 운영)</p>
<p>대응3단계 (대형재난)</p>	<p>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되는 경우</p>	<p>-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응구역별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의 조정통제를 받는다. -시 지원기관의 각 연락관은 시 통제단 통합지휘팀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본부 3C 센터가 가동된다.</p>

3.2 통합지휘팀

3.2.1 기능

- 각 유관기관의 자원을 통합시키고, 임무를 분담하며 전반적 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며, 통제단장의 지휘의사결정을 지원한다.

3.2.2 조직

-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 및 소방본부의 각 통합지휘팀은 경찰, 군부대, 응급의료소 등 주요 연락관으로 구성된다.

3.2.3 조직운영

- 통합지휘팀은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의 주요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사전 조직된 주요 유관기관의 연락관 지휘그룹이다.
- 통합지휘팀은 시 통제단이 활동을 개시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주요 의사결정이 신속히 전달 가능하도록 즉시 협조해야 한다.

- 통합지휘팀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활동(임무분담)을 결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통제 단장과 비상연락전화를 통해 협의하고, 즉시 상호 약속된 장소(119종합상황실, 또는 재난현장)에 합류하여야 한다.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3.1 근거

- 유관기관의 협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응원협정을 체결한다.
- 협정서는 각 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의 상호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주시 외의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진주시는 재난 시 각 대응구역에 대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응원협정 체결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당해 지자체 또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원조하는 규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이의 검토를 위해 19개 시·도 본부 회의가 필요할 경우 추진예정

3.3.2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협조체제

- 상호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각 대응구역별 상호협조지역으로 나눈다.
- 각 대응구역별 유관기관협조체제는 각 소방서 통제단(119종합상황실 3C 센터)에서 조정한다.
- 통제단장은 각 구역 내 주요 유관기관의 장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3.3.3 기능별 협조체제

-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는 아래 기관(부서)에 의해 기능별로 책임 관리된다.

상호협조 분야	책임기관(부서)
1. 지휘통제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2. 비상경고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3. 대중정보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4. 상황분석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5. 구조진압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6. 응급의료계획 상호협조	진주소방서, 진주시 보건소
7. 오염통제계획 상호협조	진주시 환경관리과, 낙동강유역환경청
8. 현장통제계획 상호협조	진주경찰서(경비교통과)
9. 긴급복구계획 상호협조	진주시(시민안전과), 한국전력 진주시사
10. 긴급구호계획 상호협조	진주시(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1. 재난통신계획 상호협조	경상남도 119종합상황실, KT진주시사

3.3.4 기능별 협조체계의 운영책임

- 각 기능별 계획가동의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은 각 기능별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조직의 자원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주요 책임 지원기관(부서)는 각 임무별 대체 책임자 및 운영 요원을 지명하고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들은 각 임무별 책임자 부재시 책임자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각 기능별 계획가동 책임자들은 주기적으로 각 책임임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브리핑을 자치단체장 및 통제단장에 실시하고, 각 기능별 상황판에 관련 상황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 제공한다.

3.3.5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각각의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가동하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상호통신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시 전역에 걸친 긴급구조 대응활동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현장대응기관으로 배치된 각 지원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지휘부(통합지휘팀)로부터 임무할당을 받는다.

- 기타 모든 지원기관은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시 119종합상황실)에 피해상황과 필요사항을 정확히 통보할 능력을 갖춘 현장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를 조직 운영한다.

3.3.6 책임 지원기관 지휘소 세부운영계획

- 각 주요 책임 지원기관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긴급구조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휘소 운영기준(설치와 종료)
 - 교대조 운영계획
 - 연락관 지정 및 상호통신체계
 - 상황통보(보고) 및 브리핑 실시계획
 - 통신
 - 내부통신
 - 긴급구조통제단과의 통신
 - 상호 연락 메시지 119종합상황실 운영
 - 정보 수집, 평가 및 확산
 - 교통수단(수송계획)
 - 자원배치 절차

4. 통제단-대책본부 연계성

4.1 상호협조관계

- 재난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등 상호협업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2 통제단-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3항에 의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법 52조 제7항),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지원에 필요한 연락관을 상호 파견하여 협업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각급 통제단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의 협의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2조 제10항)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위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5.1 자원집결지

-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은 재난 인근지역에 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할 책임이 있다.
- 자원집결지는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에서 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 복구, 구호자원을 재난지역 전체에 배치 및 배포하고, 부상자 외부수송 지원을 위한 임시집결지점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장소가 시 자원집결지로 운영된다(사전 지정된 자원집결지)
 - 진주시 서부지역 : 진주종합경기장(충무공동)
 - 진주시 동부지역 : 진주공설운동장(신안동)
- 사전 지정된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기타 시 소유 건물, 공터, 학교 등 육해공 수송수단의 활용이 편리한 곳이 집결지로 사용된다.
- 인근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각 중앙부처(청)의 지원자원은 지정 공표된 집결지에 집결한다.
- 자원집결지에는 각 재난현장으로 배치되는 자원을 수송할 수송대기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 이 수송대기지역의 운영은 자원지원부 시설(서비스)지원반 수송지원팀에서 담당한다.

5.2 자원대기소

-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한 자원집결지의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하며 현장배치 전 대기, 교대조 운영 및 대응요원들의 휴식을 위한 자원대기 장소이다.

5.3 수송대기지역

- 현장대응요원 및 대응자원 수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 수송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 수송대기지역은 대응2단계(필요시)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인 경우 운영되며, 통제단 수송지원팀은 즉시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들을 배치한다.
- 각 수송대기지역 운영요원은 비상경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받는다.
- 지정된 대응구역별 수송대기지역은 각 소방서이다.
- 시 수송대기지역은 시 자원집결지 운영장소이다.

6. 재난대응구역

6.1 운영개념

- 재난대응구역은 재난초기 지휘통제가 마비된 중형재난 및 대형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이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로 진주소방서 통제단 운영이 활성화되면, 곧 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되어, 전 진주시에 걸친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이루어진다.
- 시에 지정된 각 대응구역은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피해평가, 자원배분, 긴급복구를 위한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대응구역은 진주소방서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는 각 소방서별 통제단장(또는 현장지휘대장)을 통해 각 대응구역내의 긴급구조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 각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체 통제단을 조직하고 각 유관지원기관 지휘소와 소방본부 통제단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며, 즉각적이고 자치적인 대응활동을 관리한다.
- 소방서 통제단장은 각 대응구역별 긴급구조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6.2 재난대응구역 가동절차

- 각 재난대응구역은 대응2단계,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에 의해 관리된다.
- 대응구역별 자치적 운영기준은 지진과 같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으로 운영된다.
- 주요 대응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해상황조사, 대응자원 조직, 통제, 연락
 -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
 - 지원자원의 보고
- 다음의 지원기관은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에 파견할 연락관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 진주시 보건소	- 반도병원	- KT 진주지사
- 진주경찰서	- 한일병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육군1대대	- 세란병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경상대학교 병원	- 복음병원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 고려병원	- 재난구조협회	- 한국농어촌공사 진산지사
- 제일병원	-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 각 연락관은 재난현장(통제단)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단장과 사전 비상 연락을 취하고 각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에 집결한다.
- 응급의료소 운영요원은 119종합상황실의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각 소방서 통제단(현장지휘대)으로 출동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의료소 운영장소를 지정 설치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자원봉사자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연결 및 집결기관이 된다.

6.3 재난대응구역별 SOP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대응구역 SOP를 개발 유지하도록 한다.
- 이 SOP는 대응구역활동을 확립하고 운영하는 절차이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대응구역별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소방서 인근장소에 연락 및 협조 데스크 설치 운영
 - 재난대응 인력과 장비의 집결장소
 - 응급의료 및 보건 활동
 - 자원봉사자 집결지
- 모든 지원기관은 대응활동에 참가하는 요원에게 재난발생 시 대응구역별 소방서로 응소하도록 하는 지침을 세워야 한다.
- 대응구역별 SOP에는 대응구역별 피해상황조사, 자원현황조사, 필요자원 조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포함한다.

6.4 대응구역 통신

- 대응구역 통신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및 각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 상황실), 택시/자전거/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메시지센터를 통해 확립된다.
- 모든 유관지원기관의 연락관은 통제단 연락공보담당에게 출발 및 도착여부를 통보한다.

6.5 기관(부서)별 대응구역 SOP

6.5.1 소방

- 각 소방서장은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또는 현장에 통제단을 설치, 자원을 관리하고 각 유관기관 연락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피해상황과 자원요청, 그리고 자원 분배 상황을 기록한 상황판을 설치한다.
- 소방서와 소방본부간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자원봉사자들을 구조진압활동 및 기타 대응활동에 활용하도록 협조한다.

6.5.2 현장통제(경찰)

- 각 대응구역별 경찰서장은 소방서 119종합상황실 3C센터,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보강)배치한다.
- 소방서장과 통신체제를 확립한다.
- 재난지역 현장통제를 담당한다.
- 재난지역 교통체계를 원활히 유지한다.

6.5.3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

- 지역보건소장은 통제단,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통신연락 담당요원을 지정(배치)한다.
- 현장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하고 부상자를 분류치료하고 사상자를 이송한다.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소방서장)에 의료시설상황을 보고한다.
- 응급의료에 필요한 추가 물품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6.5.4 긴급시설복구

- 진주시 건설교통국장(또는 지정 책임자)은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무선연락이 되는 연락관을 배치한다.
- 구역마다 피해상황을 점검한다.

6.5.5 수송

- 진주시 건설교통국장(또는 지정 책임자)은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각 소방서에 통신이 가능한 차량을 배치하고 긴급수송자원 통제센터로 활용한다.
- 소방서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대응요원 및 부상자를 이송하거나 긴급대피를 위한 여유차량을 조직한다.

6.5.6 교통지도

- 진주시 건설교통국장(또는 지정 책임자)은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경찰의 통제하에 지정된 비상도로상의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현장대응요원을 지정된 장소로 이송한다.

6.5.7 수도

- 상수도사업본부 무선통신 차량을 소방서 근처에 배치한다.
- 소속 인력과 보유자원을 지원한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력과 자원은 관할 소방서 장의 지시에 따라 배치한다.

6.5.8 가스안전공사

- 현장 활동요원의 안전과 가스시설 조사, 그리고 파손된 가스라인 복구를 위해 자원을 배치한다.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9 비상전력(한국전력)

- 단전된 전선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배치한다.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6.5.10 통신사업소

- 각 대응구역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을 배치한다.
-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자원을 지원한다.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 1 절 지휘통제계획(#1)

1. 목 적

- 지휘통제계획은 재난시 다수 관할구역의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절차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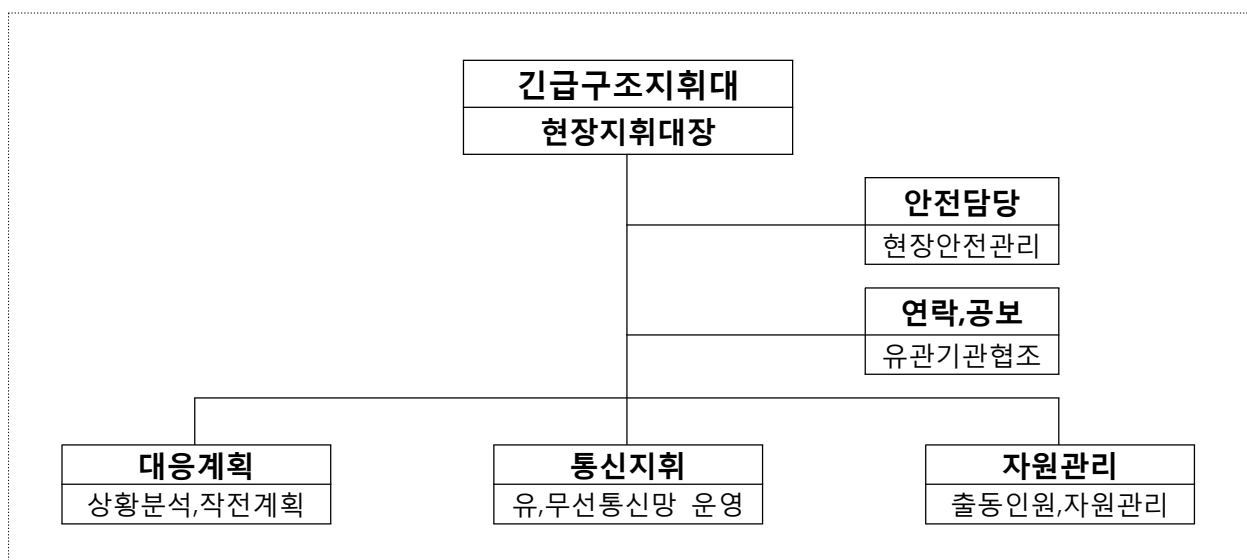
2. 조직 및 운영

2.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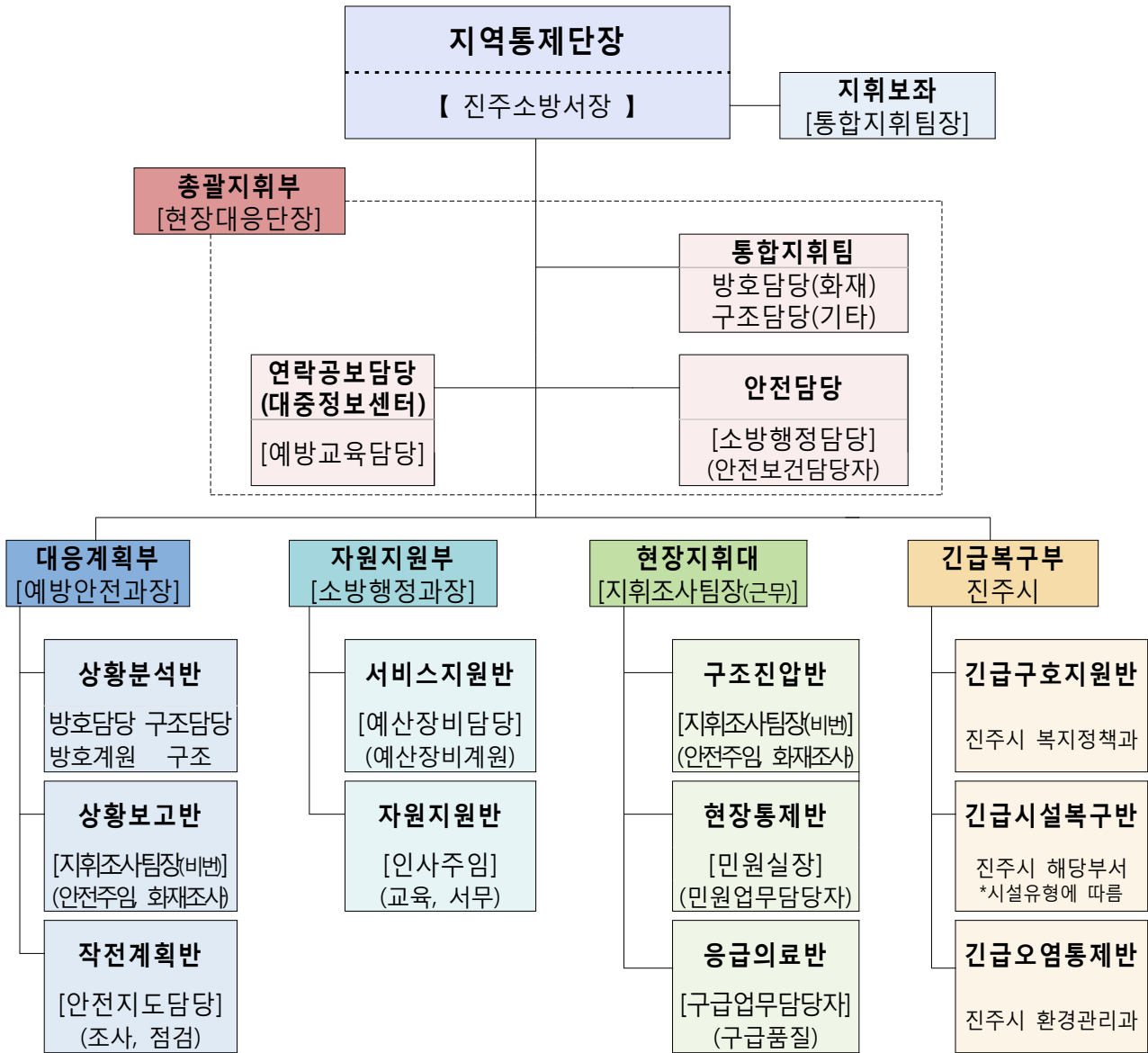
- 긴급구조통제단은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로 구성된다.
-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관서장이 되고, 통제단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

- 대비단계(긴급구조지휘대)



○ 대응1단계(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응계획
지역통제단장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사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지휘통제계획 (#1)
총괄지휘부	통합지휘팀	1.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3.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4.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각 소속기관 세부 대응계획
	연락공보담당	1.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사항 3.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4.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대중정보계획 (#3)
	안전담당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지휘통제계획 (#1)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 재난상황예측 3.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지휘통제계획 (#1)
	상황보고반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휘통제계획 (#1)
	작전계획반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지휘통제계획 (#1)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	1.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3.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4.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지휘통제계획 (#1) 재난통신계획 (#11)
	자원지원반	1.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운영 2.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지휘통제계획 (#1)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1. 각 사군구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2. 그 밖에 각 사군구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3. 자원대기소 운영	구조진압계획 (#5)
	현장통제반	1. 사도 대피계획 지원 2.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현장통제계획 (#8)
	응급의료반	1. 사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 대응구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4.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응급의료계획 (#6)
	항공통제반	1.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항공구조활동 지침
긴급복구부	긴급구조지원반	1. 사도차원의 긴급구조 및 자원지원활동 2.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구조계획 (#10)
	긴급시설복구반	1. 사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 활동 2. 사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복구계획 (#9)
	긴급오염통제반	1. 사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 활동 2. 사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통제계획 (#7)

2.2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

- 통제단 지휘통제체계 표준운영절차(SOP)는 다음 3 단계의 조직 기반 위에 운영된다.

2.2.1 현장 대응단계

- 재난 현장대응인력과 자원이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지휘한다.
- 진주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이 확립될 때까지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한 지휘통제체계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2.2.2 진주시 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대응구역별 대응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한다.
-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각 대응구역별 통제단이 구역 내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소방서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유관지원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할 경우
 - 경상남도 통제단이 가동되는 경우
- 진주소방서 통제단이 편성되면, 인근 시·군(소방서) 통제단, 시도 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 소방서 통제단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 소방본부 상황실(통제단)에 재난상황과 자원요청사항을 보고한다.
 - 대응구역별 자원을 운용한다.
 - 인근 대응구역의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중앙통제단에 대한 지원요청 여부를 검토한다.
 -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2.2.3 경상남도 통제단 대응단계

- 재난상황에 상응한 도 대응자원을 관리한다.
- 각 소방서간 자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 소방청의 중앙통제단과의 연락 및 조직책 역할을 한다.

- 소방본부 통제단이 시·도 긴급구조대응체계를 총괄 조정·통제할 책임이 있다.
- 도 통제단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수 소방서 통제단이 운영될 때
 - 도지사가 지역재난을 선포했을 때
 -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때
- 도(소방본부) 통제단이 편성되면, 각 대응구역별 통제단, 인근 시·도 통제단, 중앙통제단과의 통신과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 소방과 경찰 자원의 출동은 유관기관협조체제(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2.3 시간대별 운영체제

단 계	운 영 체 제
1. 초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을 평가한다. - 119종합상황실 운영요원을 보강하고 24시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한다. - 시 119종합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을 가동한다. - 긴급구조지휘대와 연락하고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 받는다.
2. 중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협조한다. - 각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연락관이 대응구역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현장지휘소)에 도착한다. - 시 통제단을 거쳐 도 통제단이 가동된다. - 긴급복구반 2차 재난방지팀을 비상소집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재난발생 지역의 항공비행을 지시한다. - 위험지도 분석, 여진가능성, 해일가능성, 사상자 예측, 바람 예측(화재, 위험물사고), 구름 및 습도 예측(유독가스사고), 이재민 발생정보 등을 이용해 재난상황을 평가한다.
3. 중기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구역별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활동을 평가한다. - 자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세운다. -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지원반(수송팀)이 긴급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아래 사항에 대비한 임무 수행계획을 세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식수사용 통제 · 긴급대피소와 위생적 음식 공급 · 지역 자원 배분 · 긴급수송과 도로복구 · 사상자 분류, 응급치료, 이송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 · 공항과 항구의 긴급구조대책

2.4 통제단 긴급대응 우선순위

통제단의 표준 긴급대응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중앙통제단, 인접 자치단체 통제단(상황실), 주요 민간기업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확립한다.
- 현 보유자원을 배치하고 추가 요청자원을 해결한다.
- 현장대응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자원을 조정한다.
- 사천시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협조체제 가동
- 비상방송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한다.
- 대중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비상경고정보를 준비, 확산시킨다.
- 긴급대피명령이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이동, 수용 및 보호를 관리한다.

3. 임무수행

3.1 총괄지휘부

3.1.1 조 직

-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시·도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하며, 지휘부는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을 포함한다.
- 통합지휘팀은 경찰연락관, 군부대연락관, 응급의료소장으로 구성되며, 한국전력, 통신공사 등 주요 지원기관 연락관 및 재난유형별 전문위원이 필요에 따라 보강된다.
- 통합지휘팀은 통합지휘회의를 통해 주요 지휘지침을 결정하고 임무를 분담한 후 소속기관과 지휘연락을 한다.
- 소속기관별 임무가 완료되면 팀장(통제단장)에 통보한다.
- 대응1단계의 운영요원

총괄지휘부	운영요원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	(화재)방호담당, (구조)구조담당 예방교육담당 소방행정담당

3.1.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 합 지 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긴급대응계획의 전반적 체제와 임무수행절차를 이해하고 주요 지휘관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며 - 경상남도 긴급구조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는다. - 사고발생장소 관할구역의 소방서 통제단이 지휘권을 가진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경상남도 통제단의 각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가동된 각반의 요원은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에 응소한다.(도 통제단)
대응3단계 (대형재난)	- 경상남도 통제단의 각 반이 모두 가동된다. - 각 반원은 상황보고와 상황예측서를 검토하고 대응지침과 기본전략을 밝힌다. -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의 대응자원이 각 재난대응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3.1.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임 무 수 행 매 뉴 얼
통제단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사태 선포의 필요에 대하여 대책본부장에 판단자료 제공 2. 긴급구조를 위한 비상대응요원의 비상소집 확인 3.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의 전면적인 혹은 부분적인 가동 4. 주기적으로 통제단 각부 및 반의 브리핑을 받고, 모든 부 및 반이 대응 계획에 따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단 활동 조정 5. 피해상황, 사상자 수 등에 대한 개략적 1차 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6.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또는 상급 부서에 특별한 지원 요청을 공식화 7. 대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사태 선포에 필요한 정보제공 8. 인접 자치단체 소방관서 및 지원기관단체, 상급 부서와 상호 긴밀한 연락 관계 유지 9. 부족 대응자원을 선점하고 할당하는 것을 지원 10. 현장지휘대장 지휘통제
통합지휘팀	<p>통합지휘팀 임무는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단체 연락관이 아래 사항을 이행함을 의미한다.</p> <p>→ 통합지휘팀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반적인 대응 목표를 정한다. 2. 전략을 정한다. 3. 전술적 활동을 위한 통합계획이 실행되도록 한다. 4. 총체적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전반적 자원의 활용을 도모한다. <p>→ 각 연락관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지휘회의에 참여 소속기관 임무분담 2. 분담된 임무 소속기관 연락, 이행보고 책임 3. 임무지침서와 통합작전계획 소속기관 소관임무 승인

직 책	임 무 수 행 매 뉴 얼
연락공보 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보호프로그램 및 비상방송시스템 운영 2. 중앙통제단 지원체계 유지 3. 대책본부 지원체계 유지
안전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수칙 관리. 2. 재난현장 안전 및 2차재난 위험성 검토 3. 대원 재난심리상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휘 대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구조, 구급, 위험상황의 진압, 접근통제, 통신 등을 포함한 사고현장에 초동 대처하는 현장대원의 활동 조정 2.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안전담당 등 필요 직책을 현장활동 대원 중에서 지정하는 등 현장지휘체계 가동 3. 통제단장과 재난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 강구 4. 통제단 지휘통제체계의 모든 필요기능 수행. 5.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응급의료소 운영장소 지정 6. 재난 초기 각 지원기관 연락관과 통합지휘 수행 7. 통제단 미설치시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그리고 연락공보 및 안전담당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간 대별	대응 매뉴얼
재난 발생 직후	<p>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 통합지휘팀, 각 부장은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적인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또는 통제단)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거나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화회의를 실시한다.</p> <p>통제단장은 다음 지시사항 중 하나를 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제단을 가동시키지 않는다. 2. 현장의 상황변화를 보며 기다린다. 3. 현장지휘대를 기반으로 통제단을 부분적으로 가동한다. 4. 통제단을 운영할 통합현장지휘소를 설치한다. 5. 통제단을 완전 가동하고 대책본부장(자치단체장)에 보고한다. <p>※ 현장지휘소는 인적재난인 경우 현장에, 자연재해인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p>
1 - 1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피해 상황 분석 평가 - 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에 상황보고 - 임무 지침서 작성 및 배포준비 - 구조진압 활동 모니터 - 기자회견 및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작성 - 대응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 및 2차 재해방지를 위한 도로, 전기, 가스등의 긴급복구 검토

12 - 24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진압 활동 지속 - 긴급대피, 통행금지 등 주민행동지침 검토 후 발표 - 정기적인 기자회견(기자단에 브리핑시간계획 발표), 시민보호프로그램 운영 - 중앙통제단과 지원협조체제 유지 - 대응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배분 결정 - 긴급대피소 방문 - 주민보호 비상방송메시지 검토
24 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긴급복구 상황 모니터(대책본부 설치시 긴급복구 지휘권이양 검토) - 긴급대피소 상황 관찰 - 대책본부, 중앙통제단의 긴급복구활동 지원체제 유지 - 자원봉사자 집결지 위치 결정 및 홍보 - 시설물 안전문제 모니터 및 접근통제 검토 - 시민 보호프로그램 및 언론매체 관리 - 공식 방문 VIP 관리 - 재난유형별 긴급복구팀 비상소집(대책본부 설치시 이동 검토)

○ 통제단 언론브리핑

통제단장과 연락공보담당은 공동취재단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에서 알고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발표한다.

○ 대응 및 긴급복구시 검토사항

통제단장 및 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구조진압 및 응급의료(인명구조 및 재산 보호)
- 효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로, 가스, 수도)의 긴급 복구
- 이재민의 식사, 숙소, 화장실, 식수, 비상 발전기 등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복구
- 긴급구조요원(자원봉사자를 포함)의 의식주 시설
- 긴급대피 및 시민보호프로그램과 같은 행동지침을 시민에게 전파
- 상황조사 및 평가
- 인력 및 시설을 동원, 배분, 배치한다.

- 대피 및 구조 작업
- 사상자의 치료 및 보호
- 사망자 발굴, 인적사항관련자료 및 현장보존, 사체처리
- 이재민 구호품(음식, 대피소 등)
- 재난지역 치안능력 강화협조
- 보건 및 안전조치 실행
- 필수 자원의 보호, 통제, 배분
- 공장, 학교, 상점 등에 폐쇄 가능성 예고 및 폐쇄조치
- 필수 시설 및 시스템을 긴급복구 또는 정상화

○ 통합지휘팀 검토사항

다음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임무분담 및 전반적 지휘통제를 위한 통합지휘팀의 검토사항이다.

- 초기 상황평가지 검토사항
 - 토지 및 시설물 일시 사용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소방기본법 제25조)
 - 통행제한 조치
 - 기관간,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호응 원협정서
 - 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례사항
 - 시도 일상업무의 중단 여부
 - 위험지역 대피명령(병원, 양로원, 어린이집, 공장 등 산업시설, 상업시설의 폐쇄 등)
- 비상 대책
 - 과거 재난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통제단 각 반별 요원에게 검토해서 보고하게 한다.
 - 조치사항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운영요원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교대 및 인수인계시간을 검토한다.
 - 인력자원을 수정한다.
 - 필요에 따라 부재중인 운영요원의 대체인력을 검토한다.
 - 임시 대피소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 긴급복구
 - 긴급복구부를 운영하고 기능별계획#9를 가동한다.
 - 긴급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초기 긴급복구계획을 개발한다.
 - 통제단 긴급복구부에서 대책본부 총괄조정관(복구반)으로 책임과 업무가 인계되는 것을 모니터한다.

3.2. 대응계획부

3.2.1 조 직



- 계획부는 재난피해 상황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대응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한다.
-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는 계획부가 임무지침 및 작전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 대응1단계의 운영요원

구분	부·반장	반원
대응계획부장	현장대응단장	
상황분석반	(화재)방호담당, (구조)구조담당	(화재)방호계원, (구조)구조담당자
상황보고반	지휘조사팀장(비번)	안전주임, 화재조사
작전계획반	안전지도담당	안전지도계원

3.2.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대응계획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연습을 실시한다.

<p>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소방서 통제단 대응계획부가 가동된다(부분가동 가능) - 도 통제단의 계획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 필요시 현장대응활동을 지원하는 통제단 지휘통제체계와 119종합상황실(소방방재센터)을 가동할 수도 있다.
<p>대응2단계 (중형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통제단의 계획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계획부는 피해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에게 주기적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p>대응3단계 (대형재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의 계획부와 119종합상황실이 완전히 가동된다. - 계획부 운영요원은 피해상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을 분석하며 대응작전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부의 운영요원은 현장지휘대장과 통합지휘팀 및 자치단체장에게 상황보고를 실시한다. - 모든 진주시 소방서 및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영요원은 각 대응 구역별로 분산 배치된다.

3.2.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반별	임무
대응계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자원배분을 조정한다. - 상황보고서를 작성 감독하고 예측자료 및 추가 필요자원을 조사하여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 제공한다. - 작전계획을 개발하고 통제단 전 운영요원에게 알린다.
상황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을 분석한다. - 상황보고반 및 작전계획부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상황분석결과에 따라 현장지휘대장에게 단기 예측정보를 긴급 제공한다.
상황보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락공보담당 및 통제단 각 팀에 배포한다. - 상황판 기록 및 수정
작전계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분석팀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자원을 평가한다. -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배분(작전계획)한다. - 작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제단 각 팀에 배포한다.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1 - 12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과 보고 - 대응지침서 및 작전계획서 개발 - 단기 예측 및 분석 실시 - 대응활동의 우선순위 결정
12 - 24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활동 평가 - 자문을 위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전문가 비상소집 - 주요 시설 상태, 인명구조상황, 기타 대응활동 상황 모니터링 - 기타 대책본부 가동에 따른 지원기능 수행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지원계획 수립시행 - 주민복지지원계획 수립시행

○ 대응 및 긴급복구 정책

- 정보 확인
 - 계획부가 가동되기 전 단계의 재난상황정보는 선착대장 및 119종합상황실에 의해 확인한다.
 - 언론매체나 개인으로부터의 수집한 정보는 선착대장 및 상황실이 확인하기 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 예 측
 - 처음 72시간 내의 피해의 평가 및 예측은 정확한 조사가 있기까지 개략적인 조사로 대신한다.
- 긴급복구 계획
 - 이 계획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목적에 한하고 기타 복구활동은 대책본부의 정책과 지침을 따른다.

3.3. 자원지원부

3.3.1 조 직



- 자원지원부는 비상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 지역재난 선포시 자원, 재산, 서비스, 공급 및 장비를 소유 및 제공하는 모든 시의 기관들은 자원들을 자원지원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응1단계의 운영요원

구분	부·반장	반원
자원지원부장	소방행정과장	
서비스지원반	예산장비담당	예산장비 계원
자원지원반	인사주임	교육, 서무 담당자

3.3.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자 원 지 원 부 운 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자원지원부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가 가동되어 필요물품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제공한다 도 통제단 자원지원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관할소방서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현장대응활동 조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완전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소방본부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은 완전 가동된다. 운영요원은 비상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 배치된다.

3.3.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자원지원부		임 무
자원지원부장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등 필요한 자원지원을 총괄지휘
서비스 지원반	통제단지원팀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
	통신지원팀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통신시스템 확립
	수송지원팀	현장대응요원의 수송지원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수송수단 제공
	에너지지원팀	통제단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비상에너지 확보
자 원 지원반	인력지원팀	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
	장비지원팀	현장에 필요한 장비지원
	시설지원팀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1단계의 경우 팀별 구분없이 반별로 임무수행

○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지원부 조직화 및 운영 - 자원동원체계 가동 - 현장대응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원지원 - 필요사항 파악 및 요구사항 지원 - 부족 및 잉여인력 파악 - 공급물품 및 장비의 부족 및 잉여여부 파악 - 도시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필요부서에 지원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조달을 위한 주문 검토 - 긴급복구활동을 하는 부서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 및 장비의 확보 - 회계자료의 취합 및 대책본부 이관준비

○ 통제단 언론브리핑 양식

자원지원부의 상황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 치 : 자원집결지, 수송대기지역, 자원대기소 등 위치확인
- 자원배치 현황(인적자원, 장비, 수송차량, 통신, 주요 물품)
- 자원요청 현황
 - 총 자원요청건수
 - 우선순위 A에 해당하는 건수(생존자 및 사망자 관련)
 - 우선순위 B에 해당하는 건수(작전상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
 - 우선순위 C에 해당하는 건수(72시간 이후 지속되는 작전에서 필요한 것)
- 문제점 : 각 부서 운영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점
- 대 책 : 각 부서 및 자원동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보고

○ 대응 및 복구정책

- 자원지원부의 임무는 비상대응활동을 하는 부서의 자원공급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자원지원부는 현장대응활동 부서들이 요구하는 물품, 장비, 유지관리지원, 인원, 긴급대피소 및 기타 서비스를 확보한다.
- 자원지원부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임무를 수행한다.
 - 확보 • 통신 • 집결
 - 저장 • 수송 • 회계
 - 배분 • 공급
- 비상사태시 대응부서들은 자신의 자원을 통제, 분배한다.
- 각 부서는 계약공급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으며, 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서들과 직접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대응부서가 자원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자원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단에 공급을 요청한다.
- 요구사항은 계획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져서 자원지원부로 전달된다.
- 자원지원부는 다음과 같은 공급원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배분한다.
 - 자치단체의 각 부서 내 이용가능 한 자원.
 - 자원동원시스템의 물류 네트워크
 - 자치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자원
 - 유관기관들의 협조시스템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자원동원시스템

○ 통신수단

반·팀별	통신수단	보조통신수단
자원지원부장	UHF무전기(휴대국, 차량국)	일반전화, 휴대전화
서비스지원반	UHF무전기(휴대국, 차량국)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원지원반	UHF무전기(휴대국, 차량국)	일반전화, 휴대전화

가. 서비스지원반

1) 통제단운영지원팀

- 통제단운영지원팀 임무

통제단 운영지원팀은 119종합상황실 또는 **현장지휘소**에 통제단 업무시설을 설치 점검하고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급, 급식, 숙박, 인원관리 등 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 주관부서 :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운영지원팀 가동 통제단 운영요원관리 비상소집 및 응소기록 운영요원 급식 및 숙박 등 서비스 통제단 보안관리 언론(방송) 모니터 현장지휘소 안전	진주소방서 (예산장비계)

2) 수송지원팀

- 수송지원팀 임무

수송지원팀은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수송기능과 수송 체계의 긴급복구를 담당한다.

- 주관부서 :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긴급수송기능 회복 수송체계 피해정도 조사 긴급대피활동 수송지원 긴급구조인력 및 장비의 수송 사망자 시신 수송 긴급구조 연료보급 긴급도로 복구(중장비 동원) 긴급구조 차량 및 시설보수 수송지원에 소요된 비용계산서 자원지원부 제출	진주경찰서(경비교통과) 수송지원팀 수송지원팀 수송지원팀 수송지원팀(응급의료반 협조) 관내 공공조달 협약주유소 수송지원팀(긴급복구반 협조) 관내 차량정비업체 수송지원팀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체계, 시설 및 장비의 피해정도 평가 * 긴급피난을 위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계 유지 * 탐색 및 구조작업을 위한 중장비 제공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구 개시 * 긴급수송서비스를 재개 * 지역별로 긴급하게 필요한 수송체계 마련을 위해 버스 및 트럭 운송협회와 공조체계 유지 * 대체 수송수단 개발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체계의 긴급복구 계속 * 긴급수송서비스 지속성 유지 * 지역별 긴급복구작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 필요시, 대체 수송체계 이용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긴급수송체계의 현황
- 이용가능 차량대수 (버스, 트럭)
- 이용가능 교통수단(버스, 트럭, 선박, 철도)
- 교통체계와 연관된 사고현장
- 대피활동, 탐색 및 구조활동 및 비상대응활동요원들의 수송 등과 같은 긴급구조
활동에 지원이 가능한 장비, 차량

○ 대응 및 복구 정책

- 재난현장 사상자의 이송
- 사용가능한 수송자원을 평가하고 명시화; 수송차량, 연료, 타이어 등
- 수송지원팀에 택시운송회사, 트럭 및 버스운송협회 연락관을 참여시킨다.
- 참여한 연락관은 통신수단을 가지고 온다.
- 대체 통신체계를 활성화시킨다.

3) 통신지원팀

○ 통신지원팀 임무

통신반은 통제단내의 통신활동을 조정 및 지원하며 대응기간동안 지원기관간 유무선통신이 유지되도록 보조한다.

○ 주관(지원)부서 : 자원지원부, KT진주지사

세부임무	임무 할당	
	주관부서	지원부서
긴급구조 통신체계 복구 대체 통신체계 마련 통신수요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통신자원 및 장비의 할당 이동통신장비 및 차량의 할당	자원지원부 (예산장비계)	KT진주지사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 피해정도 평가 * 비상통신체계 긴급복구 우선순위 결정 * 통제단 및 시 대책본부 통신체계 긴급복구를 지원 * KT진주지사와 통신체계 긴급복구 공조활동을 수행
재난발생 후 12~24시간	* 통신체계 긴급복구 계속 * 비상통신체계를 확립 * 각 유관기관(부서)들의 통신체계 복구를 지원 * 재편성된 임시 통신체계를 확립
24시간 이후	* 비상통신체계의 복구 지속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통신체계의 상태 (라디오, 전화, 무전기, 휴대폰, 기타)
- 복구의 우선순위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 이용 가능한 대체 통신수단

4) 비상에너지지원팀

○ 비상에너지지원팀 임무

- 에너지 지원팀은 재난발생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긴급구조활동자원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관리한다.
- 여기에는 정보수집, 사용통제, 저장장소의 변경이 포함된다.

○ 주관부서 :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에너지통제프로그램 가동 - 연료획득, 할당 - 차량관리 프로그램의 감시 - 연료공급의 부족상황을 감시 - 비상에너지통제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연료 감독 - 시설 보존 프로그램 감시 - 기본생활시설 부족상황을 감시 - 생활시설 보존 프로그램을 관장 	<p>자원지원부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계)</p>

○ 지원부서

세부임무	지원임무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발전기의 제공 - 연료보급능력 확보 - 전기관련 및 기계관련 보수작업 - 기타 보급활동 	<p>진주시 시민안전과</p>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대비단계 (경고단계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분 조사 * 비축계획 * 배분의 우선순위, 할당 * 긴축계획
재난발생 후 1~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분에 대한 동원령 * 비축계획의 실행 * 비상에너지 통제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연료의 축적 *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연료공급 축소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급을 확보 * 경제계획을 실행 * 보조계획

○ 대응 및 복구 정책

- 자치단체장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건의
- 자치단체장의 에너지 비상조정관 임명
- 비상에너지 비축조치 지시
-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연료공급 축소
- 일반대중에게 에너지 비축조치 홍보
- 지역 연료공급자로부터 에너지 확보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에너지 비축 현황 및 현 사용량 현황
- 연료공급이 끊길 때까지의 연료별 사용가능 기간
- 연료부족시 위태로울 수 있는 주요활동
- 연료부족 및 질의 저하시 위태로울 수 있는 통신체계, 정보시스템

○ 비상에너지 통제프로그램(추진 중) ⇨ 부록 참조

나. 자원지원반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자 원 지 원 반 운 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자원지원반의 운영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진주시 통제단 자원지원반이 가동된다(부분가동 가능) - 필요시 관할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상황실 물류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지원을 요청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경상남도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진주시 통제단 자원지원반이 완전 가동된다. - 필요시 자원집결지가 설치 운영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경상남도 통제단의 자원지원반이 완전 가동된다. - 운영요원은 물류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부서의 요청이 있는 자원을 조정 통제한다. - 자원지원반은 자원 현황정보를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협조팀을 구성한다. - 모든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1) 인력지원팀

○ 임무요약

- 인력지원팀은 현장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인력을 비상소집 및 배치한다.

○ 주관부서 :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인력 비상소집 명령 - 자치단체 전역의 인력자원관리 - 대응활동에 할당 가능한 인력 현황 - 임무별로 직원 재배치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지원부 (소방행정과 행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적십자사 인력지원센터와 협력 - 대응활동 동안 직원들이 당면할 작업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내림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지원부 (소방행정과 행정계)</p>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 비상경고시스템 및 전화연락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발동 @ 수송지원팀과 인력배치활동을 시작한다. @ 자원집결지를 확립한다. @ 비상대응에 따른 직원들의 당면문제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개발한다
재난발생 후 12~24시간	@ 대응계획부의 인력 할당계획에 협조한다. @ 자치단체 전체의 자원할당을 재조정한다. @ 긴급복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24시간 이후	@ 대책본부의 복구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 필요시 대책본부로 인력관리업무와 권한을 이관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 이용 가능한 인력 현황
- 현 배치인력 현황
-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직원의 수
- 단기, 장기 인력 할당계획

○ 자치단체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추진 중)

- 자치단체의 대형재난 발생시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은 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적 재난대응을 위한 것이다.
- 자치단체의 재난 시 통합 재난자원봉사 조직은 각 단위 자원봉사조직의 포괄적 조정통제체계를 갖추게 되며, 각 단위 조직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주도적으로 실시한다.
- 통합 재난 자원봉사조직에 참가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다.

책임단체	지원단체
적십자사(인력지원센터)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단체

- 재난자원봉사조직의 통합관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체계를 확립한다.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상시 대비체제로 발전시킨다.
 - 대규모 재난 발생시 각 자원봉사조직이 가진 자원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자원 목록을 만든다.
 - 대규모 재난시 각 지역별 자원봉사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할 계획과 절차를 마련한다.
 - 대규모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 및 적십자사 인력지원센터와의 통신(의사소통) 계획을 마련한다.
- 자원봉사조직 중 긴급구조활동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긴급구조 비상대응팀을 조직한다.
- 비상대응팀의 조직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각 긴급구조비상대응팀은 소방관서와 응원협정서를 체결할 것.
 -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의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 소방관서와의 출동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주도로 자원봉사조직의 재난대응 출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각 긴급구조 비상대응팀들은 아마추어 무선교환기와 비상출동차량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현장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지원지원부 인력지원팀)과의 세부대응계획(협조절차 및 자체 지휘절차)을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자원지원팀

○ 임무요약

-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은 현장대응부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확보 지원한다.
- 장비지원에 대한 모든 요청은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
-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은 1)자원을 요청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2)지역 판매상에게 필요자원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즉시 조달하거나, 3) 중앙통제단에 필요자원을 요청함으로써 자원요청에 대응한다.

○ 주관부서 : 자원지원부

세부임무	임무 할당
조달담당 : 장비 및 물품 구매, 임차계약 수행	자원지원부(소방행정과 행정계)
공급담당 : 장비 및 물품 수령, 보관, 배치	자원지원부(소방행정과 행정계)
차량담당 : 비상대응차량 및 장비 수리, 연료 공급	자원지원부(소방행정과 행정계)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지원반을 가동한다. 각 담당자들은 각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및 현장대응부와의 교신체계를 확립한다. * 재난으로 파손된 장비의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 현장대응부가 요청한 장비, 물품 등의 구매 및 임차 계약을 체결한다. * 즉시 사용가능한 시소유의 공급품 및 장비를 파악한다. * 비상대응 차량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서비스를 원활히 한다. * 모든 소방관서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도록 계약자에게 주문을 하고 연료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할 수 없는 필요물품 및 장비리스트를 중앙통제단에 요청한다. * 필요시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장비지원상황을 검토한다. * 필요한 장비 및 물품에 대해 구매계약하고 긴급복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한다. * 대책본부로의 업무인계인수를 준비한다.

○ 통제단 브리핑 양식

자원지원팀(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장은 다음 현황에 대하여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 조달담당

- 조달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 유무 및 조달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 지역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구매요구의 유형 및 요구량(중앙통제단 지원요청의 유형 및 요구량)

- 공급담당

- 공급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유무 및 공급담당 인력 현황
- 통신체계의 상태 및 유효성
- 현 작업량 : 발송된 공급품의 유형 및 발송량, 요청되었으나 발송이 불가능한 공급의 유형 및 횟수
- 즉시 이용가능한 시 소유의 공급물품 및 장비

- 차량연료담당

- 차량연료 지원기관(부서)의 상황실 연락체계 이상유무, 차량연료담당 인력 및 차량 현황
- 통신체계의 유효성
- 현 작업량 : 연료공급 횟수 및 량, 요청된 연료공급 횟수 및 량

○ 자원 요청 및 확보 절차(지침)

구 분	절 차
자원 지원 요청 전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자원요청 및 지원절차는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에 적용된다. - 긴급복구부의 지휘권이 대책본부로 이관된 경우 또는 긴급복구 외의 일반적 복구작업과 관련된 자원지원은 대책본부에서 다룬다. - 각 기관(부서)의 독자적인 자원지원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1 : 긴급구조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와 통제단과 각 지원기관(부서)의 지휘부와의 통신이 두절될 경우에는 각 소방서 통제단장, 소속기관 지휘자의 허가를 받아 즉시 필요자원을 구입할 수 있다. * 조건2 : 요청된 자원이 소속기관단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제단 현장지휘대에 해당자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현장지휘대 내에도 이용가능 자원이 없는 경우, 자원요청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별로 자원지원팀으로 이관된다.

<p>자원 요청 우선 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1→ 인명구조와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2→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우선순위 3→ 작전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우선순위 4→ 작전 수행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p>자원 지원 요청서 작성 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우선순위 - 요청하는 부/반/팀 또는 대의 이름 및 고유번호 - 목록표(부가적 요청물품 포함) - 요청일시 - 연락받을 사람, 연락수단 - 공급업자 및 전화번호(알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공급의 경우 : 요청항목의 설명 및 내역, 요구량 및 추정비용 · 전문적이고 개인적 서비스의 경우 : 서비스의 내역 및 작업범위 · 임대장비의 경우 : 장비의 유형, 크기, 성능, 제조사 및 모델, 요청하는 부서의 수, 요구 임차기간
<p>자원 조달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지원팀은 자원지원요청서를 접수한다. - 자원요청의 우선순위대로 분류한다. - 자원요청내용이 현 보유자원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 조달담당은 즉시 지역공급업자로부터 필요물품을 구입 또는 임차한다. - 요청항목을 지역 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유관기관 협조팀에 해당사항을 이관한다. - 유관기관협조팀에서 중앙통제단에 자원지원을 요청한다. - 청구서, 계약서, 납품확인서 등 예산지급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작성한다. - 작성된 문서를 건별로 정리하여 자원지원부장에게 보고한다.

3.4. 현장지휘대

3.4.1 조 직



- 현장지휘대는 재난대응에 참가하는 인명구조, 위험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항공구조 자원들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현장지휘대의 각 반, 팀은 대응계획반의 자원배치 우선순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장지휘대는 통합지휘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전략 및 방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 현장지휘대의 각 반, 팀별 임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임무 및 책임
현장지휘대장	진주소방서 지휘조사팀(근무)	- 재난상황에 대한 평가, 예측에 따른 현장지휘 및 방침을 하달 - 대응계획부장과 긴밀한 협조(통신)관계 유지하고 계획 부장과 공동으로 주요브리핑 수행
구조진압반 - 화재진압팀 - 구조팀	진주소방서 지휘조사팀(비번)	- 재난현장의 화재진압 등 위험상황진압과 수색 구조활동을 감독 -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를 제공
현장통제반 - 경비지원팀 - 방법지원팀 - 수사지원팀 - 교통통제팀	진주소방서 민원실	- 재난발생지역의 긴급대피, 치안질서유지, 교통통제활동 감독 -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 제공

응급의료반 - 응급의료팀 - 보건위생팀 - 환경보건팀 - 정신보건팀 - 사망지관리팀	현장대응단 구급업무담당자	- 응급의료, 긴급오염통제, 보건위생활동을 감독 - 각 팀장은 현장지휘대장에게 지속적으로 현장정보 제공
항공통제반	미운영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3.4.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현장지휘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현장대응관련 지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훈련 및 연습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대가 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각 반, 팀이 지원기관의 대응활동을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는 완전히 가동된다. - 현장지휘대는 지방자치단체 전역에 걸친 구조진압, 현장통제, 응급의료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비상대응구역별로 각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 분산 배치된다.

3.4.3 임무수행

가. 구조진압반

○ 구 조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 합 지 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가용자원의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 대응계획상의 방침과 절차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 및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대가 화재진압 및 구조작업을 조정 통제한다. - 사고장소 인근 지역주민을 긴급 대피시킨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완전가동 된다. -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필요에 따라 현장지휘대 보충 운영요원이 비상소집 배치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조진압자원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본부 현장지휘대가 완전 가동된다.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대응구역별 작전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재난지역 전역에 걸친 주민 대피여부를 고려하고 현장통제반과 통합지휘체계를 가동한다. - 자치단체의 지원부서와 지원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대응구역별로 분산배치된다.

○ 구조진압반 임무

- 구조진압반은 모든 재난대응에 있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최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구조진압반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재난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의 지휘통제에 대한 책임
 - 하위단위조직 확대운영에 대한 책임
 - 지원기관단체 자원의 조정 통제지휘 및 통제

○ 시간대별 대응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지역주민 대피 * 예측(24시간)
재난발생 후 12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대 통제 * 화재진압 및 잔화정리 * 탐색구조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질 탐색 및 제거 * 피해정도의 평가 * 예측(24 - 7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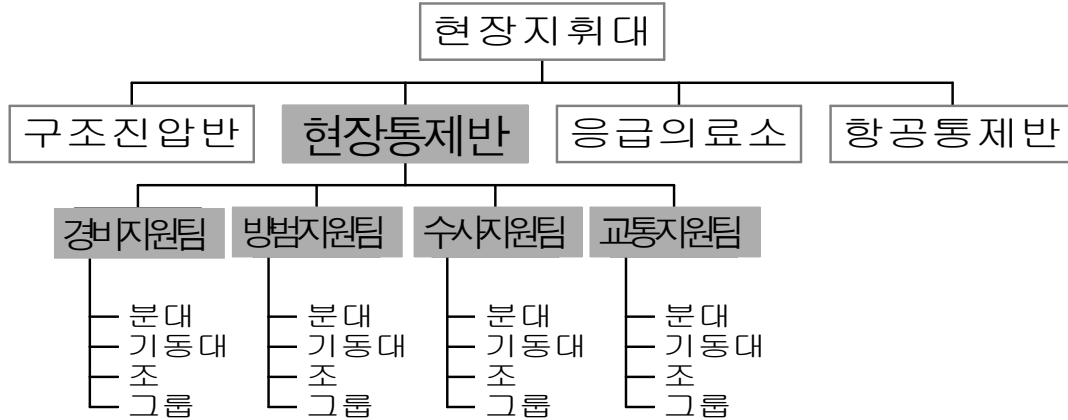
○ 상황실과의 통신

- 119종합상황실 구조진압통신 담당자는 매시간 통제단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한다.
 - 화재발생장소, (동시다발 화재시)발생 수, 발생유형(건물, 공장, 지하 등)
 - 자원배치상황
 -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5 구조진압 계획(p106) 참조

나. 현장통제반



1)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임무

- 위험하다고 인정된 지역 또는 잠재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각종 시설 및 자원의 경비와 방법활동 등을 수행하면서 치안질서 유지에 주력한다.

○ 주관부서 : 현장지휘대

세부임무	임무(부서)별 할당
지휘소 설치 상황 평가 및 사고현장 봉쇄 위협요인 제거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는 지역 확인 대피시킬 지역 확보 주민 대피경로의 구축 주민 대피명령을 공포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성 확보	예방대응과 민원실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요인 완화 * 바깥쪽 경계 설정 *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 군중통제 절차 확립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주민 대피장소 설정 * 피난상황 해제 및 귀환허가 공표 * 대피경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주요장소 점유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로의 확보, 유지 * 공공 수송 * 방법 및 순찰활동 수행 * 바깥쪽 경계 설정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통제단 보고양식

《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상황보고 예시》

- * 경비범위(중요 자원·시설과 함께 투입된 경비자원)
- * 방법 순찰조 편성 현황
-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 주민소개지역의 현재범위(해제지역 및 대피진행지역)
- * 대피장소(위치, 수행능력, 시설)
- * 대피경로(위치 및 상태)
- * 파견조직(인력 및 장비)
- * 주민소개지역에 대한 접근통제 상황 요약보고(인원수 및 배치장소)
- * 인구추산(주민소개지역의 총인구)
 - 대피 주민 수 추산
 - 대피하지 않고 해당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수 추산
- * 주민대피활동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추정 시간

○ 대응3단계의 운영요원

직책	A 교대조	B 교대조
통합지휘팀 연락 현장지휘대 연락 대응계획부 연락 자원지원부 연락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 대응 및 긴급복구대책

- 긴급대피계획 수립
 - 자치단체장은 시 소유 건물의 비상사태 대피계획을 수립 및 유지할 것을 명한다.
 - 소방관서는 5층 이상의 모든 건물 및 병원(의료기관)에 대하여 긴급대응계획(대피계획서)를 요구한다.
 - 교육청은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대하여 대피계획서를 요구한다.
- 모든 대피계획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대피계획을 포함시킨다.
- 대피명령을 통지 받았으나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들은 대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
-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비상사태의 위험이 완화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후에 재난지역 내 활동 및 건물의 사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자치단체장(통제단장 또는 대책본부 통제관)이 복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공표한다.

2) 교통지원팀

○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합지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의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 이 계획에 따른 훈련 및 연습을 수행한다.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절차 및 지침을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통제요원을 각 사고현장에 배치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경찰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관할소방서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운영요원 및 경찰서 통합지휘연락관을 소방서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시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소방본부와 통일된 지휘공조체계를 유지한다. - 지휘소운영요원을 각 재난현장에 배치한다. - 주변지역 통제를 위한 자원을 각 대응지역에 배치한다. - 경찰청 통합지휘연락관을 소방본부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배치한다. - 필요시 통행금지, 치안유지, 주민대피, 탐색 및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 교통지원팀 임무

- 교통지원팀은 재난상황에서 주변 도로상의 균중통제 및 교통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주관부서 : 현장지휘대

세부임무	임무(부서) 할당
군중통제 활동 주민대피 수행 비상통로(도로) 설정 주변 교통 통제	예방안전과 민원실

○ 시간대별 대응 순서

시간대별	대응매뉴얼
재난발생 후 1~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배치, 상황평가, 현장봉쇄 * 위협요인 완화 * 외곽 경계 설정 * 군중통제활동 * 주민 소개 활동 수행 * 내곽 경계 설정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설치 * 의료 검사자 활동 지원 *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12~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협요인 완화 * 군중통제 절차 확립 * 주민소개 지역 재 점유 * 바깥쪽 경계 설정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 비상도로 설정
재난발생 후 24시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통제지역 바리케이드 유지 * 재난 및 대피지역 주변 교통질서 유지

○ 통제단 보고 양식

《 교통지원팀 상황 보고 예시 》

1. 상황 요약
2. 최근 수행업무
 - * 임무의 우선순위
3. 활동의 실행
 - * 임무별 부서 배치
 - * 임무별 지원 부서
4. 요원/장비 상태
 - * 근무 중인 요원 수
 - * 비번인 요원 수
 - 부상자/환자 요원 수
 - * 총 차량 수
 - 사용가능 차량
 - 임무수행중인 차량
5. 지휘, 통제, 커뮤니케이션
 - * 근무 중인 부서 지휘자
 - * 하위 지휘소의 위치
 - * 사용 중인 무전기 주파수 및 채널
 - * 지휘부 참모 및 지휘소의 전화번호

○ 대응3단계의 운영요원

통제단 직책	A 교대조	B 교대조
통합지휘팀 연락관 현장통제반장 경비지원팀장 방범지원팀장 수사지원팀장 교통지원팀장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 대응과 복구정책

- 접근통제 지역

- 범죄 및 재난지역에 위험요인에 의한 사상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기자들이 비상대응활동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들의 현장 접근을 허가한다.

- 약 탈

- 약탈을 자행하는 이는 체포, 구금 및 기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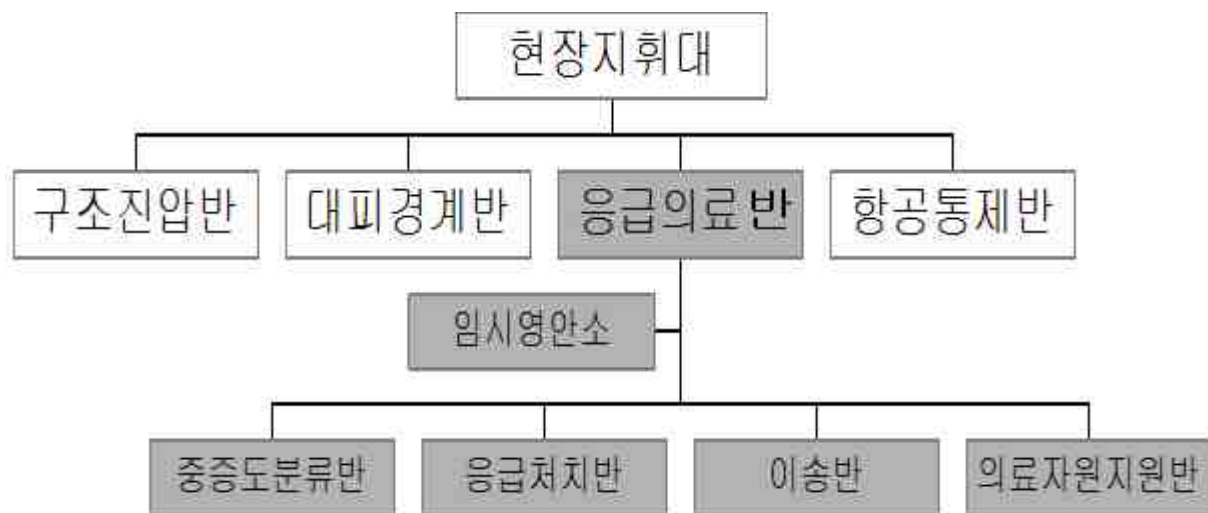
- 통행금지

-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2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발생시)은 재난상황 및 통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하여, 통행금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3)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8 현장통제 계획(p130) 참조

다. 응급의료소



○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 계획 #6 응급의료 계획(p111) 참조

3.5 긴급복구부

3.5.1 조 직



3.5.2 단계별 운영개념

대응단계	통 합 지 휘(팀) 운영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수행)	- 지침 및 절차의 검토 훈련수행, 대응훈련 및 연습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진주소방서 긴급복구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도 통제단 긴급복구부는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소방서 긴급복구부가 완전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 긴급복구부는 주요관련기관의 긴급복구활동을 조정통제 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대응구역별 소방서 긴급복구부가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완전히 가동된다. - 소방본부 긴급복구부는 시의 전역에 걸친 긴급복구활동을 전반적으로 조정 통제한다. - 긴급복구부 운영요원은 자동적으로 비상소집되어 배치된다.

3.5.3 임무수행

○ 임무수행 매뉴얼

직 책	세부 대응매뉴얼
긴급복구부장	*상황에 대한 평가, 상황예측을 고려하여 긴급복구 지휘 및 방침을 하달한다. *대응계획부와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대응계획부장과 함께 브리핑을 수행한다. *도시시설, 기본생활시설, 도로, 하수도 건물의 피해정도를 평가한다. *접근경로 확보, 파편제거, 오염된 쓰레기 처리 및 건물안전성 여부 의 검사를 행한다. *기본생활시설 및 교통시설의 복구를 관리한다. *교외 및 도시 내의 상수도 서비스를 보수, 복구한다. *화재의 진화를 위해 각 대응구역별 구조진압반에 소화용수의 공 급을 지원한다. *통제단장에게 지속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한다.

- 긴급복구부는 재난에 대응하여 담당기관의 활동들을 확인하고, 현장지휘대와 협조할 책임이 있다.
- 긴급복구부의 각 반은 자원지원부가 자원배치의 우선권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대응계획부에 보낸다.
- 긴급복구부는 통제단장(통합지휘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응전략 및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5.4 세부대응계획

☞ 기능별계획 #9 긴급복구 계획(p1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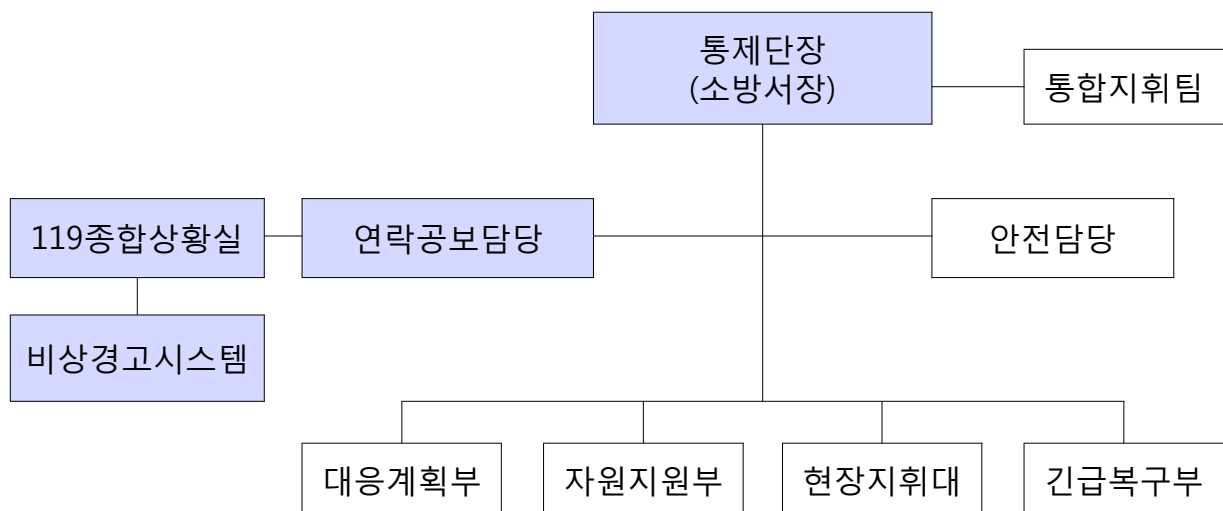
제2절 비상경고 계획(#2)

1. 목 적

-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경고, 재난상황 통보, 대중전파,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을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자

-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연락공보담당, 비상경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 119상황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지는 비상경고기관이다. 비상경고기관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 연락공보담당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 전파를 위하여 비상경고 발령을 결정하면,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통제단장으로부터 메시지 전파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렌, 현장방문(방송차량 순회방송 포함) 및 유인물 배포, 비상방송시스템,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비상경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비상경고시스템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비상경고시스템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대비 임무

- 119상황실은 재난을 대비한 일상적 업무로써,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임무달성을 위한 필요자원을 확보한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경고시스템 작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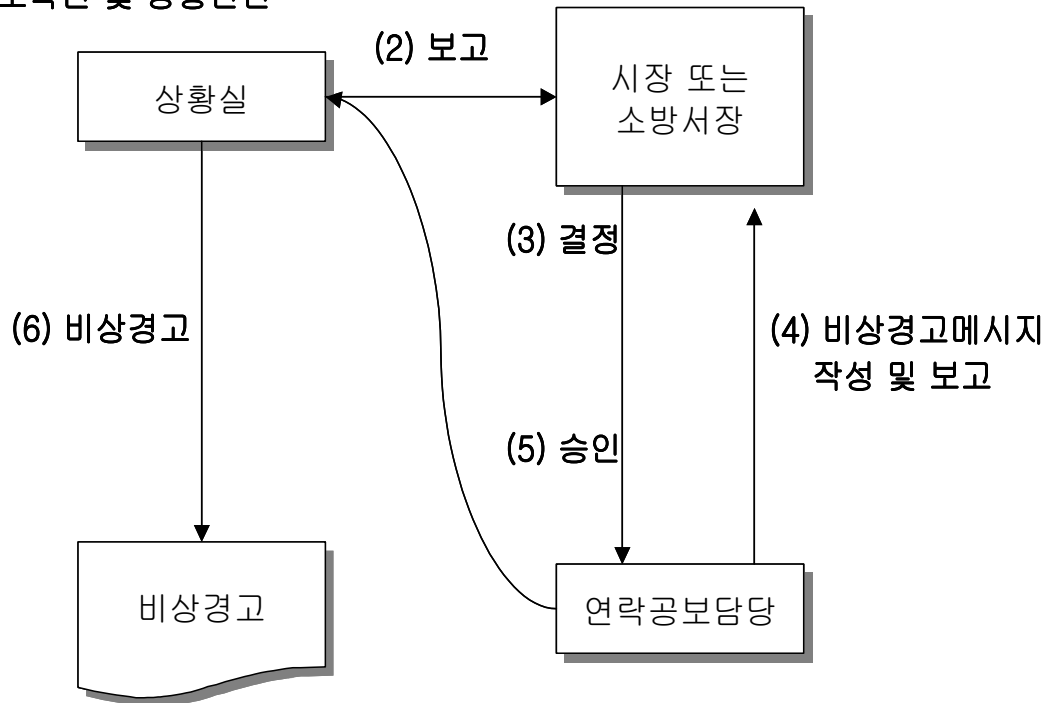
4.2 재난신고의 접수

- 119상황실이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시민의 신고전화
시민들은 목격한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 타 기관으로부터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119상황실로 즉시 통보한다.
 - 기상청의 기상예보
기상예보에는 단기, 중기, 장기예보 등 일기예보와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가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는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119상황실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이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위험상황은 악천후에 대한 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상황이다.
119상황실은 태풍, 홍수 등 주의보 발령시부터 기상청과 HOT LINE을 유지하고 실시간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비상경고준비를 한다.

4.3 비상경고 발령

- 119상황실은 재난신고를 접수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한다.

(1) 정보확인 및 상황판단



<비상경고 발령 절차>

4.3.1 정보확인 및 상황판단

- 119상황실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한다.

4.3.2 보고

- 119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119상황실의 상황 책임관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에는 선 비상경고발령 후 보고할 수 있다.
- 119상황실은 지속적으로 선착대의 장과 통신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락공보담당에게 보고한다.(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될 때까지 상황책임관이 연락공보담당의 임무를 대행)

4.3.3 결 정

-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은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비상경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119상황실 및 연락공보담당에게 통보한다.

4.3.4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및 보고

- 119상황실은 비상경고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 비상경고메시지는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책임관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3.5 승 인

- 시장은 비상경고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긴급 시 통제단장)
-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119상황실로 보낸다.

4.3.6 비상경고

- 119상황실은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비상경고메시지를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비상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

4.4 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련공무원 비상통지

- 비상경고발령이 결정되면, 119상황실은 자동비상경보시스템, 전화, 팩스, E-mail,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비상소집통지를 시작한다. 최우선 통지가 필요한 주요공무원의 비상연락망과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 첨부 13 참조
 - 주요 기관 목록 : 첨부 14 참조

4.5 인접 119상황실 통지

- 두 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구역에 걸친 대응3단계의 재난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실은 직접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인접 119상황실로 신고내용을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통지한다.
- 통지를 받은 인접 119상황실은 관할구역 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절차를 취한다.

4.6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

- 119상황실은 학교, 쇼핑몰, 병원 등 옥외의 비상경고를 듣지 못하는 대형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통지를 시작한다. 비상경고메시지는 팩스 및 전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형화재취약대상의 관계자에게 전송된다.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통지는 인접 119상황실에 대한 통지와 동시에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면, 인접 119상황실에 대한 통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 신속한 통지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사전 작성한다. 대형화재취약대상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중점관리대상 목록 : 붙임11 참조

4.7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 일반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4.7.1 사이렌 및 스피커

- 주민들에게 경고를 전파할 수 있는 옥외사이렌이 있다. 비상경고 발령 시 사이렌을 작동하는 절차는 진주시의 지침에 따른다.

4.7.2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

- 소방차와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은 옥외사이렌의 음향 도달범위 밖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한다.
- 한 대의 차량이 비상경고의 신호로 사이렌을 켜고 지역을 순찰하며, 그 뒤에 두 번째 차량이 따른다. 차량은 매 500미터(예시)마다 정지해서 확성기를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달하고 진행한다. 비상경고 전파를 위한 각 차량의 순찰경로 및 시간은 소방서와 경찰서가 사전 협약한다.

4.7.3 현장방문 및 유인물 배포

- 상황에 따라, 소방관, 경찰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재난예상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이 포함된 비상경고통지문을 모든 집집마다 전달한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비상경고통지문은 예측이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가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책임관이 신속하게 작성한다.

4.7.4 비상방송시스템

- 비상방송시스템은 다음의 두 경우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용된다.
 -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 비상방송시스템의 실제 가동이나 시험 가동은 시장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비상방송시스템 가동이 승인되면 연락공보담당은 1차 재난방송국에 제공할 비상경고 메시지를 작성한다. 메시지는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이 확인한 후 승인한다. 119상황실은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해 1차 재난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1차 재난방송국은 지역 내의 타 방송국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 대응3단계에 해당하는 재난상황에서는 비상발전장치가 없는 지방 라디오방송국이나 TV 방송국은 비상방송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 참고4 참조
-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라디오 방송국) : 붙임12 참조

4.7.5 비상경고 문자 발송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하면 도 119종합상황실은 도 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한다.

4.8 특별한 경우의 비상경고

- 119상황실은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비상경고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4.9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 대형화재취약대상 조기경보시스템 및 비상방송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비상방송시스템의 시험 가동은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10:00~10:30 사이에 시행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제3절 대중정보 계획(#3)

1. 목 적

-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재난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공공정보제공,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통제를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등으로 구성된다.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에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을 설치한다.
- 대중정보 제공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상시 운영되며, 운영요원들은 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대중정보 조직의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중정보센터 설치 후	
		A 조	B 조
연락공보담당	진주소방서 연락공보담당 (예방지도담당)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대응2·3단계에서 운영)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 연락공보담당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으며,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하위 4개 팀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 재난상황에서 정보수집, 비상경고 발령 및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도자료의 작성 및 기자회견 실시 등 대중정보 제공에 관한 모든 업무는 연락공보담당이 조정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여부 및 규모(하위 4개 팀 각각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책임이 있다.

- 119상황실은 재난발생 초기의 상황을 신속하게 시장 및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에게 보고하여 주민보호조치 등에 관한 비상경고가 신속히 발령되도록 한다.
- 119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시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3. 대응단계별 대중정보기능의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대중정보센터는 설치·운영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대중정보센터는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대중정보센터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연락공보담당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시기에 언론매체와 유관기관에게 확인된 정보를 제공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언론매체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응2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대응3단계의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 기능을 완전 가동한다.

4.1.1 대중교육 및 재난대비 임무

- 연락공보담당은 관할지역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을 기술한 대중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중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중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와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언론매체·공공기관·민간기관·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시 대중정보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1.2 비상경고메시지 작성

-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이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비상경고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을 결정하면,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하고 시장(긴급시 통제단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 비상방송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비상경고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안전수칙 : 해야 할 것/하지 말아야 할 것
 - (학부모를 위한)학교의 상황에 관한 정보(학기 중인 경우)
 - 위험하고 오염된 접근금지 지역
 - 야간 통행금지 실시 여부
 - 도로, 다리, 고속도로의 고가 교차로, 댐의 상황 그리고 다른 대체 경로
 -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피경로 및 행동요령
 -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일정 및 행동요령
 - 식량과 안전한 식수가 있는 위치
 - 보호시설, 진료시설, 병원의 위치 및 상황
 -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 화재에 대비한 지시사항
 - 긴급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자제 요청)
 - 시설이용, 공중위생, 시설물 폐쇄에 관한 지시사항과 예방조치
 - (필요시) 기상특보사항
- 녹음된 비상경고메시지를 매 시간 또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변경한다.

4.1.3 대중정보센터의 설치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 대중정보센터는 미리 지정된 운영요원으로 구성된다. 연락공보담당으로 지정된 자는 대중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대중정보 관련 교육수료자를 중심으로 최소 인원수로 결정하여 배치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중정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을 신속하게 비상소집하고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유선전화 및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할 때 대중정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통신수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는 재난의 규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업하여 다음의 하위 4개의 팀으로 구성할수 있다.
 - 방문자관리팀 - 실종자정보팀
 - 유언비어통제팀 - 자원봉사자등록소

4.1.4 정보의 수집

- 재난발생시 연락공보담당은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계획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와 업무연락 등을 검토하여 재난현장상황 및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통합지휘팀으로부터 각 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재난상황동안 연락공보담당은 다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확인·통제하고 배포한다.

분 야	정보 출처	대중에게 알릴 사항
전 기 수 도 가 스	한국전력 진주시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가스누출 여부 - 전기/수도의 공급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물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 -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공급중단 시기
통신수단	한국통신 진주시사	- 긴급하지 않는 전화 및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 - 119 대체 전화번호 제시
수송수단	한국도로공사 진주시청 진주역	- 대체 도로 - 공무원의 응소장소 - 기차 운행 여부 및 시간표
의료 및 보건시설	진주보건소 병원(경상대·고려·제일· 반도·한일·세란·복음)	-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 - 적십자가 설치한 피난장소 및 재난 복지안내소의 위치 - 정신보건, 복리서비스 연락처
피난시설	진주시	- 적십자사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곳 - 임시 피난장소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및 지침 사항 -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장소

4.1.5 보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 인명구조 상황과 재난현장에서의 행동요령 및 지시사항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에 우선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상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시 언론매체에 배포한다.
- 기자회견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기자회견과 필요시 실시되는 특별기자회견이 있다. 모든 기자회견은 대중정보센터에서 열린다. 연락공보담당은 기자회견시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시장 또는 통제단장으로부터 자료 배포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통제단장은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배포를 승인한다.
- 보도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상자 : 발표시각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부상자의 수
사망자에 대한 처리 사항(각 사망자별 안치소)
부상자의 부상정도 및 수용 병원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지명도
 - 재산피해 :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만 발표, 구체적 액수는 조사 후 발표
건물유형 등에 관련해서 기술자들의 견해(지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손실된 재산의 중요성
추가적으로 위험상태에 있는 재산
동일지역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재난현황
 - 발생원인 : 별도 조사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관계기관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조사중인 것으로 발표
최초 신고자, 목격자의 설명과 선착대원의 초기상황 설명
재난상황이 발견된 경로/방법
재난발생 이전에 있었던 위험징후
 - 재산보존 및 인명구조활동 : 활동에 참여한 대원의 수
현장에 있는 지휘관 또는 유명인사
사용된 장비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재난확대 방지 조치

재산보존 조치

애완동물과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영웅적 활동 사례

- 기타 복구상황에 관한 정보
- 전화번호 : 실종자정보팀 · 유언비어통제팀 · 자원봉사자등록소 등
기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

4.1.6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 허가

- 연락공보담당은 재난지역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고 출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대피경계 반장과 협의하여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아 재난지역 내에서의 현장취재를 허가한다.
- 공동취재단이 재난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문자관리팀에서 담당한다.

4.2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센터는 기자회견이 열리며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장소이다.
- 대중정보센터는 자연재해난시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또는 지휘작전실에, 사회재난시에는 현장지휘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재난으로 인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곳에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된다. 대중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은 119종합상황실 대체장소와 동일하고, 대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제2, 3의 대체장소가 사용된다.
 - 제2 대체장소 : 김해소방서
 - 제3 대체장소 : 함안소방서
- 시 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 시청 총무부서는 대중정보센터의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통제반(경비지원팀)은 대중정보센터 출입자들에게 출입증 발급 · 출입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정보센터의 보안을 유지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재난상황에 따라 방문자관리팀,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자원봉사자등록소 등이 설치 · 운영된다.

4.2.1 방문자관리팀

- 방문자관리팀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재난전문가 및 다른 관할지역에서 온 공무원 등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의 방문일정을 관리한다.
- 공식적인 방문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하고 통제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통제단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공동취재단이 현장취재를 위해 재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취재일정을 조정하고 안내자를 지정한다. 재난현장의 지리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담당할 수 있다. 재난지역으로 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 상황에 따라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통제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4.2.2 실종자정보팀

- 실종자정보팀은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고 사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각 응급의료소, 병원, 경찰서는 실종자정보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 언론매체에 실종자정보팀의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2.3 유언비어통제팀

- 유언비어통제팀은 시민들과 언론매체가 전화로 문의하는 의문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용전화를 설치하여 특별한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들과 언론매체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용전화를 확보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잘못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정한다. 재난상황에 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모니터하는데 서식16의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를 사용한다.
- 시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유언비어통제팀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3항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유언비어통제팀의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4.2.4 자원봉사자등록소

- 자원봉사자등록소는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시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 자원봉사자등록소의 전화번호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4.3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

-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의 발생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초기 비상경고를 발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시 또는 대중정보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연락공보담당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 119종합상황실로 재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책임관은 신고내용을 평가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상황실의 상황책임관은 긴급한 주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비상경고 발령 후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119종합상황실은 기능별 계획 #2(비상경고)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연락공보담당자가 작성한 비상경고메시지를 시민에게 전파한다.

제4절 피해상황분석 계획(#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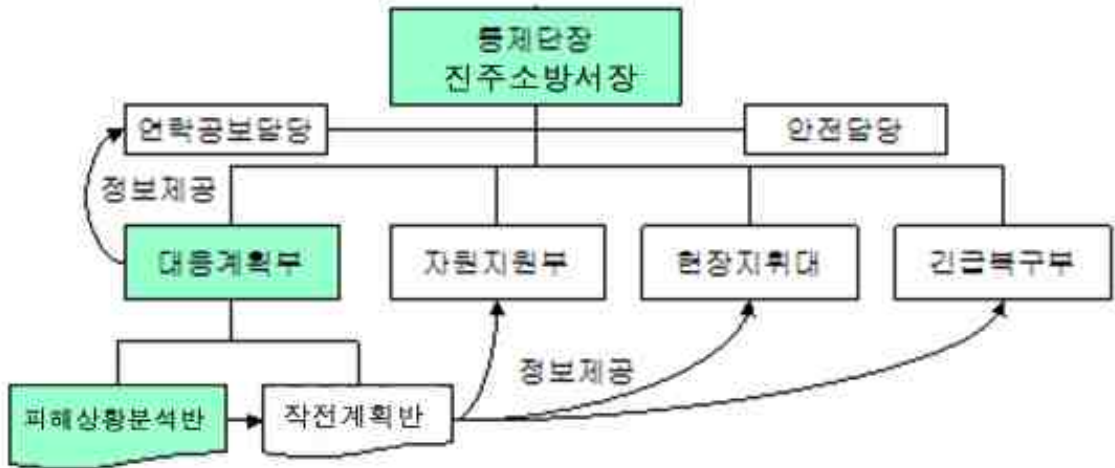
1. 목 적

-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응조치와 추가 자원소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본부의 피해보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상황분석반은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계획부의 일부로 운영된다.
- 소방관서 화재조사담당은 재난발생시 상황분석반장이 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대응3단계)하는 경우 본부 상황분석반장은 대응구역별 상황분석자료를 취합·분석하고 대응구역별 상황분석팀을 조정·통제한다.
- 국지적(대응2단계)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장이 피해상황을 분석한다.(본부 상황분석반은 필요시 지원)
- 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 발생이 발생하면 대응계획부장의 판단에 따라 그 운영규모를 결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 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 상황분석반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분석정보를 상황보고반과 작전계획반에 제공한다.
- 작전계획반은 상황분석반의 분석정보에 따라 필요자원을 평가하고 작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제단 각 부에 배포한다.
- 상황분석 결과는 외부지원(인접 자치단체나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 등)요청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로 활용된다.
- 상황분석을 위한 상황분석반은 다음과 같이 조직된다.

〈 임무수행절차도 〉



- 상황분석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상황분석반은 정보수집 활동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요원들로 구성된다.
 - 국지적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이 구성되고,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 및 각 대응구역별 피해상황분석반이 구성된다.
 - 발생 재난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가로 편입한다.
 - 피해상황분석반은 재난유형별 원인 및 피해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상시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 운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은 다음과 같다.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피해상황분석반장	구조구급담당	진주경찰서
원인조사팀	화재조사 담당자	진주경찰서
피해조사팀		진주경찰서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상황분석팀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상황분석팀은 대응구역별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상황분석팀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발생 우려시 조사

- 상황분석반은 홍수나 태풍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상황인 경우 재난위험반경 내 위험지역의 범위확인, 지도상의 표시, 상황기록, 대응자원의 출동태세확인 등과 같은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을 실시한다.
- 사전 위험성 분석활동은 상황분석반 원인조사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예상피해 분석활동은 상황분석반 피해조사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상황분석반장은 조사된 사항을 보고양식(서식4)에 의거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작전 계획반에 정보를 전달한다.
- 작전계획반은 자원지휘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에 재난상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4.2 초기 조사

-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은 대응계획부장으로부터 초기 브리핑자료와 대응방침 자료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선착대나 경찰로부터 재난상황에 관한 초기정보를 수집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본부 상황분석반은 대응구역별 상황분석반이 보고한 정보를 취합·분석한다.
- 피해조사팀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록한다.
- 원인조사팀장은 피해를 분석·평가하고, 상황보고반장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 상황보고반장은 재난상황보고서를 대응계획부장을 통하여 통합지휘팀 회의에 제출하고, 작전계획반, 현장대응부 및 긴급복구부에 현장상황정보를 전달한다.

- 결재된 재난상황보고서는 메시지센터에 보내지고 전달된 정보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전파된다.
- 각 팀들은 초기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첨부 0)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3 재난피해 상황정보 수집

- 피해조사팀장은 사유재산피해(집, 공장, 기타 사업체 등) 조사를 위한 팀과 공공재산피해(다리, 도로, 학교 등)조사를 위한 팀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원인조사팀장은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재난유형별 상황분석 전문가팀의 보충을 결정한다.
- 각 팀들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피해조사편람(첨부 0)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와 형식을 활용한다.

4.4 최초보고

- 최초보고는 보고서식 (서식 22)으로 작성한다.
- 대응계획부장은 잠재적 재난 및 발생한 재난의 초기상황에 관한 초기 정보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상황보고반장은 결재된 상황보고서를 119종합상황실을 거쳐 시도지사와 소방청 등에 보고한다.

4.5 재난사태 선포

- 재난상황이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여 전체적인 자원운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통제단장은 상황분석반의 보고서를 근거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한다.
- 상황분석반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재난 선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제공한다.
- 시·도지사는 상황보고서와 추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역재난을 선포한다.

4.6 지원요청

- 재난상황이 지역의 자원으로 대응과 복구가 어려워 인접 자치단체나 중앙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 대응계획부장(상황분석반장)은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지원요청은 상황에 따라 최초보고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추가자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지원요청서(서식23)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상황분석반은 재난상황의 작성,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세한 설명서를 작성한다.

4.7 정보의 표시

- 상황분석반은 재난발생 예측지역, 실재 재난발생 지점, 시설물, 피난로, 긴급대피 지역(소), 피해를 입은 사람 수, 피해정도,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등의 정보들을 지도상에 표시한다.
- 상황판에는 상황평가, 피해를 입은 집, 건물의 수, 피해를 입거나 폐쇄된 도로, 다리, 긴급대피소 대피인원 등을 포함한 현재의 재난상황을 표시한다.
- 정보제공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근정보로 갱신하여 표시한다.
- 정보표시 작업은 피해상황분석반 피해조사팀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8 대중정보 제공

- 상황보고반은 통제단 연락공보담당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고서(서식24)를 작성한다.
-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재난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은 대응계획부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4.9 기록유지 및 최종보고서 준비

- 상황보고반은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서식25)를 작성한다.
- 여기에는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상황보고반장이 담당한다.

4.10 재난자료의 제출 및 확인 준비

- 상황보고반은 피해상황 최종조사보고서(서식25)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장 및 중앙통제단 등에 제출한다.
- 상황분석반은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비디오, 사진 등을 보관한다.
- 상황분석반은 소방청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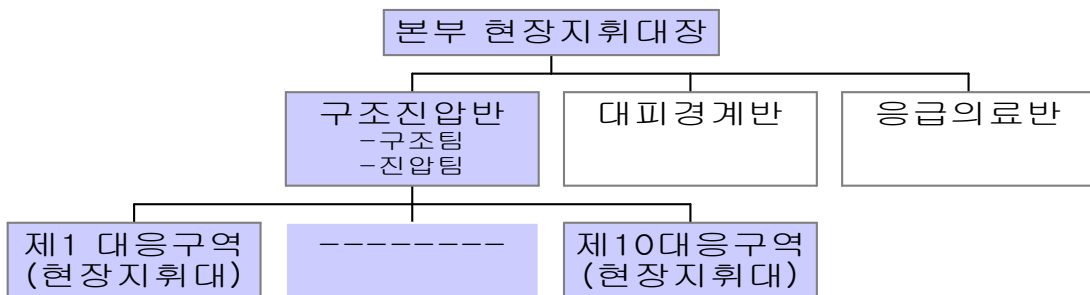
제5절 구조·진압 계획(#5)

- 기능별 계획 #5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구조진압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지정하고 임무를 할당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통제단장(구조진압반장)이 작성하고, 구조진압분야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1. 목 적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위험상황진압을 위한 대비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재난 발생 초기 대응구역별 소방자원은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조정 통제한다.
- 소방서의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은 모든 소방자원의 조정통제를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대응2단계, 또는 대응3단계의 재난 발생시 2 이상의 소방서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본부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이 각 대응구역별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을 조정 통제한다.
- 각 현장지휘대장 구조진압반장은 현장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상황정보를 확보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각급 119종합상황실(119상황실)과 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진행 중 혹은 계획 중인 대응활동, 배치되었거나 배치계획중인 소방자원(인력·장비)에 대하여 119상황실에 보고한다.
- 현장지휘대 구조진압반장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자원동원을 요청하여 재난지역의 전반적 소방자원을 배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지휘대장	진주소방서 지휘조사팀장	*육군 8962부대(진주대대) * 공군교육사령부
구조진압반	진주소방서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	
구조팀	진주소방서 구조대	
진압팀	진주소방서 각119안전센터	

- 구조진압반 조직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구조진압반장	지휘조사팀장(비번)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구조팀	구조대장		
진압팀	안전센터장		

- 소방관서는 관할구역내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상황이 관할구역 경계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소방관서장은 소방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긴급구조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진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지휘대 부분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소방서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되고, 인근 소방서 구조진압반과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부분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소방본부 구조진압반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수색 및 구조

- 소방관서는 인명수색 및 구조활동을 조정 통제할 책임이 있다.
- 인명수색 및 구조를 위한 초기대응과 전문적 대응은 119구조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19안전센터가 수행한다.
- 이 계획에 참가하는 각 대별 기관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수색대 : 소방서 자원으로 구성된 임시 조직으로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 구조대(소방서 구조대) : 구조장비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의 전문적 구조를 담당한다.
 - 구급대 : 소방서 소속 구급대와 기타 구급 지원기관 자원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소 자원으로 사고현장에서 사상자 분류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장비구조대 : 소방관서 소속 굴삭기 및 지원기관의 중장비로 구성된 특수자원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장애물 제거, 건축물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4.2 안전점검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소방특별조사반 1인과 건물안전진단 전문가 1인, 전기전문가 1인, 가스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과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종합적 안전진단업무는 대책본부의 조정통제에 따라 소방자원을 지원한다.

4.3 비상발전 및 조명

- 한국전력은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의 사용을 조정하고 선점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이다.
-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서의 비상발전 및 조명설비 자원도 사용된다.
-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는 비상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등을 갖추고 있다.

4.4 가스 차단

- 가스안전공사는 재난시 가스를 차단하는데 주도적인 책임기관이다.
- 소방관서는 재난현장의 초동대응기관으로 재난초기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가스안전공사의 긴급복구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차단한 가스밸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5 오염제독

- 소방관서는 오염지역의 제독을 실시하는 책임기관을 지원한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계획(2.4 유해화학물질 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6 방사능 탐지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훈련된 대원과 방사능재난 대응장비를 갖추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초동 현장대응은 소방관서의 책임이다.
- 구체적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2.4. 방사능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4.7 고립주민 원조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도로유실, 폭설, 홍수 등으로 고립된 개인 또는 주민이 음식이나 약품의 보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 이러한 고립주민 원조임무는 긴급구호반장과 조정한다.

4.8 자원집결지 운영

- 설치 목적 및 책임
 - 집결지는 각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자원집결, 임무할당, 장비수거지점, 기타 안전지대로의 대피시 인원점검을 위한 베이스기지 등의 기능을 한다.
 - 각 소방서 자원지원부장은 집결지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다수의 소방서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원집결지 운영책임은 소방본부 자원지원부장에 있다.
 - 집결지 운영시 집결지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성여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한다.

- 설치조건
 - 재난발생시 다수의 소방서가 대응하는 경우
 - 하나의 소방서가 관할구역 외에서 다수의 파출소 및 구조대 자원의 합류가 필요한 경우
- 설치위치
 - 집결지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활동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 기타 팀 구성, 배치, 임무수행절차 등은 현장지휘 SOP에 따라 수행된다.

4.9 응급의료

- 각 대응구역별 소방관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다수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는 응급의료소장이 조정 통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세부적인 임무수행방법과 절차는 기능별 계획 #6(응급의료계획)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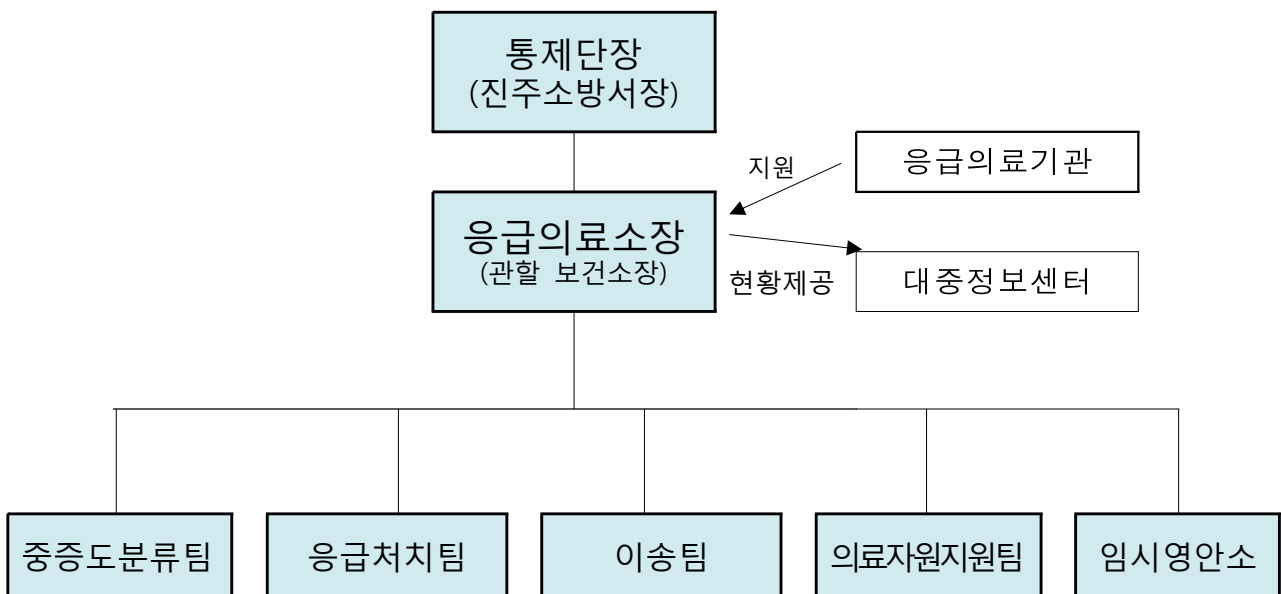
제6절 응급의료 계획(#6)

- 기능별 계획 #6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응급의료 대응 방침과 임무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대량 사상자 발생의 처리절차를 다루고 이 절차는 다른 기능별 계획 및 기본계획상의 지휘통제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소장(소속기관 직책)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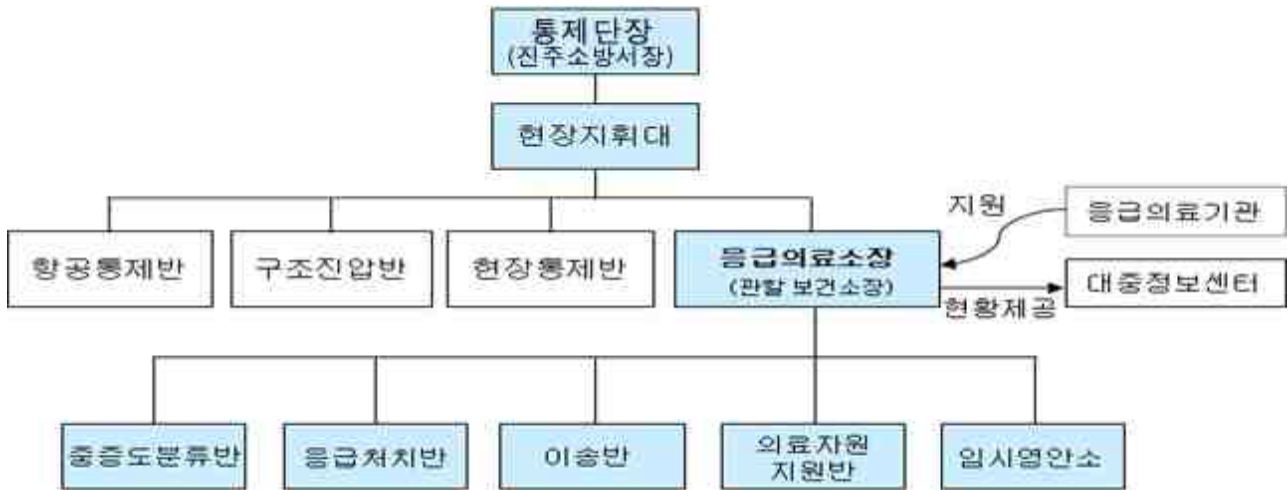
1. 목 적

- 재난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직적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해 재난 희생자들의 소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건소장은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되며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 응급의료소장으로 지정된 자는 모든 응급의료서비스 활동을 위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제정된 절차에 따라 병원 및 단체들과의 연락을 위한 연락관을 지정하며, 재난 희생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활동 및 다른 지원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지원기관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 자원을 지원하며 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응급의료대응 책임기관	응급의료대응 지원기관
- 임시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시 : 진주소방서 현장지휘관(선착구급대)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시 : 진주보건소장(부재시 임무승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경상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장) - 제일병원	- 진주보건소 - 경상대학교 병원 - 고려병원 - 제일병원 - 반도병원 - 한일병원 - 복음병원 - 세란병원 - 바른병원 - 지역 DMAT (재해의료지원팀)

○ 운영요원

반별	운영요원	
	소방팀	의료팀
중증도분류반	응급의료반(구급담당자) 구급대원	진주시보건소 신속대응반 지역 의료기관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		

○ 대응3단계 운영요원

반별	운영요원			
	소방팀		의료팀	
	A 조	B 조	A 조	B 조
중증도분류반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진주보건소 도·지역 DMAT 기타 의료기관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				

○ 임무요약

- 시 응급의료소는 재난발생시 진주시 관할구역내의 응급의료 업무를 통합 조정 통제 할 책임이 있다.
- 응급의료소는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 등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다.
- 재난발생시 모든 응급의료 지원기관들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구조통제단 및 119상황실과 통신체제를 유지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개요	비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 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 응급의료분야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 시 대응절차를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연락에 따라 응급의료팀(구급차)이 사고현장에 급파된다. - 각 구급대는 현장도착시 소방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중증도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소방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응급의료반 각 구급대 및 반은 현장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이송반은 자동으로 가동되고, 중증분류반, 응급처치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합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구성)한다. - 소방본부 통합 응급의료소는 현장응급의료소 중에서 통제단장(소방본부 응급의료팀장)이 지정운영한다. - 통합 응급의료소 각 반은 관할구역별 현장응급의료소에 급파된다. - 각 반은 현장도착시 각 소방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통제를 받아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모든 응급의료소(중증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의료자원지원반, 임시영안소)는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응급의료소 각 운영요원은 아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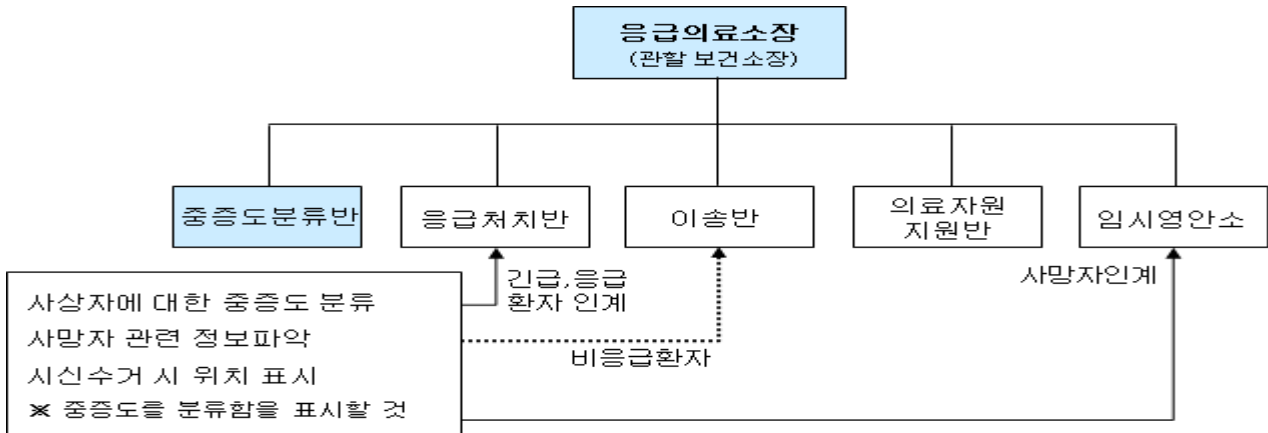
4.1 현장응급의료소장

-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현장 인근 안전한 장소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의료자원공급 및 임시영안소를 운영한다.
- 이송반의 설치는 구급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넓은 장소를 지정한다.
- 응급의료 임무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응급의료소장은 사상자 및 사망자 명단을 대중정보센터에 제공하여 재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구호반장이 재난심리상담 등 응급의료업무와 관련된 자원 요청 시 책임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4.2 중증도분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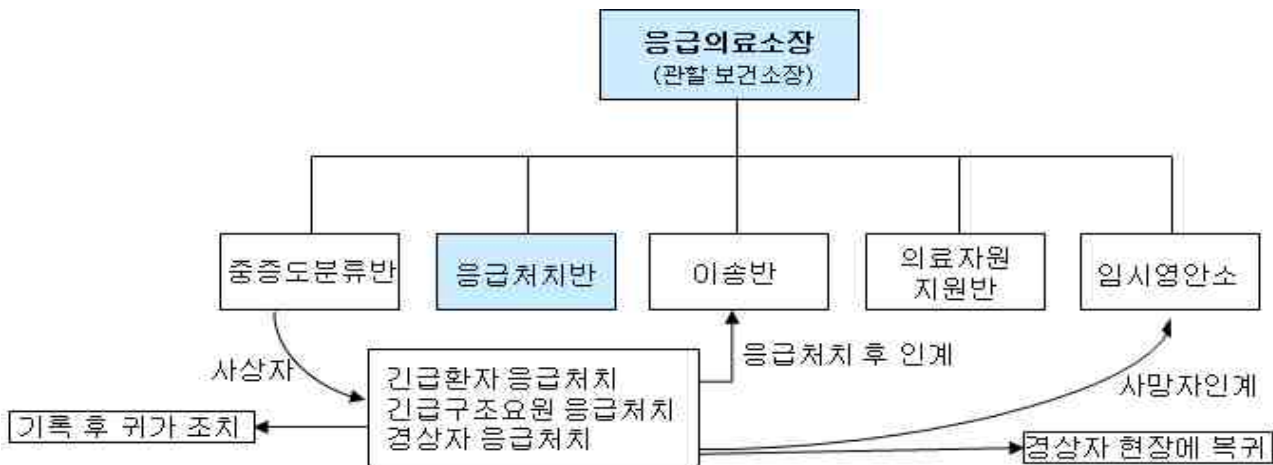
- 분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대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중증도분류반 운영요원을 지정한다.
- 분류반 운영요원은 사상자를 신속하게 아래의 4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적 색(긴 급) : 수분 혹은 단 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 황 색(응 급) :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 녹 색(비응급)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
 - ※ 대량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의원 진료 받을 것을 권고 후 귀가 조치
 - 흑 색(사 망) :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분류반 운영요원은 해당복장 등을 착용하여 자신이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
- 시신 수습 시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수거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 한 장소에서 2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된 경우 번호 기입
-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는 신원파악을 위하여 임시영안소에 제공한다.
- 부상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응급처치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중증도분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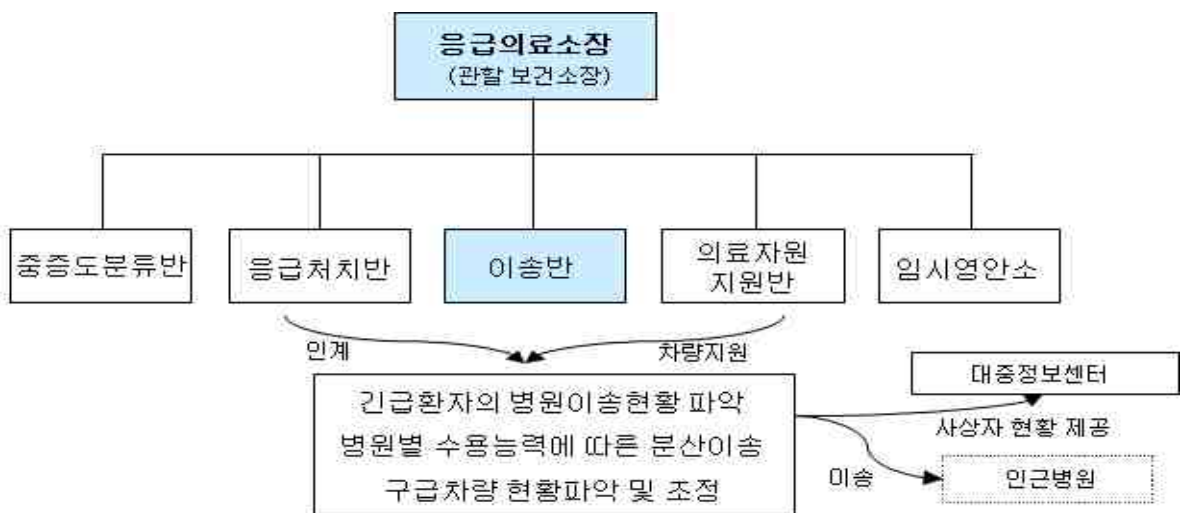
4.3 응급처치반

- 응급처치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비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의 응급실이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기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한 후 귀가조치 시키며,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응급처치한 내용을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한다.
- 응급처치 중 의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거나, 구조된 사망자가 응급처치반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임시영안소에 인계한다.
- 연락공보담당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급의료소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제공한다.
-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의료자원지원반를 통하여 자원지원부에 즉시 지원을 요청하여 원활한 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응급처치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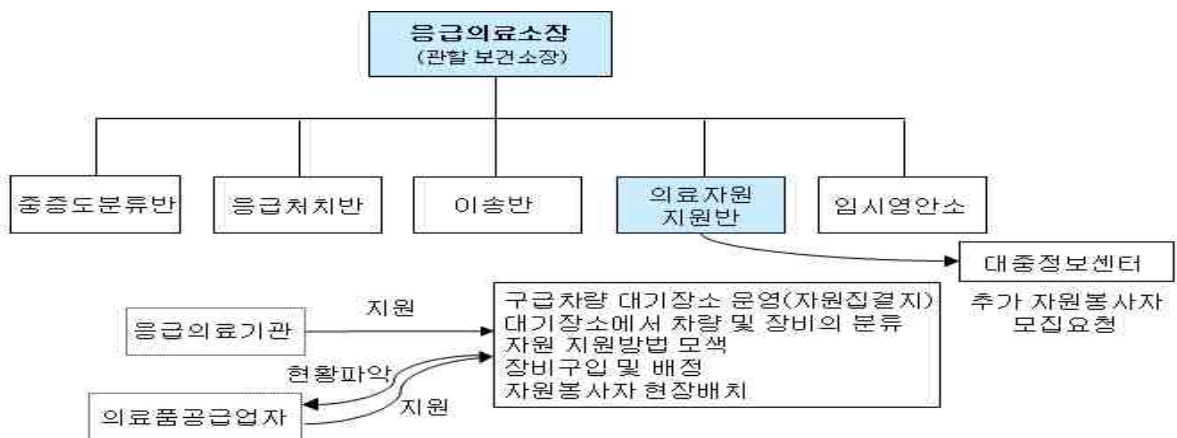
4.4 이송반

- 이송반장은 부상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이송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송반장은 의료자원지원반과 함께 구급차, 특수구급차, 영구차와 같은 차량 운영을 조정한다.
 - 차량 동원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이 구급차량 때문에 정체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동원한다.
 - 이송반장은 차량의 운영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① 운행 가능한 구급차
 - ② 이용되고 있는 구급차
 - ③ 이송 병원 현황
 - 이송반원은 사상자 이송현황을 이송반에 제출하고 부착된 증증도분류 및 구급일지를 기록·보관 후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대중정보센터 등에 통보한다.
- 환자분산업무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 분산수용능력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사상자의 이송은 손상유형과 각 병원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분산이송 한다.
 - 이송반장은 실시간 확인 가능한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자 수용능력에 따라 분산 이송한다.
 - 적색(긴급)으로 분류된 사상자에 대한 이송은 SOP402(다수환자 발생시 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이송반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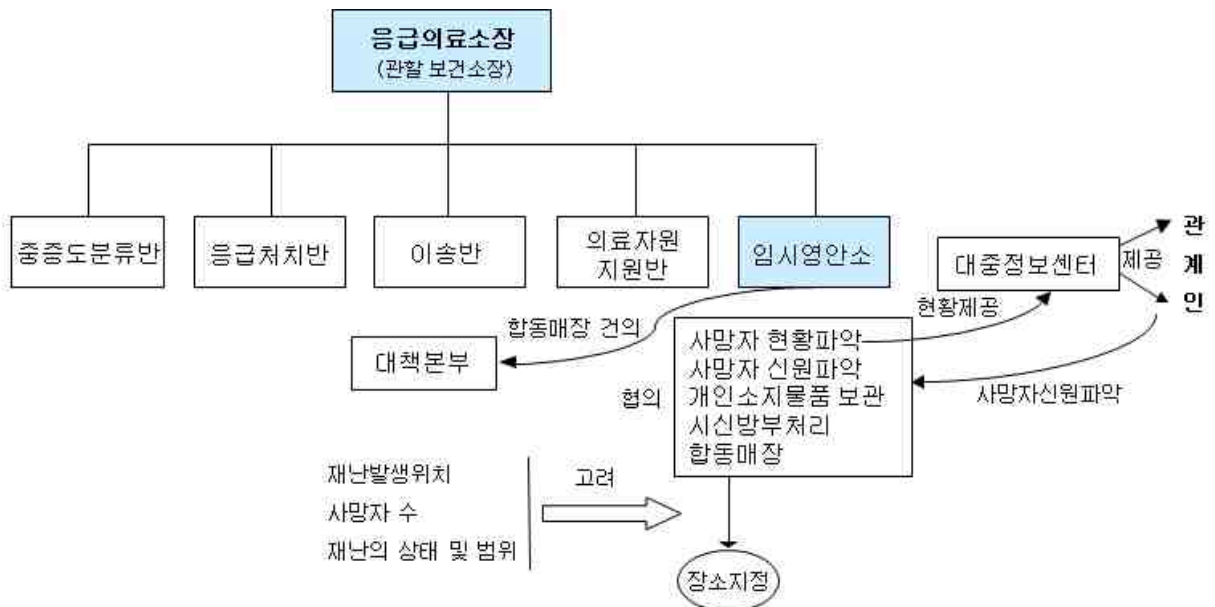
4.5 의료자원지원반

- 구급차대기소 운영
 - 구급차대기소를 자원대기소에 설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차량과 직원들이 현장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 현장에 모인 응급의료서비스 차량 및 직원들은 도착 즉시 구급차량 대기소에 집결하여 현장임무를 지시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 의료자원지원반은 구급차대기소에 집결된 자원현황에 대하여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각 반별 자원(구급차)동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한다.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필요시 구급차 대기소 자원을 관리할 대기분대장을 임명한다.
 - 자원의 동원 및 배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공급물품 및 장비
 - 모든 구급차량에 재난발생 시 필요한 의료물품을 비축하여야 한다.
 - 각 반장이 추가 물품을 요구 시 대기소에 있는 자원을 즉시 배정한다.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추가로 필요하거나 드물게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 및 배정한다. → 의료물품공급사업장 목록 : 자원동원메뉴얼(응급의료분야) 참조
- 자원봉사자
 -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자원집결지 및 인력지원센터(적십자사)에서 통보된 간호사, 의사, 응급구조사, 기타 유사 자격자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자원 지원 요청 시 각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의료자원지원 반장은 추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하여 대중정보센터(자원봉사자등록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의료자원지원반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4.6 임시영안소

- 임시영안소 관리반장은 사망자들의 신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시영안소 관리반장은 사망자 수 및 관련된 정보를 즉시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하고 대중정보센터(실종자정보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인척 등 관계인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신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경우 X-Ray 또는 치열사진 등을 확보 한다.
- 개인 소지품에 꼬리표를 붙여 시신(사체포 또는 사체낭에 안치)과 보관하며, 시신과 분리된 미확인 물품 및 의복은 시신과 별도 보관한다.
- 부패를 막기 위한 적절한 냉동보관이나 방부처리가 불가능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대책본부에 합동 매장추진을 건의한다.
- 임시영안소 관리반의 운영은 아래와 같다.



4.7 대응단계별 매뉴얼

대응단계	대응매뉴얼
초기 단계 (재난발생 1 ~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자원 및 사상자들의 응급처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 단계별로 시간한도를 정한다. * 응급의료자원을 아래와 같은 사항에 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활동 - 특수재해 부상자에 대한 의료대응활동 - 각 병원별 응급의료기능의 보강
중기 단계 (재난발생 6 ~ 1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장에 응급의료소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후기 단계 (재난발생 12시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응급의료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 시 응급의료반 자원들에 대한 오염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 종료 시 일상적인 업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4.8 응급의료 통신(예)

- 구급차와 병원간의 통신은 무전기(구급전용 지정채널)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구급대원들 간의 통신은 각 재난대응구역별로 UHF 무전기를 사용하며 주파수는 495.95MHz이다.
-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와의 통신은 주파수가 170.70MHz인 VHF 무전기를 사용한다.
- 응급의료서비스 직원들과 현장응급의료소의 통신은 주파수가 170.70MHz인 UHF 무전기를 사용한다.
- 각 단위 지휘관(각 반장 및 지원기관단체 지휘관)은 각 소속 지원기관별 비상용 휴대 전화를 확보 소지하여야 한다.
- 무전기 또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재난보조통신시스템의 배정을 요청한다.
- 기타 통신수단은 기능별계획#11 재난통신 계획(P156)을 참조한다.

4.9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응급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 2018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추진계획(매년 119구급과 별도 수립·시행)

□ 훈련개요

- (훈련기간) 년중
- (훈련횟수) 소방서별 연1회 이상
- (훈련방법) 구급대 주도 별도훈련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 * 매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사고유형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수사상자 발생사고 또는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과 동일한 사고
 - 사상자 규모 : 40명 이상 발생한 사고로 설정하여 대응훈련 실시

□ 훈련평가

- (평가대상) 각 시·도 소방본부별 1개 소방서(그 외 자체평가 실시)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합동평가(소방청 1~2명, 중앙응급의료센터 1~2명)
- (평가내용) 대응기관별 임무수행 적정성 및 상호 유기적 대응 중점 평가

□ 세부 평가내용

- 훈련계획의 적절성 및 동원자원관리 현황
 - 사고유형설정 및 시나리오 적절성,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 반영여부
 - 재난대응에 필요한 기관 참여, 자원대기소 및 집결처 설치여부
- 선착 구급대장(원)의 명확한 역할 인지
 - 구급대장(원)에 의한 실시간 환자 중증도분류 및 분류표작성 등 명확한 역할(인계, 통제, 보고, 임무부여 등)
 - 보건소장에게 서면 인수인계서 작성·보고, 지휘(권) 이양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 역할 인지
 - 재난초기 소방관서 중심에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신속전환
 - 사상자 명단(현황) 파악·작성 및 관련 언론브리핑
 - 정확한 사상자 파악 위한 이송 의료기관 연락관 파견
 - 통제단장에게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인수인계, 현장지휘부와 실시간 보고체계 유지 등
- 유관기관 협업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능력
 -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작성
 - 평상시 응급의료자원(현황) 관리 여부
 -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재난 초기부터 활동 가능토록 신속한 상황전파 여부
 - 현장응급의료소 인력 및 장비, 임시영안소 설치·운영·관리의 적절성
 - 의사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 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 실시간 이송현황 및 병상정보, 수용능력 등 파악(정보통신 매체 등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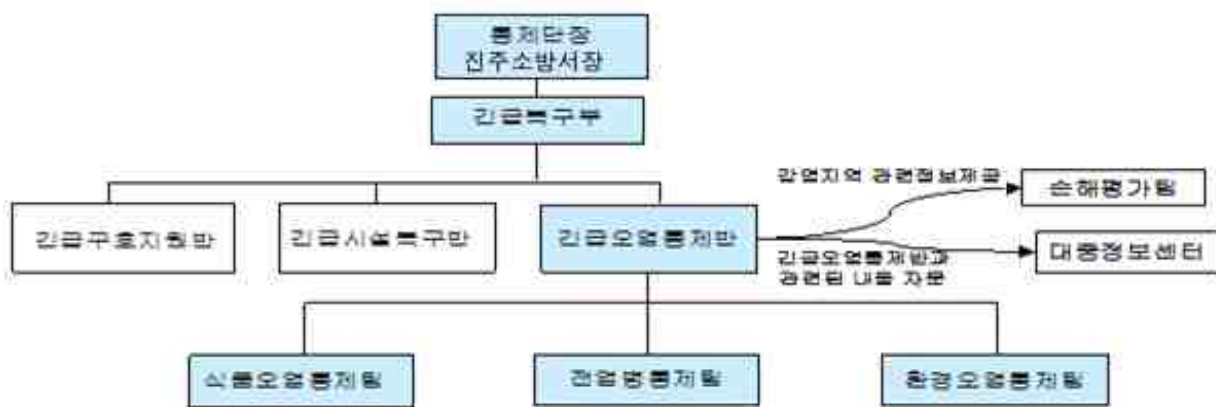
제7절 긴급오염통제 계획(#7)

- 기능별 계획 #7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계획에서 규정된 긴급오염통제 분야의 정책과 임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별 계획 중 하나이다.
- 이 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긴급복구부장(소속기관 직책)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주요 지원기관(지자체, 보건소, 지역환경청 등)가 작성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계획의 대응절차는 기본계획 및 다른 기능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목 적

- 비상사태 또는 재난상황에서 지자체, 보건소, 지역환경청 등 관련 주관부서와 협업 지원을 위해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설명한다.

2. 운영조직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유관기관들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원여부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오염통제 자원을 조정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에 시료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면, 해당기관은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료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기능별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 재난초기 : 긴급복구부 긴급오염통제반 - 대책본부 설치운영시 : 대책본부 이관	① 진주시 환경관리과, 수도과, 하수시설과, 위생과 ② 진주시 농축산과, 보건행정과 ③ 낙동강유역환경청

- 긴급 오염통제반의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통제단 운영시(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긴급 오염통제반장	오염유형에 따른 수습주관부서 (진주시 환경관리과)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식품오염통제팀	오염유형에 따른 수습주관부서 (진주시 수도과, 위생과)		
감염병통제팀	오염유형에 따른 수습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농축산과)		
환경오염통제팀	오염유형에 따른 수습주관부서 (수도과, 하수시설과, 환경관리과)		

- 임무요약
 - 식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급수중단 또는 제한급수를 실시한다.
 - 재난지역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음식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재난지역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목욕탕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 한다.
 - 오염된 해충 및 동물 통제방법을 강구하고 방역작업 등 필요조치를 수행한다.
 - 오염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를 감독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인체유해 여부를 판단, 쓰레기 또는 잔해물 등에 의한 오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개요	비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 임무 수행	- 각 기관단체별 일상적인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 임무 관련분야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재난시 대응절차를 개발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 긴급 오염통제반은 가동되지 않는다. - 현장지휘관에 의해 재난현장의 오염통제임무가 수행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 119종합상황실의 요청에 의하여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사고 현장에 급파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이 현장 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하고 현장 지휘관의 긴급오염통제반장의 역할을 이양 받아 긴급오염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반장은 재난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오염통제팀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동 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 긴급 오염통제반(식품오염통제팀, 감염병통제팀, 환경오염통제팀)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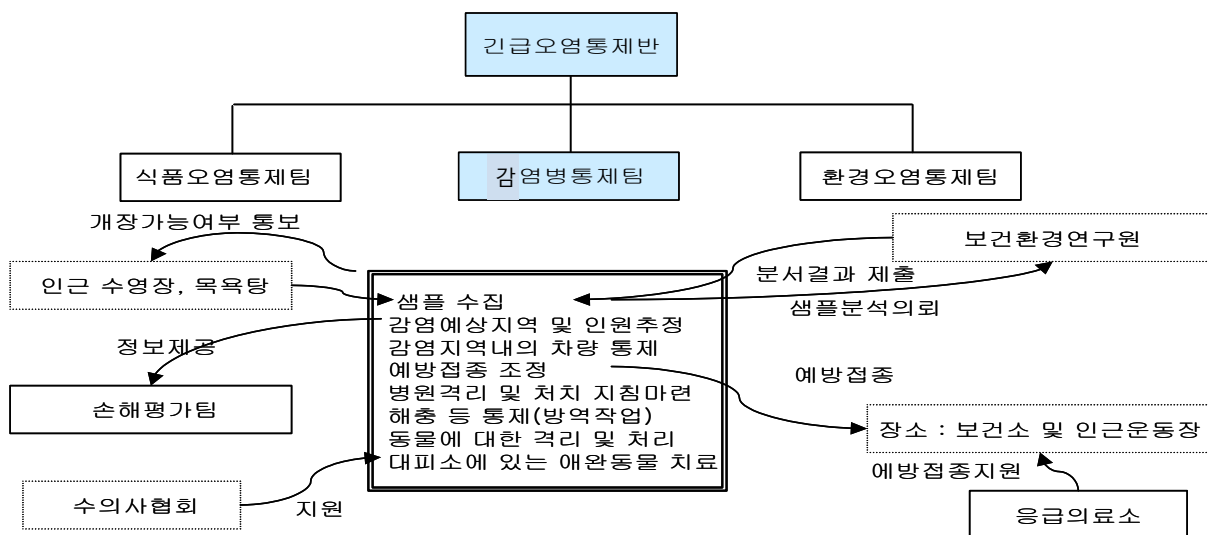
긴급오염통제반은 아래의 임무들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긴급 오염통제반장

- 각 팀별 임무를 수행할 운영요원의 비상소집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오염통제반의 각 팀별 임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상수도 오염통제, 급수통제, 재난지역 인근 수영장 및 목욕탕 등에 대한 오염여부를 결정한다.
-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책본부에 방역활동을 요청하고 격리지역에 대한 긴급 구조요원 및 차량들의 진 출입 통제범위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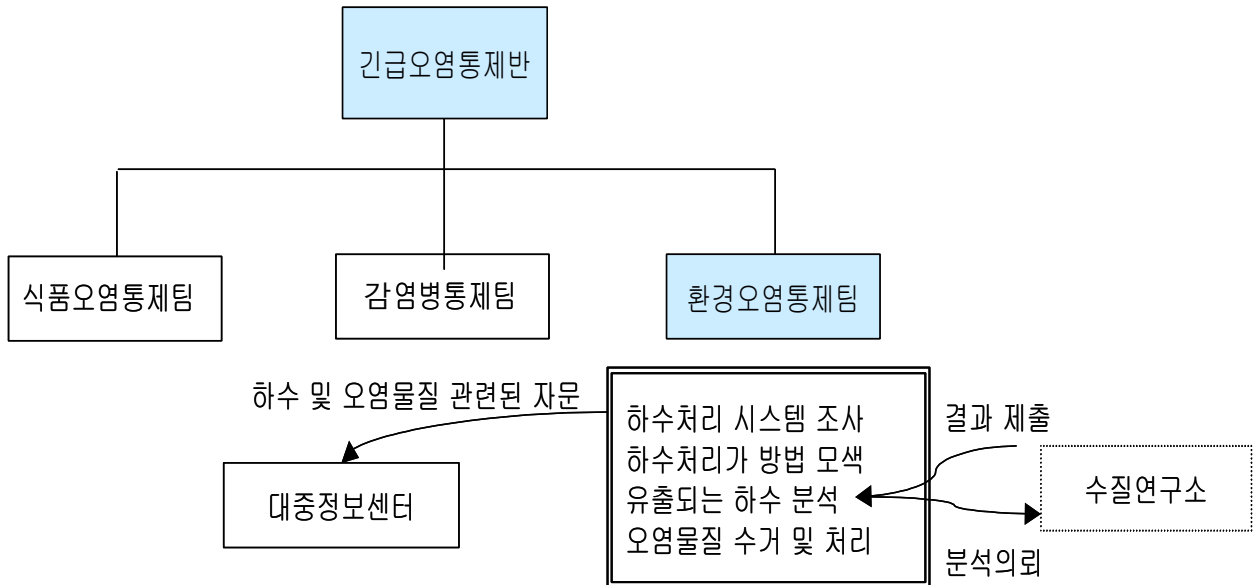
4.3 감염병 통제팀

- 재난지역 수질조사
 - 필요시 재난현장 인근의 수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 안전성 여부를 의뢰한다.
- 감염병 통제
 - 재난발생 지역에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예상 전염지역 및 인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책본부(또는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관할보건소, 긴급대피소 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안전을 위하여 오염지역내 인원 및 차량에 대하여 진입통제를 진주경찰서에 요청한다.
 - 감염병환자의 격리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계획부 상황분석반에 정보를 제공한다.
- 동물통제
 - 감염병 및 오염의 매개체인 곤충, 쥐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대책본부(또는 지원기관)에 요청한다.
 - 전염된 동물, 가축의 격리 및 치료업무가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산과, 수의사협회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수의사협회에 지원을 요청한다.
- 감염병통제팀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4.4 환경오염통제팀

- 재난지역 하수처리
 - 재난현장에서의 공용 및 개인 하수처리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한다.
 - 피해지역내 하수처리시설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하수처리 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유출 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 수질연구소 등 지원기관의 분석자료가 통보되면 환경오염통제팀은 기준치 초과 여부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
- 오염물질 처리
 - 시민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고현장의 오염물질 및 잔해물을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한다.



4.5 대응단계별 매뉴얼

단계	매뉴얼
<p>초기단계 (재난발생 1~6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오염통제임무의 운영 자원 및 이행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유지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세우고 각 작전단계별로 시간 한도를 정함 * 긴급오염통제임무 자원을 아래와 같이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식수) 안전여부 조사활동 - 감염병 예방접종 등 - 오염물질 처리 및 하수처리시스템 긴급복구
<p>중기단계 (재난발생 6~1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재검토한다. *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른 운영요원 파견을 재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조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통제단에 긴급 오염통제임무 운영 현황을 보고한다.
<p>후기단계 (재난발생 12시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의 활동들을 평가한다. * 장기 긴급오염통제임무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 특수재해시 긴급 오염통제임무 자원들에 대한 영향정도를 분석한다. * 상황종료시 일상적인 임무수행체계로 복귀시킨다.

제8절 현장통제 계획(#8)

1. 목 적

- 재난시 긴급구조활동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재난발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현장통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조직 및 운영

- 현장통제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현장통제 활동을 조정 통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여부 및 범위가 결정된다.
 - ※ 재난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경찰서장이 탄력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현장통제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현장통제반의 조직도 》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현장통제반장	민원실장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지원팀	민원업무담당자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 대피 및 경계반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현장통제반장	현장통제반(민원실) 진주경찰서(경비교통과)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			
수사지원팀			
교통지원팀			

- 현장통제반장은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단체는 필요에 따라 현장통제반장과 협의하여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을 위하여 현장통제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현장지휘관은 현장통제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 기 수행된 안전지원 및 교통통제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현장안전 활동 및 교통통제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현장통제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필요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현장통제기능은 일상적 수준에서 가동	
대응2단계	중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	
대응3단계	대형재난	현장통제기능은 전면 가동	

4. 임무수행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현장통제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1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

- 위의 각 지원팀은 시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으로 문란해진 치안질서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 현장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1.1 자원·시설 안전

- 재난이 발생하면 치안질서가 무너지고 불법적인 활동이 만연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 수사지원팀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긴급구조통제단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연락공보담당(방문자관리팀)은 통제단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안전지원팀에게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통제단을 출입하는 사람의 출입허가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통제단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나. 현장지휘소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현장지휘소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 현장지휘소는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명단을 **경비지원팀, 방범지원팀**에 제공한다.
- 안전요원은 현장지휘소를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기록지에 기록한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현장지휘소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다. 대중정보센터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구에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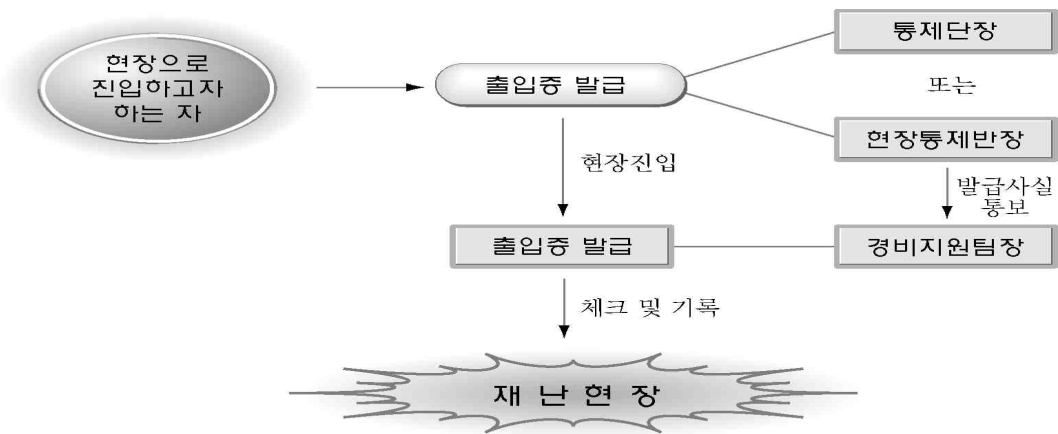
-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신이 기자(언론사 직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중정보센터 출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일지를 작성한 후 대중정보센터의 출입을 허가하는 청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 없이는 대중정보센터로의 출입이 금지된다.

라. 중요 자원·시설 안전

- 권한 없는 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중요 자원과 시설에 배치한다.
- 경비지원팀장은 관할구역 내 중요한 자원과 시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배치될 안전요원을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방법지원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출입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안전요원의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

마. 재난발생지역 안전

- 재난발생으로 도로 파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어떤 유형의 재난은 건물의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한다. 전기가 차단되면 경보시스템과 비상조명기기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 방법지원팀장은 재난발생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도보순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재난지역 내 건물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비상조명등을 사용해야 한다.
- 안전요원은 일반 시민의 재난현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 통제단장(연락공보담당)은 현장통제반 경비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재난현장에 대한 출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경비지원팀은 재난발생지역으로 출입이 허가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긴급구조요원 및 지원기관의 직원은 그들이 소속된 기관을 통하여 출입허가증이 발급된다.



바. 대피소 안전

-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은 대피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근무자를 배치하고 정복근무자를 배치하며 주차지역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 자원집결지의 안전

-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들은 인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하여 기관별 집결지를 각각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의 집결지를 설치할 수도 있다. 집결지를 설치하는 기관은 집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결지 설치기관의 인원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지원팀과 방범지원팀이 지원을 한다.

4.1.2 시민의 안전

- 안전지원팀은 신속한 응급처치 혹은 다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요구조의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순찰차를 지원한다. 이때 방범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 및 구조진압반과 수시로 통신하여 필요시 장비와 인원이 즉각 추가 투입되도록 한다.
- 경비지원팀장과 방범지원팀장은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긴급구호지원반과 협조 조정한다.
- 안전요원은 옥내에 구조가 필요한 거주자가 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 경우, 인명탐색을 위해 옥내로 진입할 수 있다. 가옥 또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계인의 동의 없이 즉시 탐색과 구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4.1.3 수형자의 안전

- 경비지원팀장과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협조하여 수형자 등을 통제 단장이 권고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 지역 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책임자는 재난발생시 수형자 등에 대한 긴급이송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송수단은 자체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원 지원부의 수송지원팀에 요청한다.
- 수형자 등의 수송 중 보안 및 안전조치는 자체교도대 등을 이용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경비지원팀 또는 방법지원팀에서 전투경찰 내지 의무경찰력을 지원한다.

4.1.4 임시영안소의 안전 지원

- 경비지원팀 또는 방법지원팀은 사체를 초기 수집지점으로 수집 운반하여 검시자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사망자의 신분과 소지품 식별 및 처리,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사망통지 등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과 임시영안소의 안전을 지원한다.

4.1.5 동물통제

- 경비지원팀, 방법지원팀은 축사를 이탈한 가축, 애완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애완동물보관소, 동물애호협회 또는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조하고 동물 수용장소를 찾고 각종 데이터를 기록한다.

4.1.6 분실물보관소

- 경비지원팀장은 분실물보관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 경비지원팀장은 대중정보센터를 통하여 분실물보관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주민에게 홍보한다.
- 재난으로 유실된 재산(분실물)은 습득 후 분실물보관소로 수집되어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또는 정해진 기간동안 분실물보관소에서 보관된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분실물 재산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재산상의 분실이 있는 사람은 분실물보관소에 신고한다.

4.1.7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작성

- 긴급구호반은 매년 청각장애자, 거동불편자 등과 같이 재난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서를 출판한다.
- 이러한 대상자의 명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긴급구호반장은 이 명단을 갱신·유지하고 현장통제반장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 현장통제반은 긴급한 상황 또는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 명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4.2 교통지원팀

- 교통지원팀은 진입통제, 교통통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응자원의 원활한 흐름과 2차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교통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4.2.1 진입통제

- 진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현장통제반장의 건의에 따라 통제단장 및 통합지휘팀에서 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다.
- 해당 대책본부장은 그의 명으로된 지방도로에 대하여 통행제한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해당자치단체의 규칙 또는 조례 검토사항)
- 진입통제지역 결정 후 보안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현장통제반 교통지원팀의 임무가 된다.

가. 바리케이드

- 현장으로 연결되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주요 경로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통지원팀의 요원이 배치된다. 2차 도로에는 적절한 주의문구와 함께 바리케이드만 설치한다.

나. 교통의 재배치

- 교통지원팀장은 재난현장 주변의 교통을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현장의 주변에는 적절한 우회로 표지판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통제지역으로의 진입

-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요원 및 대응자원들이 출입할 통로를 지정해두며, 이 통로는 대응하는 각 지원기관에 배당된다. 해당기관은 소속 요원들의 통로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라. 철도 진입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현장을 통과하는 열차 및 지하철 등의 증지를 지시하도록 진주역에 요청한다.(필요시)

마. 항공통제

- 교통지원팀장은 항공기가 재난현장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한다.(필요시)

4.2.2 교통통제

- 대피·소개가 되면 교통지원팀의 요원은 재난지역의 교통흐름이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주요 교차로에 배치된다.

4.2.3 통행금지

- 재난의 정도가 극심할 경우 대책본부장은 특정지역에 통행금지조치를 명하여 발효시키고 안전지원팀 및 교통지원팀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한다.

4.2.4 차량제거 조치

- 차량들이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 또는 차단하고 있다면, 교통지원팀은 도로로부터 차량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 교통지원팀장은 차량견인회사에 연락하여 도로로부터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사후에 통지한다.

제9절 긴급복구 계획(#9)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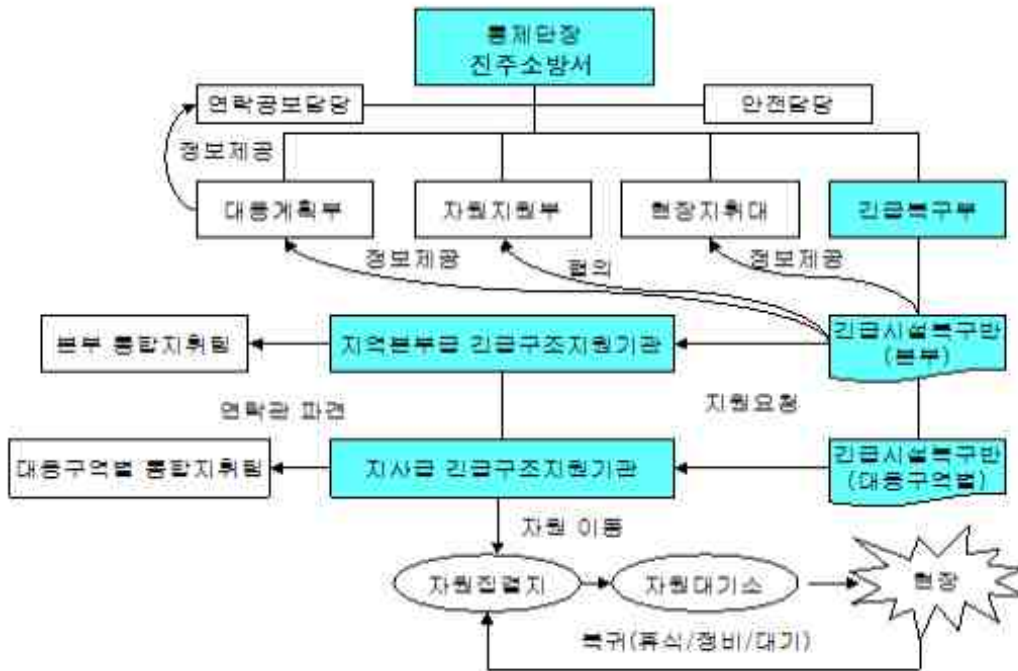
-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부서나 협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기능별 계획에 포함된 모든 자원들은 이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사용된다.
- 재난발생시 대응구역별 긴급복구는 대응구역별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
- 재난발생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조정·통제는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책임이며 자원지원부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대응구역별 긴급시설복구반장은 긴급복구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상황정보에 근거하여 자원동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투입을 결정한다.
- 추가 긴급복구자원 필요시 1차적으로 대응구역별 자원지원반과 협력하고 본부 자원지원부에 자원을 요청한다.
- 본부 자원지원부장은 각 대응구역에서 요청한 필요자원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자원을 조정·통제한다.
-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기관단체의 긴급복구자원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통제단 통합지휘팀에 상주한다.
- 연락관은 절차에 따라 각 긴급구조지원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임무를 분담한다.
- 각 소속기관 연락관은 관할 통제단장에게 현 배치자원, 배치예정인 인력과 장비, 임무수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지원기관들의 자원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장소이다.
- 자원대기소는 자원동원의 우선순위 즉 현장대응상황에 따라 즉시투입이 필요한 인원과 물자가 대기하는 장소이다.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는 필요에 따라 전체 집결지 또는 재난발생 대응구역별로 설치·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자원지원부장의 책임하에 설치·운영되고,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대장의 책임하에 설치·운영된다.
- 대응계획부장은 연락공보담당에게 긴급복구에 대한 대중정보를 제공한다.
- 연락공보담당이 출동하기 전까지의 긴급복구와 관련한 대중정보 전파는 119상황실이 담당한다.
- 임무수행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 임무수행절차도 》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긴급복구부	자연재난 : 진주시 시민안전과 사회재난 : 사고유형에 따른 주관부서	13개 협업부서
긴급시설복구반	해당 재난 수습주관부서	전기, 전력, 가스, 수도, 통신관련 기관·단체
긴급구조지원반	진주시 복지정책과	대한접시자사 경남지사

- 긴급복구 책임자 지정
 - 긴급복구부장
 - 자연재난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 사회재난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부재시 : 부서담당)
 - 긴급시설복구팀장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부재시 : 부서담당)

※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주관부서 지정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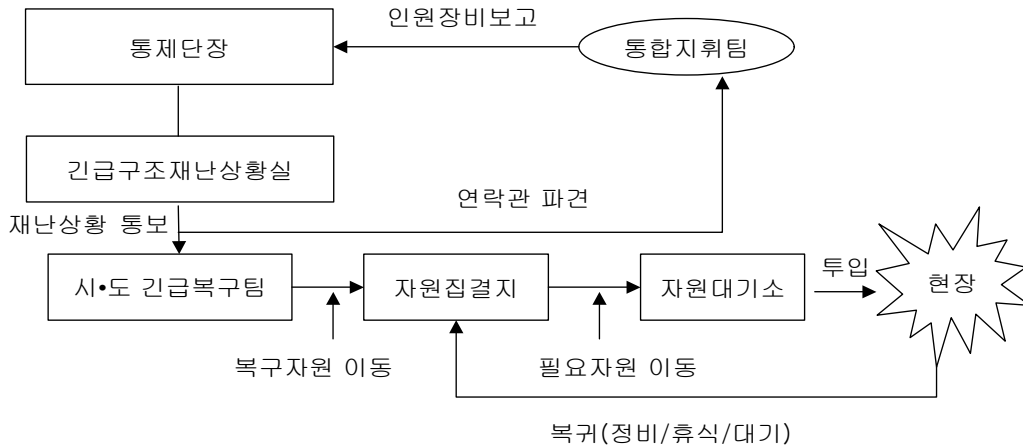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재난대비 임무.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긴급복구반은 필요에 따라 가동된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긴급복구반은 대응구역별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긴급복구반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4.1 재난현장 긴급복구 - 진주시청 등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를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각 지원기관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조현장의 진·출입,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는 잔해물 제거
 -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현장진입로에 대한 긴급복구 실시
 - 임시 잔해물 적치장소 지정 및 처리
 - 장기 잔해물 처리계획 수립
 - 파손된 소방용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 파손된 식수용 상수도 긴급복구 및 대체급수 강구
 - 필요시 민방위대원 등 인원 동원요청
 -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원보유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이 완료된 각 지원기관 긴급복구반장은 임무수행 결과를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복구반장에게 보고한 후 자원대기소로 복귀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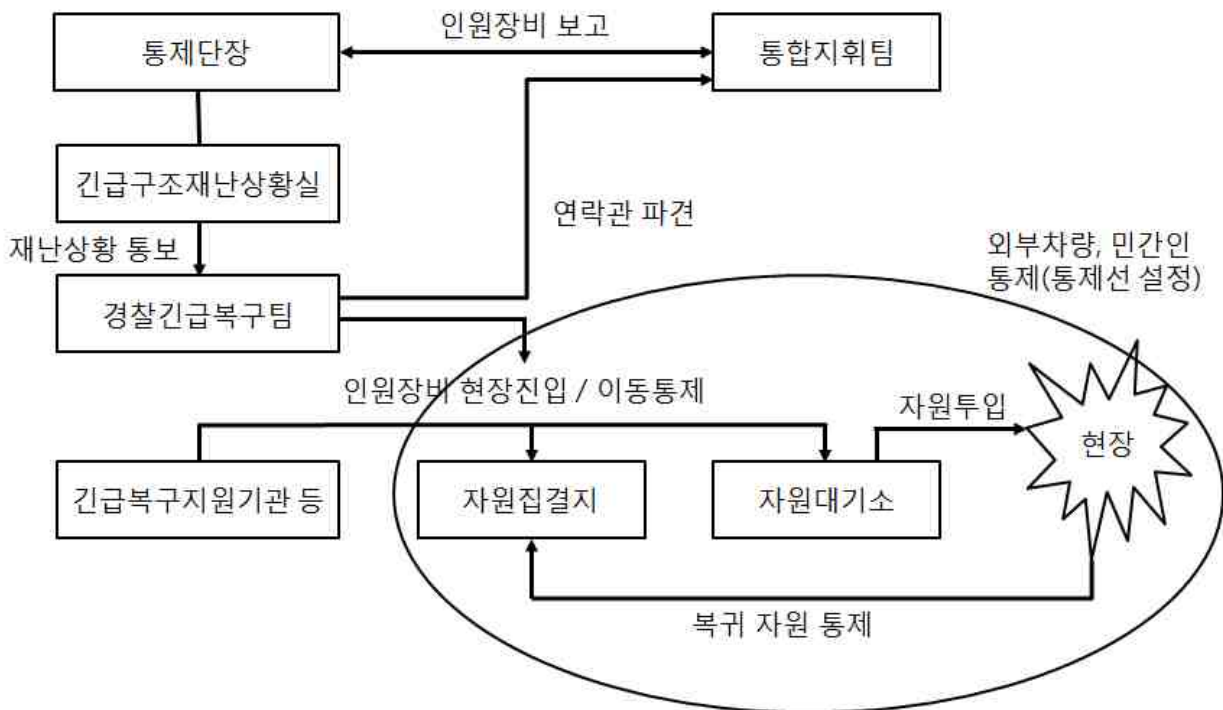


4.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진주소방서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인원과 장비, 물자 등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 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구역별 자원집결지는 관할 소방서가 되고, 시·도 차원의 집결지는 사전 지정된 장소 중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자원집결지는 대응구역별 소방서에서 선정한다.
- 자원지원부장은 사전 지정된 장소이외에 긴급복구자원의 진·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자원집결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최초 상황 통보시 복구자원이 자원집결지에 집결될 수 있도록 통보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은 현장지휘대와 교신을 실시하고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긴급복구 자원을 현장에 인접한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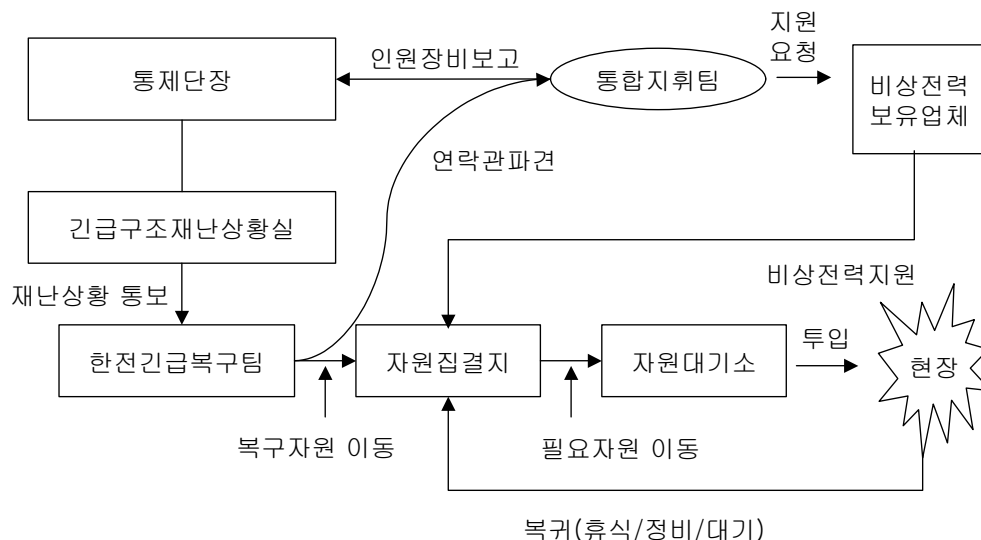
4.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진주경찰서

- 긴급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교대조를 편성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지역에 일반차량 및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임무 수행
 - 적정한 위치에 통제선 선정, 장애물 설치, 우회로 선정 및 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차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복구 자원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수송로 확보
 -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불법 주정차, 고장난 차량) 처리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를 긴급시설복구반장에게 보고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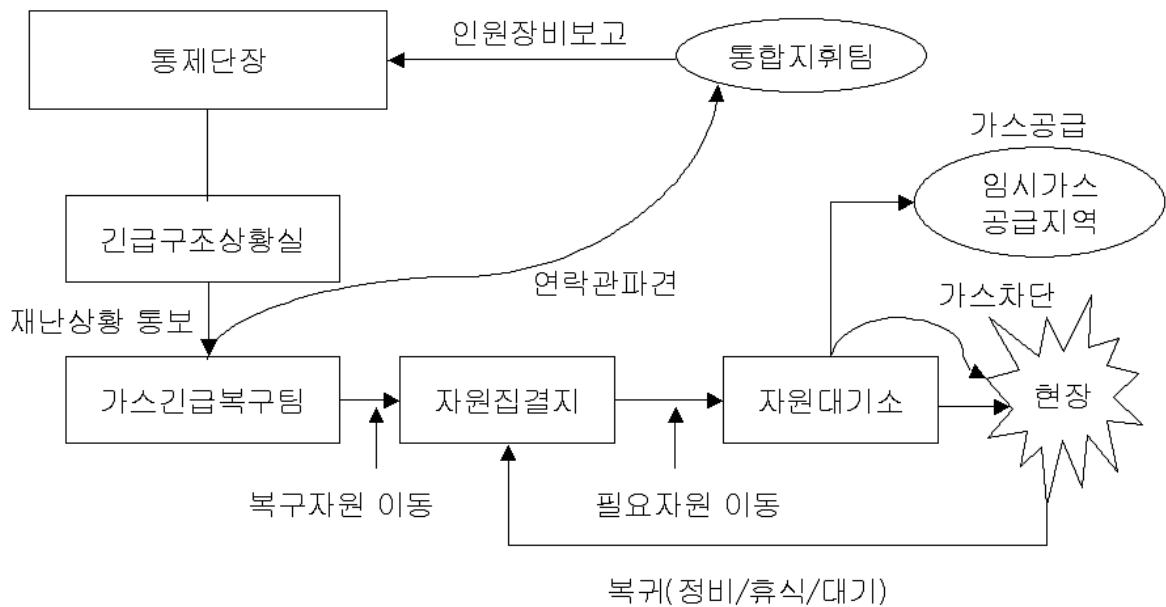
4.4 비상전력 공급 - 한국전력 진주시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전원차단 실시
 -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전력 사용을 결정하고 가용한 전력 조정통제
 - 가용한 비상전력(발전기) 보유업체에 긴급연락 및 자원동원
(보유업체의 목록을 자원매뉴얼에 기록관리)
 - 임시피난소 등에 전력공급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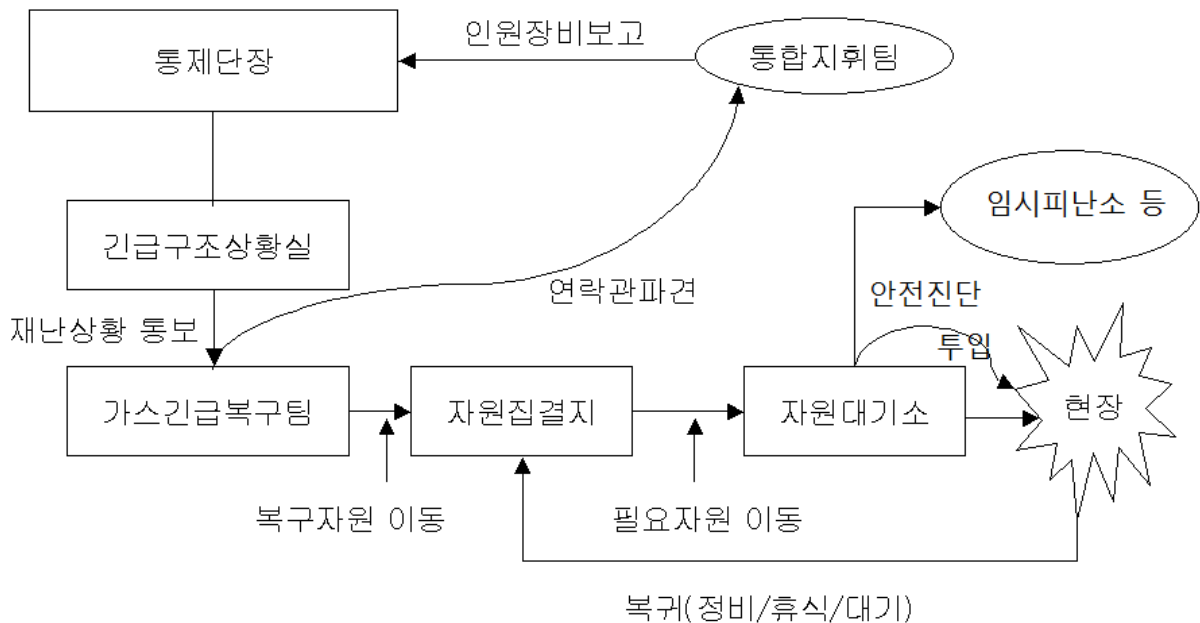
4.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지역과 건물 등에 2차 재난발생 우려시 가스공급 차단
 - 사고현장 주변 일대에 대한 가스누출 우려시 안전진단 실시
 - 필요지역에 임시 가스공급 실시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긴급시설복구팀장의 지시에 따라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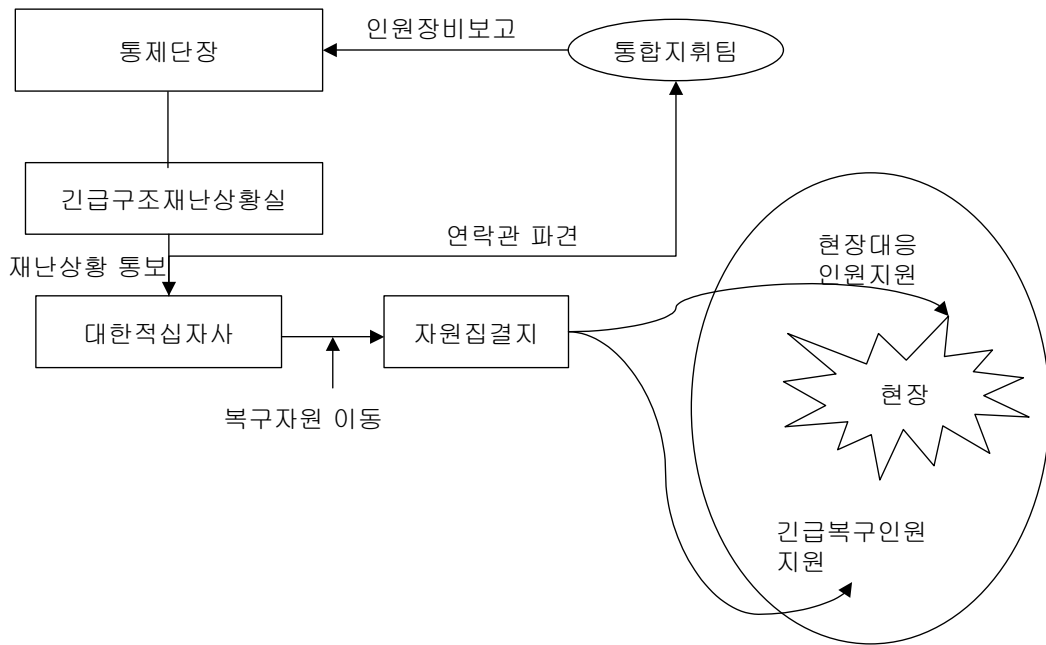
4.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 - 민간 안전진단팀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팀장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관할지역의 안전관련학과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은 현장 대응활동에 위협이 되는 재난지역과 건물 등에 대해 임시 안전점검 실시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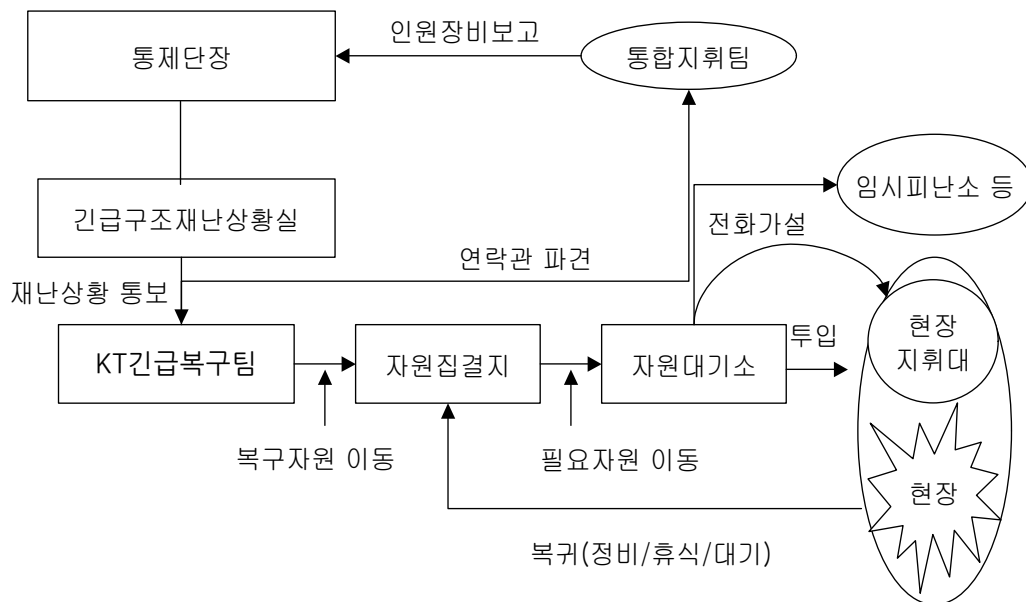
4.7 긴급재난구호봉사 -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호품 구입요청, 보급 및 수송체계 확보
 - 긴급구호장비, 소모품 등 물자조달 및 관리
 - 구호요원의 지휘통제, 현장활동대원과 구호자에게 급식제공
 - 기타 필요임무 수행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8 통신 - KT 긴급복구팀

- 복구현장 도착과 함께 긴급복구자원을 자원집결지(또는 자원대기소)에 대기시키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 연락관은 통합지휘팀에 상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 긴급시설복구반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긴급복구자원을 자원대기소로 이동시키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담당임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현장지휘소에 긴급전화 설치와 임시피난소 등에 임시 통신시설 공급
 - 통신시설 긴급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통신두절 시설과 지역에 대해 통신회선 응급복구 및 예비통신망 대체운용
- 임무수행 결과보고 후 자원집결지로 이동하여 정비와 휴식을 실시하고 다음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다.
- 긴급복구 이후의 복구관련 임무는 대책본부 통제에 따라 실시한다.
- 임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9 기타(필요에 따른 임무 목록)

- 군부대, 민간단체 등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기술제공 및 장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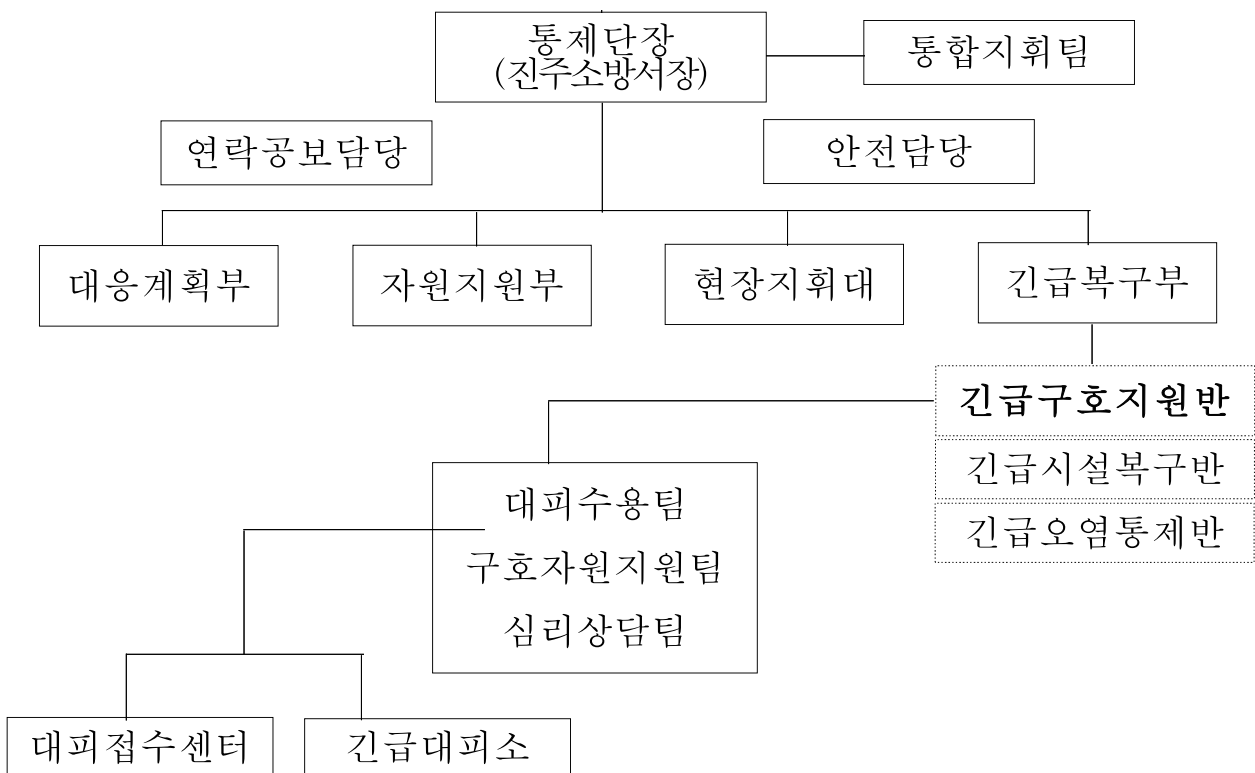
제10절 긴급구호 계획(#10)

1. 목 적

- 재난시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관련 주관 부서와 협업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긴급구호반장은 재난발생시 모든 긴급구호자원의 활동을 조정한다.
- 긴급구호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피수용팀, 구호자원지원팀, 심리상담팀 등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가동된다.
- 긴급구호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24시간 운영하며, 운영요원들은 1시간의 근무 교대 시간을 포함하여 25시간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긴급구호지원반 조직도 》

- 이 기능별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응원협정 체결기관단체

구분(통제단 직책)	책임기관(부서)	지원기관단체
긴급구호지원반장	진주시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서부봉사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진주시새마을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피수용팀		
구호자원지원팀		
심리상담팀		

- 긴급구호지원반의 운영요원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운영요원	재난초기	대응2단계, 대응3단계	
		A 조	B 조
긴급구호지원반장	진주시 복지정책과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따름	
대피수용팀			
구호자원지원팀			
심리상담팀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각 지원기관단체의 연락관과 상호 긴밀한 통신체계를 확립한다.
- 이 계획에 참여하는 각 지원기관은 필요에 따라 긴급구호지원반장과 협의하여 긴급구조요원 및 재난지역 희생자들에게 긴급구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원기관의 연락관은 긴급구호지원반장에게 각 기관별 자원동원현황과 기 수행된 긴급구호 활동현황 등과 앞으로 24시간동안 수행할 긴급구호 활동 등의 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긴급구호지원반장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필요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교육훈련 및 기타 재난대비 임무 수행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긴급구호기능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긴급구호기능은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긴급구호기능은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구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은 고지(통지)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 및 필요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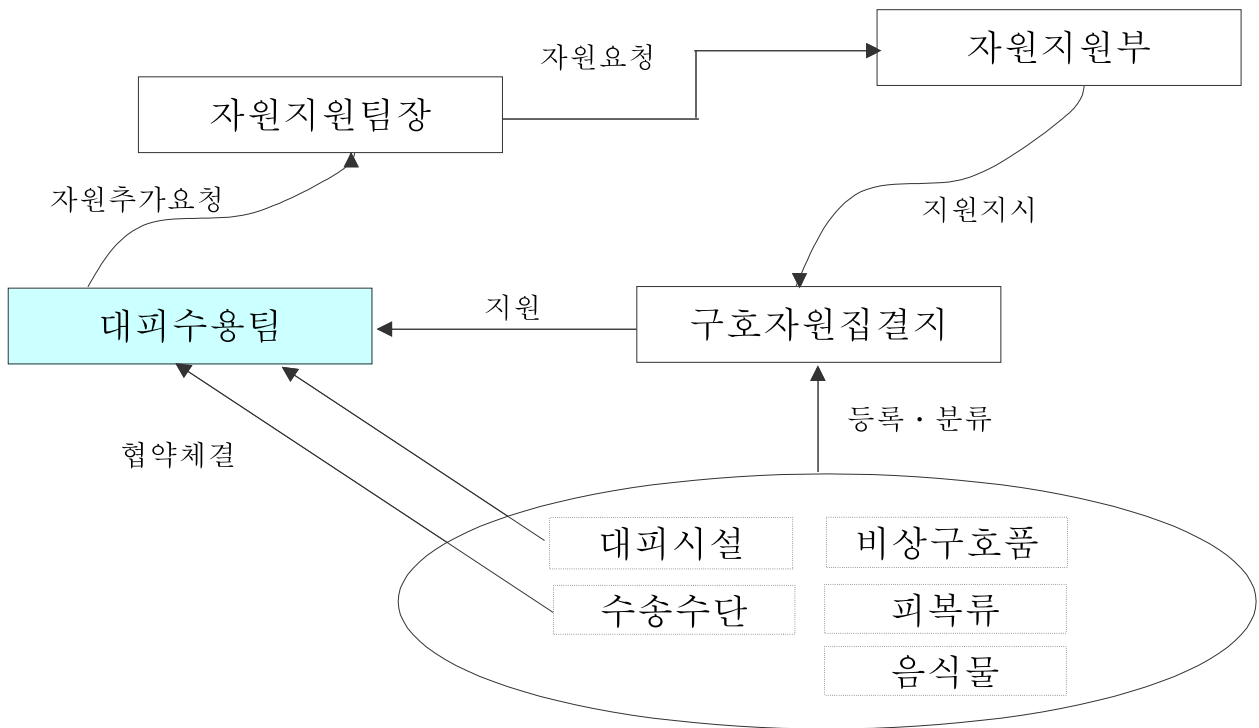
4.1 대피수용팀

4.2.1 긴급대피 접수센터 운영

-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비상경고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피정보에는 긴급대피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 대피수용팀장은 연락공보담당관(대중정보센터)으로부터 긴급대피소 운영정보를 입수하고 대피소 입구에 대피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대피자들을 수용접수 한다.
- 대피접수센터 운영담당자는 재난 피해자 수, 피해자 중 친구나 친척집에 머무를 인원 수, 현재 접수되는 수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대피인원을 대피수용팀장에게 보고한다.
- 이 접수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인 긴급대피시설의 확보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접수센터를 통해 입수한 실종자정보는 대중정보센터에 통보한다.

4.2.2 긴급대피소 운영

- 긴급대피소는 화학누출사고에 대한 일시적 대피소와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지로서의 기능을 한다.
- 대피수용팀은 단기간의 긴급대피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장기간의 대피소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대피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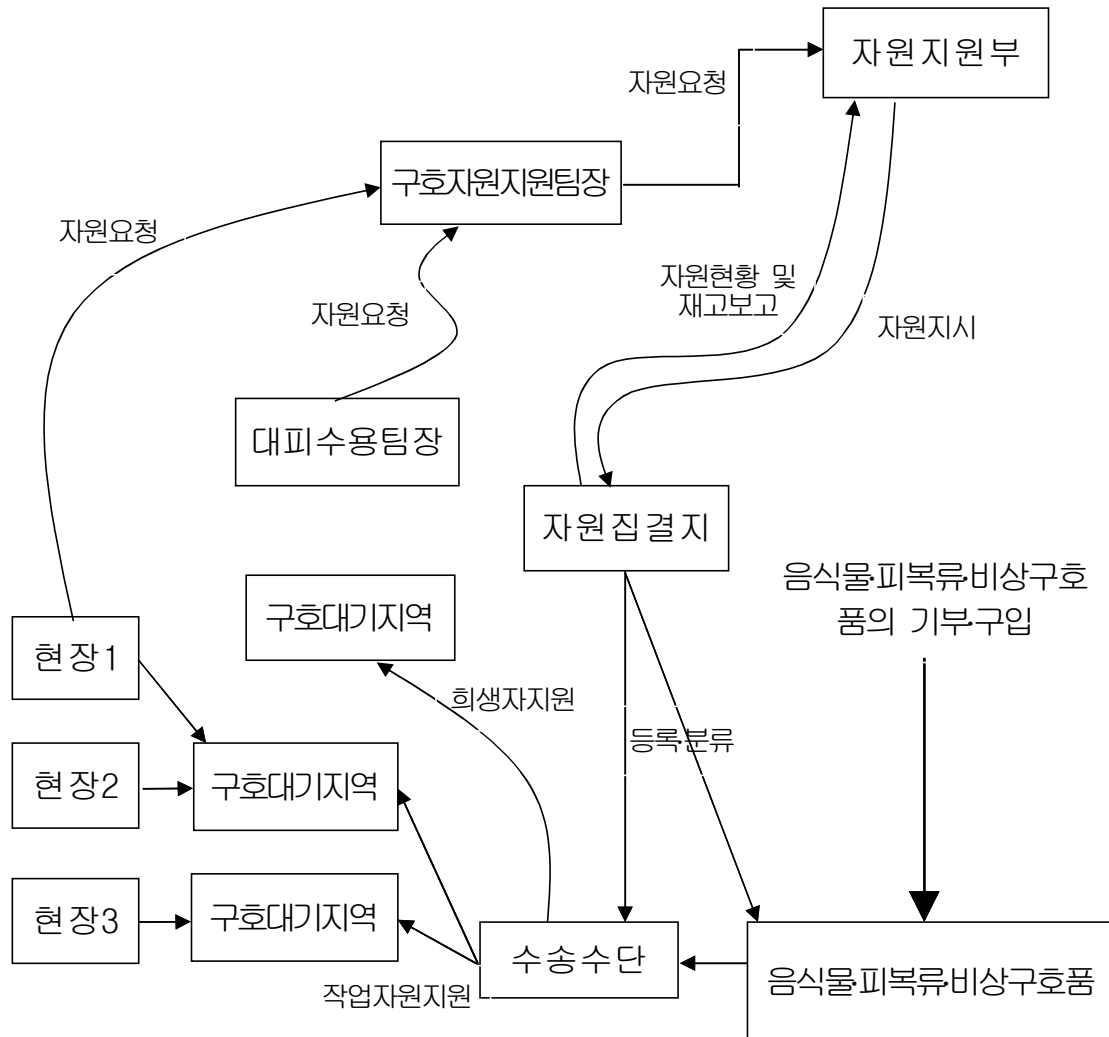
《긴급대피소의 운영》

- 긴급대피소는 일반적으로 수용능력, 의식주 확보 용이성, 구호수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지정된다.
- 긴급대피소 운영계획에는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교육청, 종교단체,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수송협회 등이 참가한다
- 대피수용팀에서 필요자원을 신청하면 구호자원지원팀은 긴급 의식주 수단을 제공한다.

○ 사전 지정된 대응구역별 긴급대피소는 다음과 같다.

대응구역 명	위 치
가좌동	경상대부설고등학교, 개양중학교, 경상대부설중학교
금곡면	금곡중학교
금산면	동중학교
대곡면	대곡고등학교, 선인국제중학교, 대곡중학교
명석면	명석중학교
사봉면	반성중학교
상봉동	경진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진주여자고등학교, 진주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진주봉원중학교, 진주중학교, 진주중 부설방송중
상평동	삼현여자고등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삼현여자중학교
수곡면	진서고등학교, 진서중학교
이반성면	경남꿈키움중학교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대아중학교, 진주여자중학교
일반성면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장재동	경남예술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지수면	지수중학교
진성면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초전동	명신고등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 진주동명중학교
충무공동	진양고등학교, 문산중학교
칠암동	진주남중학교
평거동	경해여자고등학교, 선명여자고등학교, 경해여자중학교, 진주제일중학교
하대동	제일여자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진명여자중학교, 중앙중학교
호탄동	경남정보고등학교

4.2 구호자원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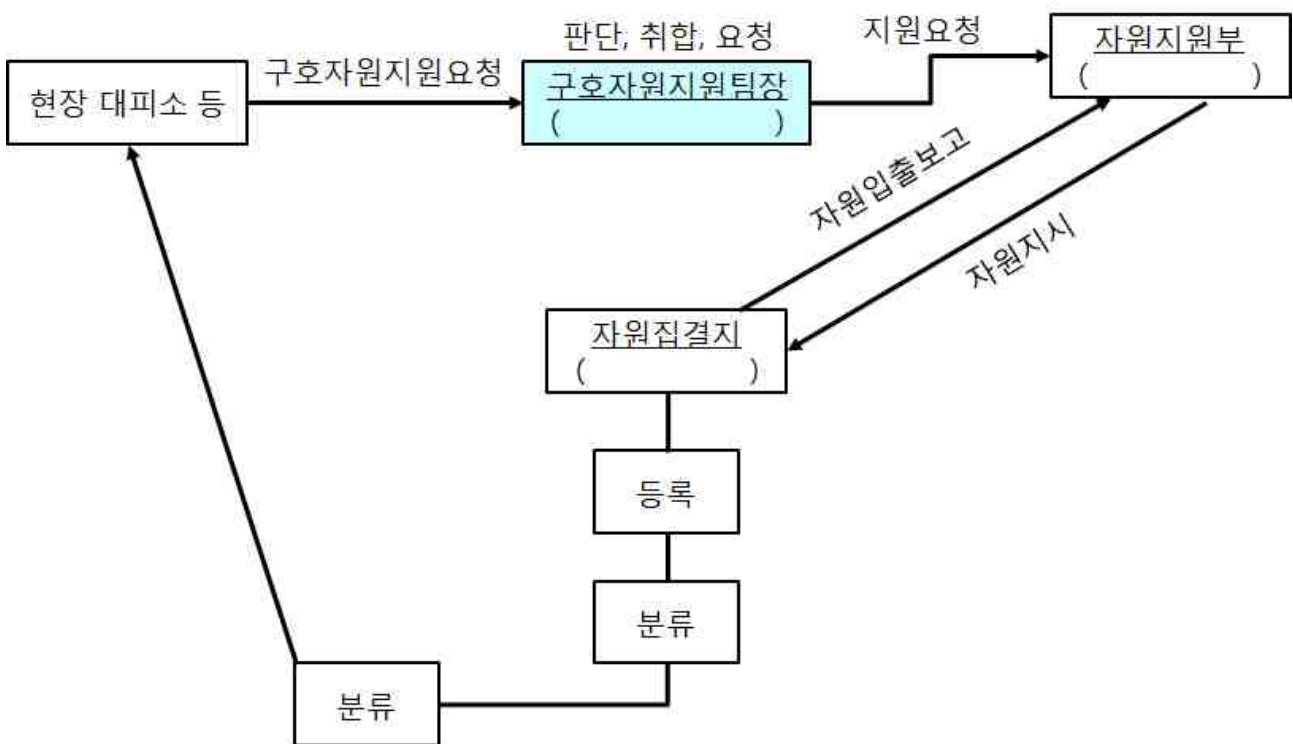
《구호자원지원팀의 운영》

4.2.1 구호대기지역 운영

- 구호자원지원팀은 재난현장의 희생자 및 긴급구조요원의 식사 등 비상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 구호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 구호대기지역은 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구호자원 대기지역으로 전진 베이스기지의 기능을 한다.
- 일반적으로 현장대응부의 자원대기소가 구호대기지역이 된다. 다른 지역에 구호대기지역을 지정 운영할 경우, 통제단 및 각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4.2.2 구호자원집결지 운영

- 자원지원팀은 의식주 물품, 기타 구호품 수집과 구호인력의 총체적 조정통제를 위하여 구호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한다.
- 구호자원집결지는 구호창고 및 긴급대피소가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운영 된다.
- 추가 지정된 구호집결지는 연락공보담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된다.
- 긴급구호자원은 1차적으로 지정·공표된 구호자원집결지로 모이고, 집결된 구호자원은 현장의 구호지원요청에 따라 인근 구호대기지역으로 수송, 배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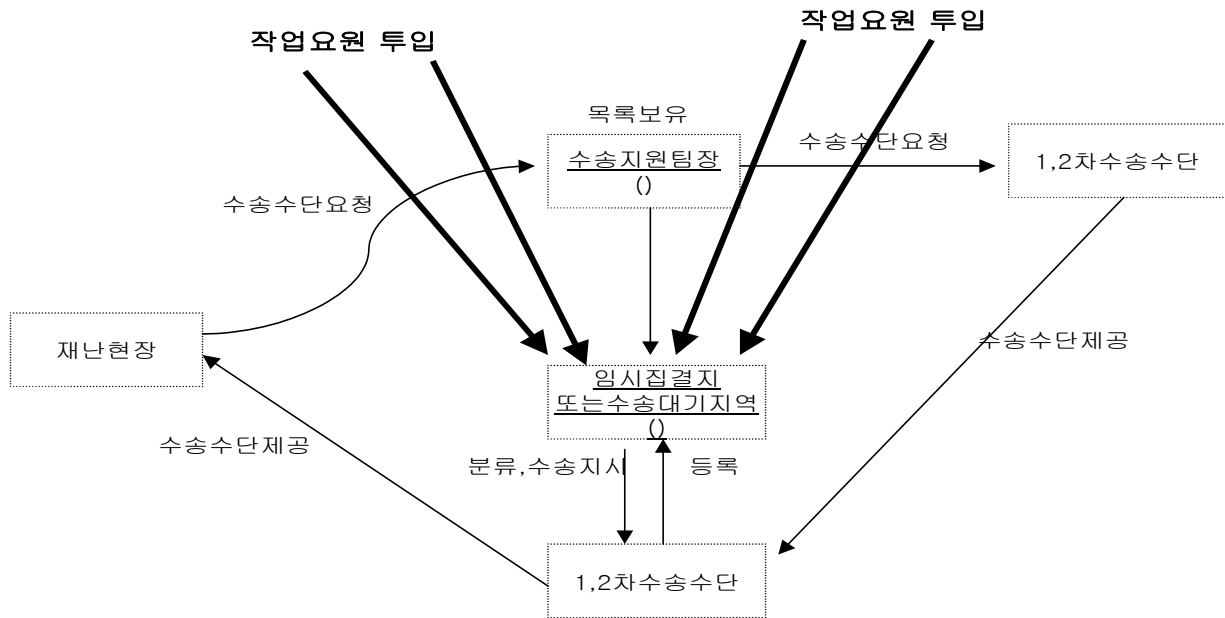


《 구호자원의 집결 》

나. 긴급구조요원 운송수단

- 재난지역내의 긴급구조활동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 다수의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이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제공된다.
- 현장지휘대 현장통제반은 해당지역의 교통정체를 통제하고, 긴급구조요원들의 신속한 현장진입을 지원한다.
- 집결지 수송대기지역 및 임시집결지로 지정된 장소(학교 등)에 자가용 차량을 주차해 두고, 학교 버스 등 수송지원팀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재난지역으로 이동한다.

- 트럭 및 버스운송협회 등 수송지원기관단체는 긴급구조요원의 현장수송에 우선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 재난으로 인한 건물붕괴, 잔해물 등 교통진입 장애요인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교통로 확보는 긴급시설복구반의 책임이다. 자원지원부 서비스지원반은 긴급시설복구반장에 진입로 임시복구를 요청한다.
- 병원, 발전소 등의 비상요원 수송과 대체 119종합상황실로의 물자수송을 위하여 특별한 긴급운송수단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 긴급구조요원의 비상 수송 》

다. 병원간 비상 환자이송

- 각 병원, 산후조리원, 정신병원, 또는 거동불편자 수용시설은 대피계획을 포함한 내부 긴급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점검하여야 한다.
- 재난으로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파괴된 경우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는 수용된 환자를 안전한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하여야 한다.
- 대량환자 이송에 따른 구급차 확보는 응급의료소 의료자원지원반(구급차대기소)과 협의 조정한다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 목 적

- 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통제단간 통신계획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통신지원팀장은 모든 통신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진다.
-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자치단체장, 각 긴급구조지원기관, 상급 긴급구조통제단간의 적절한 정보통신(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을 가동하고 각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신자원을 제공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이 계획상의 임무들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 및 운영요원을 편성하고 통제한다.
- 책임 및 지원기관단체

책임기관	지원기관
119종합방재센터 (진주소방서 상황실)	kt진주시사 아마추업무선(HAM)연맹 경상남도지부

- 운영요원

통신지원팀 직책	책임자	부재시 대행자(교대조)
통신지원팀장	소방정보통신담당	소방정보통신 조정관
메시지 조정담당	소방정보통신 조정관	교대근무자
기록담당	소방정보통신 직원	
메신저	상황실 지정 직원	
교환원		
교환원		

* 진주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하지않고,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운영

3. 대응단계별 가동범위

대응단계	재난규모	활동 개요	비 고
대비단계	일상적 대비업무 수행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통신체계를 점검한다.	
대응1단계	일상적 사고	재난통신시스템은 가동되지 않는다.	
대응2단계	중형재난	재난통신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가동된다.	
대응3단계	대형재난	재난통신시스템이 완전 가동된다.	

4. 임무수행

- 통신지원팀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비상소집 절차 이행
 - 통신요원이 숙련되기까지의 교육훈련
 -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 규정
 - 임무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

4.1 119종합상황실 통신시스템

- 긴급구조통제단과 상황실과의 통신은 가능한 유선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무선통신수단을 보유한 기관(부서)들은 무선장비가 사용 가능한 경우 무선통신을 사용한다.
- 119상황실은 긴급구조지원기관(비상대책상황실)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를 운영한다.
- 유관기관 통신조정센터는 각 유관기관 통신연락관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간 협조를 위한 중앙통신조정센터이다.

대응기능별	통신기관(단체)	주요수단	대체수단
지휘통제	진주소방서	유선통신,휴대폰	HAM
비상경고	진주소방서	유선통신,휴대폰	HAM
대중정보	진주소방서	유선통신,휴대폰	순찰차
피해상황분석	진주소방서	무선통신	HAM
구조진압	진주소방서	무선통신,휴대폰	유선통신
응급의료	진주보건소	무선통신,휴대폰	유선통신
긴급오염통제	진주소방서,진주보건소,진주시민 안전과(환경관리과)	무선통신,휴대폰	유선통신
현장통제	진주경찰서	유선통신,휴대폰	HAM
긴급복구	진주시 시민안전과	무선통신,휴대폰	HAM
긴급구호	진주시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 경남지사	유선통신,휴대폰	HAM

- 이표를 만든 목적은 어떤 통신수단이 존재하는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결합과 적절한 통신수단을 찾아내는데 있다.

4.2 재난통신 보조수단

- 통신지원팀장은 추가적인 회선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전화회사와 통신 및 접촉을 시도한다.
- 회선 수는 수요량에 따라 설치된다.
- HAM 기지국을 119상황실 또는 통신수요 장소에 이동 배치하여 보조적 통신능력을 제공한다.

4.3 대체 119종합상황실 통신

- 대체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수단은 유무선 통신장비와 주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예비 무선통신시스템을 활용한다.
- 대체 상황실의 가동은 해당 자치단체장 및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에 따라 가동한다.

4.4 현장지휘소 통신

- 통제단이 설치되면, 현장요원과 상급 통제단, 다른 관할구역 긴급구조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의 현장요원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 통신 시스템을 통해, 현장 응답 요원에게 지령이 발송된다.
- (기관 단체명)은 재난현장에 배치할 이동통신차량을 가지고 있다.
- 이 차량은 다음과 같은 무선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 장비의 유형
 - 주파수
- 통신지원팀장은 현장지휘대장(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신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차량을 배치운영 한다.
- 119종합상황실이 작동한다면, 통신지원팀장은 119종합상황실의 통신을 조정할 통신 운영자를 지정한다.
- 보조 통신수단에는 VHF 혹은 UHF 무전기를 포함한다.

4.5 대중정보센터 통신

- 대중정보센터는 뉴스보도가 나가고 만들어지는 곳에 설치한다.
-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 설치될 경우 대중정보센터는 현장에 설치한다.
- 연락공보담당은 대중정보센터와 119종합상황실간의 통신을 구축한다.
- 대중정보센터에는 전용 전화선(또는 휴대전화)을 설치한다.
- 통신지원팀장은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조정통제 한다.

4.6 대피소와의 통신

- 대피시설 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가 일차적인 통신수단이 된다.
- 전화선이 끊어지거나 사용 불가능할 경우, HAM이 대피장소에 급파되어 119종합상황실과의 통신연결을 구축한다.

4.7 통신 유지관리

- 24시간 운영시 통신 유지 관리는 (소속기관단체 직책)에 의해 제공된다.
- 재난시 전화서비스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예)
 - 긴급구조
 - 긴급복구
 - 긴급구호
 - 기타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 민간 통신서비스

4.8 119종합상황실 메시지 흐름

-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는 메시지 기록양식에 기록된다.
- 메시지 양식은 기록요원에게 배포된다.
- 통신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지원팀에 다음요원이 배치된다.
 - 메시지 조정담당 : 통신의 우선순위와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을 최우선적으로 통신하도록 기록요원을 조정한다.
 - 기록요원 : 개별적 형태의 통신과 요약된 정보의 데이터통신 모두를 기록한다.
 - 메신저 : 긴급상황 수보자의 메시지를 통신지원팀장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기타 세부적인 메시지 흐름은 119종합상황실 표준운영절차(SOP)를 참고한다.

4.9 지원 및 후생업무

- 통신지원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보조요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고 그들의 식사 및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물품들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 앞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적용한 예시이며,
- ❖ 실제 대응 매뉴얼은 재난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또한,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재난상황 및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제3장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1.1. 홍수(집중호우)

1.1.1 홍수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계절성 집중호우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특정지역의 집중호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광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지역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인접 시·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난구조중심의 자원 및 활동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곡·하천 등 관광야영지의 등산객, 낚시꾼, 행락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사전 대피유도활동 필요 - 고립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강풍지역 낙하물 제거, 기타 안전조치활동 전개 - 수난구조시 물의 흐름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필요장비 활용 등 사전 안전조치 절대 필요

1.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기상청의 집중호우예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 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수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수난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자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구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홍수 또는 침수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트, 소방정 등 수난구조용 장비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 등 - 구급 및 의료약품/소모품 등

라. 현장지휘대

- 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 파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긴급복구반에서는 홍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비상 제방 설치 및 펌프 작동준비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 피해 시 우회도로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대형 홍수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구조·구급·구호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긴급 오염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긴급오염통제 업무 실시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응급의료소장과 협의로 환자의 격리
 - 지역내 방역의 실시
 - 청결, 오염방지관련 교육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홍수 피해지역의 물, 전기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비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1.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설)량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p>대응1단계</p>	<p>○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협)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p>대응2단계</p>	<p>○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재난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재난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2 태풍

1.2.1 태풍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예측 이상의 강력한 태풍피해 발생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하천 범람, 역류 및 내수배제 불량, 만곡부 제방유실, 산지하천으로부터의 유목과 토석류, 지방하천 제방의 유실 및 붕괴, 해일 피해 등 복합적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함. - 도시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 산간계곡부의 산사태로 인한 유목 및 제방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및 도로유실 피해 등 복합적 피해 발생
광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 발생은 수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 많아 대응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접 시·도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피해 : 농경지, 도시, 라이프라인 시설 - 해안시설 : 해일로 인한 선박의 파손·유실,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 주요공공시설 : 도로의 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 제방붕괴, 항만시설 파손, 어항파손, 상하수도시설 피해, 대규모 정전발생

1.2.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기상청의 태풍주의보를 통보받은 경우 대중비상경보를 전파한다.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한다.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진주시 유관기관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한다.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한다.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풍수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을 실시한다.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태풍진로 예측 상황 전파 및 위험지역 선정 우선대처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한다.
 - 상황분석을 위해 풍수해 지역에 대한 안전지역 선정
 - 침수, 유실 등으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각 지역별 침수 및 수난사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배수지원팀 및 특수구조지원팀을 적절히 배치운영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침수, 제방붕괴, 산사태, 도로유실, 토석류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 마련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를 확립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지원, 붕괴우려 개소에 대한 보강, 긴급복구 자원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구청, 경찰, 군 기타 민간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을 모색한다.
- 긴급수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긴급수송로 및 수송수단을 확보한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 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피해지역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인원 및 자원을 확보해 둔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긴급대응자원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풍수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실종자, 침수자 탐색/구조팀
 - 특수사고대응팀(댐파괴, 위험물질 누출, 교량붕괴, 도로파손, 토석류 등 대응)
- 현장구조활동을 위하여 물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복구부와 긴밀히 협조관계 유지하며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신속한 대피지시 등을 하고 현장통제활동을 확실히 실시한다.
 - 풍수해 발생 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토석류 및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마. 긴급복구부

-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신속히 실시한다.
 - 토석류 및 유목, 쓰레기 등으로 인해 하천이 막히거나 범람할 우려가 있는 구역 우선 실시
 - 배수기능에 장애를 받는 지역 우선 실시
- 긴급오염통제반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및 해일로 인한 연안지역 유출류 제거 작업 등 오염통제활동을 실시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난지역 긴급오염통제 활동이 필요한 범위 설정
 - 선박 파손 등에 의한 유출기름 방제조치 실시
- 피해지역 및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1.2.3 대응단계별 활동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수위 상승율, 강우량, 풍속 등 기상정보자료 도상표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종합정보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 국지적 호우 또는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수난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산사태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기상청의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풍수해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풍수해가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풍수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지역 주민대피 실시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도시하천연안지역 침수피해 주민대피 및 기간시설 피해축소활동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중앙통제단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정·분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3 폭설

1.3.1 폭설 발생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설빈도는 감소했으나 강설량 및 시간당 강설량의 증가로 지역적 고립, 교통장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정도도 심각 - 비닐하우스 등 적설압력에 약한 구조물의 붕괴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 긴급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조난자에 대한 구조활동은 산악의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 폭설 지역 요구조자 이송, 통신장애 등 많은 구조활동 곤란성 내재 - 고립지역에서의 응급환자발생 또는 사고발생시 현장접근 및 환자 이송로 미비로 긴급대응 곤란 - 고립 장기화에 대비한 긴급구조활동 필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재난은 산악지역 조난, 교통두절에 의한 고립, 적설압력에 의한 건물·구조물의 붕괴로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눈사태 또는 신체 한랭손상 등에 의한 등산객의 조난사고 - 도로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의한 차량정체, 지역적 고립, 빙판길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

가. 총괄지휘부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미리 통지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 상황실로 통지
 - 미리 작성된 특수시설 호출 비상연락망에 따라 특수시설에 통지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게 통지
- 기상청 기상특보 접수 후 관할지역내 예상피해발생 구역분석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언론매체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를 설치운영
-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
- 설해 관련 정보분석 활동

-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보고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 피해정보 수집·보고, 긴급상황 관리(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폭설예보 발령시 주요 지역 사전 대피 또는 안전조치 비상경고활동
 - 조난예상 산악지역 등산객 입산통제 또는 하산귀가 조치
 - 교통장애 예상지역 차량진입 통제 및 우회도로 이용유도
- 고립지역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긴급복구부의 활동조정
 - 대한적십자사 등의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 및 배치
 - 산악지역 조난사고에 대한 군,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인력 동원(산악지역 기상조건에서 활동가능토록 관련 장비확충한 자원에 한함)
 - 고립지역 긴급구조, 구급이송 및 구호활동 접근을 위한 헬기, 긴급제설장비 등 필요장비 보유기관과의 동원사항 협의조정

나. 대응계획부

- 대응지역의 현황 및 변화된 상황 파악
 - 설해로 인하여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분석 요원들간의 통신을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
 - 대응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인접 시·도 및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대응계획 작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고립, 붕괴, 눈사태, 대규모 교통사고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폭설지역 기상정보 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수립
 - 재난대응계획서 (대응지침서)
 - 통제단 조직도 및 자원할당표
 - 시간대별 대응활동일지
 - 실종자 신고접수대장
 - 대응활동 상황판 및 대응구역도
 - 사상자 조치상황
 - 지금까지의 적설량, 앞으로의 적설예상량, 기온 및 바람의 변화사항 등 폭설 지역 기상정보 정기적 수집
 - 기상정보, 대원안전을 고려한 현장대응활동계획 수립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고립사고 구조 및 붕괴사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지원
- 폭설지역 긴급대응관련 장비 및 인원 지원활동
 - 한국도로공사, 국토유지관리사무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 용), 염화칼슘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산악구조용 장비, 붕괴사고 구조용 장비, 헬기 등 고립지역 구조를 위한 장비 확보
 - 인접한 시·도, 경찰, 군 등이 보유한 헬기
 - 산악지역 긴급활동에 필요한 통신망 확충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 전화선 및 중계기의 피해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경우 복구시간의 확인 및 대체 통신방법 모색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긴급수송활동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풍수해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라. 현장지휘대

- 설해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 조직화
 - 실종자, 고립자 탐색/구조팀
 - 특수구조팀 중심 현장대응활동 전개
 - 소방, 경찰 인명구조견 조기 투입 공동대응
- 응급의료소의 설치는 설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
 - 현장과 병원간의 이송 도로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회도로를 확보
 - 이송용 구급차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 차량의 운영방법을 모색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설해 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피난로 확보,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 산악지역 조난자 구조활동
 - 군, 경찰등 대규모의 탐색구조팀 편성 운영
 - 조난지점, 조난상황 등 관련정보 최대한 활용
 - 현장활동대원의 동상방지조치 등 안전확보 최우선 고려
- 고립지역 구조구급 등 긴급대응활동
 - 교통장애지역, 고립지역에서 화재, 긴급환자 기타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장접근

- 헬기 등 대체교통수단 최대한 활용(강풍 등 기상악화사항 고려)
-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긴급제설작업 실시(도로관리부서 긴급요청)

마. 긴급복구부

-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활동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폭설에 의해 파괴된 비닐하우스 등 각종시설물 긴급복구활동 적극 지원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 진입로 복구
- 고립지역 긴급구조활동의 실시
 - 단수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에서 물, 전기, 연료 등의 임시 공급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응급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 산간지역 주민 또는 고속도로상 고립주민에 대한 식료품, 의료품, 연료 등 생활필수품 긴급지원활동
 - 긴급제설지원활동과 연계하여 헬기 최대한 활용
- 긴급복구 대상시설

긴급복구 대상시설		피해내용
라이프 라인 공급장애	라이프라인 시설	○ 라이프라인 시설이 각 개소에서 피해를 입어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 불가능
	수도	○ 동파로 인한 단수
	하수도	○ 배수기능 및 처리기능에 지장이 발생함
	전기·전화	○ 2차재난에 의한 교환기고장, 장기간 정전 등
도로 및 산사태위험지역		○ 도로결빙·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구역 발생 ○ 낙석, 눈사태 발생 ○ 조난사고, 고립지역 발생
농경시설 등		○ 비닐하우스 등 붕괴 ○ 수산양식장 등 기온하강으로 인한 피해 ○ 경작지 피해

1.3.3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대설주의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신(新)적설 : 어떤 정해진 시간에 내려 쌓인 눈의 높이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기상감시 네트워크로부터 계속적 정보자료 수집 분석 지시 • 기상정보자료를 종합 분석 후에 잠재적 재난위험 영향지역을 도상에 표시 • 예측되는 재난위험 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원, 교도소, 학교, 병원, 공장)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의 주지 확인 • 언론매체를 통한 대중정보 배포 및 긴급피난, 안전조치 등 피해예방 및 완화활동에 대비토록 권고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폭설정보의 수집 및 분석(적설량, 기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대설경보 발령(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이고,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탐색, 고립자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주의보 단계의 모든 대응활동의 긴급조치 및 재확인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기상감시 네트워크, 유관기관과의 긴급통신유지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폭설지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p>○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폭설피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설해 피해 발생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고립위험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피난했는지 여부 및 다른 예비대책들이 취해졌는지 확인조치 • 지속적인 상황감시 및 예측활동과 추가 재난위험지역 표시 • 고립위험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주민 구조 • 자원집결지, 자원대기소 운영
대응3단계	<p>○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폭설피해 발생 또는 대응2단계 수준의 폭설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도차원의 자원으로 대응이 불가능 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지역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준비(대책본부) • 재난위험지역 내 주민 구조 • 긴급대피소 수용인원 확인 및 긴급구호 확인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1.4. 지진

1.4.1 지진발생 및 특성

특성	형태
복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은 다양한 피해형태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붕괴, 매몰, 추락 - 화재, 폭발 - 해일, 침수 - 화학물질 누출, 원자력 사고 - 기타 전기가스 사고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을 위한 장기간의 대응활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사전계획 필요 - 추가자원의 지원과 효율적 분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 -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복구와 희생자의 구호대책 고려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대응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대응활동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 매몰에 따른 탐색/구조활동 - 화재진압 및 폭발에 따른 화재진압활동 - 해일, 침수피해에 따른 수난구조 - 화학물질누출, 방사능 누출에 화학물질처리활동 ○ 다양한 자원을 효율의 조직화로 적합한 전략과 전술 적용 필요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현장의 광역화로 대응자원 부족과 대응활동 제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파괴로 소방용수의 부족, 출동로의 제한, 통신장애 발생 - 의료시설, 대피시설의 파괴로 긴급구조활동 장애 ○ 재난상황 유동성에 따른 예상하지 않은 대응활동 장애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의 제한성을 예상하여 충분한 보완대책 수립 - 수립된 대응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실행하는 등의 신축적인 태도 필요

1.4.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지진피해예측 및 분석결과에 의한 대응활동 우선순위의 결정에 주안점을 둔다.
- 지진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대응자원(인력, 장비, 물자)의 확보와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 지진재난 발생 후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지진 상황의 대중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지진, 진원에 관한 관측 정보
 - 여진(After-shock) 등 지진 발생에 관한 이후의 전망
 -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 상황
 - 대피의 필요성 및 대피장소
 - 교통통제 및 각종 규제사항
 - 지진발생시 전기, 가스, 석유 및 관련제품 안전사용의 홍보
 - 화재,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대응
 - 여진대책에 관한 정보
- 대응활동요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중점고려사항과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다.

중점고려사항	주요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인구밀도 ○ 지정학적 중요성 ○ 대응지역 및 시설물의 지정학적 중요성 ○ 기반시설의 보호 ○ 사회/경제적 손실 ○ 복구단계에서의 이용가치 ○ 자원지원에 따른 접근의 용이성 ○ 위험의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활동 ○ 대응활동효과 (대응활동노력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 ○ 2차재난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응요원의 안전성 ○ 시설물의 용도와 특징 ○ 주거밀집도와 점유형태 ○ 희생자의 수와 생존가능성 ○ 화재하중과 연소의 가능성 ○ 전기, 가스, 위험물질 누출 등의 위험요인 ○ 대응활동의 난이도 ○ 대응자원의 능력과 보유장비

나. 대응계획부

- 지진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응구역별 현황 및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상황 (인명 및 건축물, 시설물, 라이프 라인 등)
 - 특별한 위험의 예측 (폭발·연소, 침수, 붕괴 등)
 - 추가자원의 기능, 종류, 규모
 - 현재 대응활동 상황

- 현장통제 및 대피활동 상황
-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 기타 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 (교통통제 등)
- 재난대응계획과 관련하여는 기본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다. 자원지원부

- 지진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으로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체계 확립에 노력한다.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인력집결지의 개설과 동시에 각 지원기관 및 적십자사의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추가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분류 배치
- 지역 외부에서 지원을 온 외부자원이 대응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지진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수송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 교통로의 긴급복구 및 우회로의 확보와 대체 교통수단의 운영 등과 더불어 통행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혼란을 방지
 - 지진 발생시 고려 가능한 긴급수송대책
 - 긴급 육상 교통로 지정 (우회도로, 긴급복구도로, 임시가설 도로 등)
 - 긴급수송 선박의 확보
 - 헬리콥터, 수송기의 임시착륙장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를 대비하여 예비 인력 및 자원을 확보한다.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건축사협회 및 기술사협회와 연계)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외국 구조대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지진대응 필수장비 및 물자의 확보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 비	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파괴 절단 장비 -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 탐색/구조용 장비(소방드론 포함) - 전기, 가스 등 안전진단장비 - 구급 및 응급의료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 붕괴방지용 파이프, 지지목 - 특수소화약제 (포, 분말소화약제) - 구급 및 의료약품/소모품 등

라. 현장지휘대

- 지진의 특성과 규모, 대응자원의 여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검토한 후, 대응유형별 하위단위를 조직화한다.
 - 붕괴건물 등의 매몰자 탐색/구조팀
 - 화재진압팀
 - 특수사고대응팀(열차전복, 댐파괴, 화학물질 누출 등 대응)
- 위험물시설의 긴급대응
 - 지진발생시 유류, 화약, 가스, 독극물, 방사선 등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의 누수·유출, 폭발 등은 재난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대응활동을 어렵게 함
 - 관할구역의 위험물 저장·관리시설 등에 대한 긴급대응활동 실시
- 신속한 대피 및 철저한 현장통제활동
 - 지진발생시기, 규모 등에 따라 대피의 권고·지시, 대피방법, 대피소의 개설·운용방법 등의 유연한 대응
- 효율적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활동
 - 대규모 지진발생시 교통혼란에 대처하고,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교통통제 실시

마. 긴급복구부

- 지진피해에 의한 위험요소 및 중장기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구활동을 한다.
 - 구조구급활동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 구조활동현장접근을 위한 진입로, 우회로
 - 구조활동현장의 잔해물 제거
 - 복구하지 않으면 2차위험이 있는 시설물
 - 파손된 소방용수, 대응현장의 전기, 통신

- 가스설비차단 및 안전진단
- 의료기관, 관공서, 언론기관의 복구
- 파괴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안전 진단 팀을 운영한다.
 - 주민과 대응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응작전의 수립과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전기, 가스, 화학, 건축, 원자력 등 유형별 전문가들을 통합지휘팀과 긴급복구부 구조안전 진단팀에 배치하여 재난지역과 건물 등에 대하여 임시 안전 점검 실시
- 대규모 피해로 인하여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감염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통제를 실시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수, 식품의 오염여부 조사 및 통제
 - 대응지역의 주변의 역학조사 및 오염물질처리
 - 감염병의 조사 및 통제(예방접종 등)
 - 대응구역내 방역 실시
 - 청결, 오염방지관련 교육
-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한다.
 - 재난심리상담, 재난피해자의 대피 및 임시수용, 구호자원의 지원, 병원간 부상환자 수송 등의 활동을 실행

1.4.3 대응단계별 분류기준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주요 비상대응활동
대비단계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4 이상의 지진 경보·예보가 있는 경우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지진정보의 수집 및 분석(진원, 진앙, 규모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p>대응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 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진 발생지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각 지원기관 연락관 :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p>대응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 운영하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운영
<p>대응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지진피해 발생 •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시도자원으로 대응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 :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소방서장)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지진피해 없는 인접 시·도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 :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지진구역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대응단계	주요 비상대응활동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 발생 또는 1개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하여 해당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전면 운영, 중앙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행정단위 긴급사태, 전 국가적 대응자원 필요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2. 사회재난 기본계획

2.1 붕괴사고

2.1.1 붕괴사고 유형 및 특성

유형	내 용
캔틸레버형 (Cantil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충격에 의하여 한 쪽 벽판의 갑작스러운 탈락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할 수 있는 빈 공간은 각 층마다 골조나 튼튼한 가구류 부근에 형성
경사형 (Lean-to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벽이 무너지거나 한쪽 바닥판의 분리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판, 바닥판 또는 지붕의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내리고 반대쪽은 여전히 지탱되고 있는 상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가능한 곳은 붕괴 결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
팬케이크형 (Pancake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이나 부실공사 등이 원인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개의 바닥 슬래브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 겹겹이 쌓인 상태 • 내력벽이나 기둥이 모두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 가능한 빈 공간은 기둥부분, 대형시설물의 부근 등에 작게 형성
V형 붕괴 (V-shaped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판이 중앙부의 지지력 결함 또는 과부하로 인해 중앙부가 붕괴되어 발생 ○ 요구조자 생존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조자가 생존가능한 빈 공간은 V형태 잔해의 양쪽 아래 벽 부분

특성	내 용
활동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 장애로 인해 접근곤란 및 구조활동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벽체 등 붕괴잔해물을 제거하여만 접근가능 - 붕괴잔해물 제거시 생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점진적 작업실시 ○ 붕괴형태를 고려한 탐색구조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잔해물에 압좌된 요구조자는 2차적 생명위협요소 고려
구조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현장 안전확보 및 탐색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대 및 자원지원부 조직 강화
주민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징후 발견 및 1차붕괴 접수 직후 붕괴위험 여부와 예상 위험지역 판단 ○ 각종 경보수단을 이용한 붕괴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다른 특별한 통지 수단이 필요한 거주자들에 대한 통지 지시
대규모 자원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해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중장비 동원 ○ 대규모 인력동원

2.1.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체계·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협 요소, 불안정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팀, 유언비어통제팀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화번호의 언론 홍보 확인
- 언론기관간 취재 경쟁으로 재난대응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언론매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지시

나. 대응계획부

- 현장 정보수집 및 대응활동계획 작성
 - 사고발생시간 : 사고발생시간을 통해서 붕괴건물 내부에 있는 요구조자의 수와 위치에 대한 정보 수집가능
 - 소재지 : 사고현장으로의 접근성 분석
 - 높이와 면적(6면) : 건축물 6면 전체와 면적을 고려
 - 건축물의 형태 : 대응전략과 전술의 수립에 매우 중요
 - 붕괴면적과 구조물의 위험성 : 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안전한 방법 결정
 - 화재위험성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파악
 - 노출 : 구조대원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노출 정도는 추가적인 손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고려
 - 가스, 전기, 수도 : 가스, 전기, 수도의 통제는 구조대원과 요구조자에게 안전을 위해 시행
 - 기상조건 : 바람이 불거나 우천시에는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활동에 부수적인 문제 발생
 - 요구조자(확인·미확인/목적/정보의 수집) : 요구조자의 위치파악은 초기 구조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우선순위중의 하나, 요구조자의 위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확인
 - 교통상황 : 붕괴현장에 출동대의 신속한 도착과 즉각적인 대응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우회로의 확보와 교통통제 및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 이동대책 수립
 - 주변철도 : 기차나 지하철에 의한 진동은 약화된 구조물에 충격을 줄 가능성 있음
 - 2차 붕괴 : 지진에 의한 여진 또는 이미 손상된 구조물에 의한 2차붕괴의 위험성 고려

다. 자원지원부

- 붕괴현장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관리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가스사업, 건축·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응급의료(구급) : 응급의료활동은 현장의 대응인력 뿐만이 아니라 요구조자에게도 제공필요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가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현장지휘대에 편성된 특수임무 담당자 분야별 상호 조정
 - 안전진단 전문가는 구조와 구출활동. 구조활동 책임자는 초기에 건축물 안전 진단을 요청하고, 활동 중에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위험물 담당자는 구조 활동의 초기에 현장상황분석 지원, 건축물 내의 위험 물질 확인과 주기적인 점검 수행
 - 중장비/특수 장비 전문가는 크레인, 대규모 리프팅 조작, 중장비 이동, 등을 활용 대책 제시
 - 기술정보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 구조팀장의 요청으로 구조 활동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 구조팀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들의 지원활동을 진행 중인 구조활동에 통합

마. 긴급복구부

- 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독극물 사용시설 및 방사능 시설에 대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실시
- 긴급복구활동 제반여건 사전 확인
 - 현장으로 긴급복구자원이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긴급수송로 지정
 - 긴급복구에 동원된 물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지역에 적정하게 배치하는지 여부 확인
 - 긴급복구활동에 필요한 중장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

2.1.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붕괴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자연재난으로 인해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응1단계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대응조직구조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응2단계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자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운영
대응3단계	○ 정의 : 다중이용시설의 붕괴 또는 붕괴규모가 커서 전 국가적 자원대응이 필요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2 가스폭발

2.2.1 가스폭발 발생 특성

특성	내용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설과 가스 자체의 연소로 크게 구별된다. ○ 가스 누설은 체류 지역 및 유동 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 위험, 산소부족, 중독위험성이 크다. ○ 특히 LP가스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체류하는 폭발 혼합기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 갑작스런 2차 폭발로 인하여 대원 작업 위험 발생 우려 ○ 폭발 충격파에 의하여 진입하는 대원 작업위험 발생우려 ○ 분출화재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조 및 대원 작업 시 위험 발생 우려 ○ 가스누출 장소에 관찰부대를 배치할 때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무인방수 고려 ○ 경계구역내외의 통제를 확실하게 함
폭발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충격으로 인하여 폭원(爆源)에 근접한 고체물 (용기 혹은 건축(建屋) 등)을 파괴하는 효과 ○ 폭발가스의 급팽창에 의거하여 상기에 의한 파편을 날려버리는 추진효과 ○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충격파를 만들고, 이것이 원거리까지 영향을 주는 충격효과 ○ 폭탄형식의 폭발 : 폭탄과 같은 매우 강고한 용기 중에 폭발이 일어나면, 용기를 파괴하고, 그것을 파편으로써 주위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폭풍의 효과는 원거리까지 미치지 않는다. ○ 핵폭발 형식의 폭발 : 2차적으로 파편효과가 수반한다. ○ 가스 및 분진 폭발 : 가스나 분진은 고압상태가 아닌 한 파편효과 (최초의 파편효과)가 적고 충격파에 의한 거리효과 의 파괴비중이 크다.
활동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및 옥내 폭발로 구분하여 활동 방침을 결정 ○ 폭발로 인한 파괴효과에 의하여 화재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폭발인 경우, 대원 안전사고에 요주의 ○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재난의 확산방지에 주력 ○ 구조활동에 있어 시간적 제약 및 날씨의 제약이 큼

2.2.2 통제단조직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에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 총괄적 지휘를 위한 대응체계와 의사전달체계를 확립
 - 대응체계 : 복잡한 폭발·붕괴사고현장은 대응활동을 용이하게 조정, 계획, 지원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가 필요
 - 의사전달체계 : 각 대응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의 의사전달 방법·체계·수단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활동의 기본
- 추가폭발 및 붕괴에 의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임무 수행
 - 안전담당은 현장활동계획 중에서 현장안전계획을 준비 또한, 안전 위협 요소, 불안정한 상황, 대원의 안전을 평가 감시
- 가스의 누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하면 위험지역 주민에게는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나. 대응계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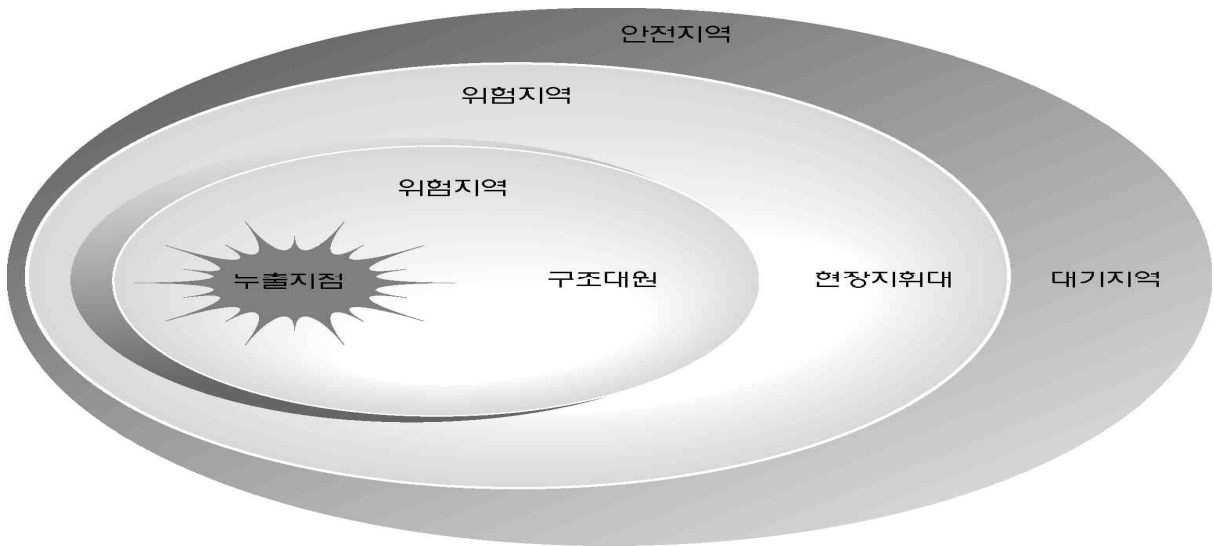
- 사고유발경위, 가스의 종류 및 양, 가스의 비산 정도, 사고현장 주변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추가폭발 및 사고현장(폭발에 의한 붕괴)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제 확보 및 다수의 대응자원 확보

다. 자원지원부

- 현장대응인력 : 붕괴사고 대응활동은 소방, 경찰, 군, 자치단체, 전기·가스사업, 건축·토목기술, 응급의료,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대응인력 요구
- 특수 장비 : 붕괴구조활동에는 음파탐색장비, 광섬유 카메라, 휴대용 절단기, 파괴기, 구멍뚫기용 장비 등 특수한 탐색구조장비 필요
- 건설 중장비 : 대형 건설기계설비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잔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
- 구조물 지지대 : 구조물의 추가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요구조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지대 필요

라. 현장지휘대

- 2차 폭발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검출활동 수행
- 사고지역 및 위험지역 통제조치 및 자원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교통규제조치
- 다수의 화상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소 신속 설치 및 임시시체안치소 설치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바. 긴급복구부

- 폭발·붕괴잔재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잔해물 처리
-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우선 복구
- 잔해물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비산되므로 광범위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
- 추가폭발 우려가 없고 누출된 가스의 폭발 및 발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도 가스배관 등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후 차단한 전기·가스 공급활동 재개

2.2.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가스폭발 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발견 또는 강풍, 침수 등의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해 폭발의 우려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사고대응계획의 수립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대응1단계	○ 정의 : 인명피해가 없거나 일상적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대응조직구조의 운영 • 선착대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장에 의한 현장지휘체제의 가동 • 긴급구조지휘대장은 현장상황의 파악, 평가, 보고 • 추가지원의 필요성 판단
대응2단계	○ 정의 : 인명피해 10명 이상 또는 중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경고계획 가동 • 관할 내 또는 인접대응구역의 추가자원동원 •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 파견 • 사고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필요에 따라 중앙통제단은 부분운영
대응3단계	○ 정의 :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자원대응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소방본부 통제단 완전 가동,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 운영 • 소방서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 • 통합대응조직 구조와 통합지휘체계의 운영 • 시·도 통제단장은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 인접 시·도에 응원요청 • 시·도 차원의 지원기관(부서)은 자체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시·도 통제단의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중앙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2.3.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2.3.1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특성

항목	내용
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백화점, 역, 터미널, 종합병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게임방 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여 무질서한 관계로 화재시 피난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내부상황 판단이 곤란하고, 출입구로부터 화연이나 농염이 분출하는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발생 ○ 공기의 공급이 제한되고,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발생 ○ 피난·대피의 곤란으로 대량 인명피해 및 오염의 우려 ○ 피난대피 및 유도, 인명검색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폐쇄공간에서의 소방활동으로 소방력 분산 및 무선통신 장애 발생 ○ 공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주수효과 미흡
소방활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내 각층의 용도, 업종, 업태, 상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난상황에 대해서는 각 층별 사업소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지정·활용 ○ 건물의 상세도면 및 각층별 용도, 입주현황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고 내부 방화구획,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유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점, 연기로 인한 오염 범위 및 요구조자의 상황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지휘·통제에 활용 ○ 외부로부터의 주수는 건물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내부 진입 후 주수 ○ 현장진입 대원 안전관리 철저 ○ 음식점의 주방, 실내 화재는 주방 덕트의 배기구를 신속하게 확인 하여, 배기구로부터 화염 또는 열기가 분출하고 있는 경우 덕트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의한 연소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확인하여 2차 재난 발생 방지

항목	내용
고층건물 진압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건물 재난진압활동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참모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기지 : 재난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현장도착 자원의 건물진입을 통제하고 건물외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부에 전달 - 로비통제 : 건물내의 로비에 위치하여 계단, 엘리베이터등 상부진입수단을 조정 - 계단운송 지원 : 엘리베이터사용불가능시 계단을 통한 진압장비의 운송을 지원 - 진입대기소 : 재난층 2층아래층에 위치하며 재난층으로의 진입대원을 통제하고 교대인원이 휴식, 장비교체, 점검의 공간제공
지하층 화재 진압반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에서의 배연, 조명, 통신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 ○ 조직적인 현장지휘대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장의 철저한 진입대원 통제기능 발휘 - 현장대원의 독자적 행동 엄금으로 대원의 안전확보 - 명확한 진입통제 및 무선통제수단 확보 ○ 인명검색, 구조활동, 피난유도 최우선 실시 ○ 상황실과 연계하여 건물구조에 대한 철저한 파악 선행

2.3.2 통제단의 각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모든 경로를 통하여 화재에 대한 신고 접수
- 작성된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위험지역내의 자치단체의 상황실 및 특수시설에 통지
 -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통지
- 대규모의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대피소 위치, 대피시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등 메시지 방송실시
- 재난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실종자정보센터, 유언비어통제센터, 방문자관리센터, 자원봉사자등록소 설치운영
- 화재유형별 특성에 맞는 구조진압조직을 편성하고 필요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출동한 유관기관에 지휘체계 확립방안 모색

나. 대응계획부

- 화재유형별 상황진행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활동계획 수립
 - 고층건물의 경우 층의 위치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용가능여부 파악하고, 화재층 이상의 인명구조계획, 주민대피계획, 엘리베이터 및 계단 통제계획 등을 수립
 - 지하층은 내부구조에 관한 정보파악 및 연기배연 및 통신가능상태 확인 후 배연활동과 연계하는 구조진압계획을 수립
 - 항공기가 공중에서 파악한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대응계획 수립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화재유형별 필요자원이 신속히 확보 배치되도록 관련 조치
 - 고층건물화재는 사다리차 및 헬기지원 확보
 - 지하층화재는 배연장비, 조명장비, 통신지원장비 확보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건축, 건설, 토목 등 전문가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자원봉사자
 - 의료관계 종사자 등

라. 현장지휘대

- 화재유형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구조진압반 대응조직 편성운영
- 현장에 대한 원활한 주민 통제를 위한 현장통제반 활동 강화
 - 가족생사확인, 물품반출 등을 위한 비이성적 현장접근주민의 통제
- 화재진행상황의 분석 및 공중진화활동,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대와의 연계활동 강화
- 타 시·도 지원 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효과적 배치운영을 위한 자원대기소의 지정 운영

마. 긴급복구부

- 현장보존 및 잔재물 처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시행
- 연소확대 우려지역 및 건물에 대하여 임시 안전대책 강구
 -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위험물 보관시설은 폭발·유출에 대비 시설의 긴급점검 실시
- 화재로 인하여 누출된 독극물 등에 대해서 긴급오염통제 실시
- 통신시설 등 대응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긴급복구 실시

2.3.3 대응단계별 활동내용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 정의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 상황분석 및 보고반 가동 → 화재정보의 수집 및 분석(가연물의 종류, 적재량, 연소특성 등)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 정의 :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인 대응조치 가동 (비상경고, 화재진압, 탐색,구조, 응급의료)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 현장지휘대는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 가동 •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각 대응구역별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즉시 소방서 통제단 (통합 현장지휘소) 통합지휘팀에 연락관을 파견 • 파견된 연락관은 소속 현장지휘소 설치현황과 출동자원 현황에 대해 통제단장에 통보하고 통합지휘팀회의에 참가 •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의 운영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 통제단이 완전 가동되고, 중앙통제단이 부분 운영 • 대응구역별 통제단장은 자동적으로 재난대응구역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된다. • 시·도 통제단 각 부장 및 대응구역별 소방서 통제단장들은 각 부 및 대응구역별 활동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 화재현장 현장평가 및 대응활동상황 보고 (소방서 통제단 →소방본부 통제단 →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통제단) • 재난대응의 전략과 전술의 수립과 결정 • 시·도 통제단장 : 피해상황분석결과에 따라 대응자원의 할당 및 재배치
대응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통제단이 전면 운영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집과 각 중앙부처의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시·도 통제단장은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 대응자원의 총동원 • 현장대응은 자치단체별 통합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고 중앙 통제단은 조정, 통제의 기능을 수행 • 각급 통제단장은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2.4.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2.4.1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특성

특성	형태
재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우연한 사고 또는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이송 중 교통사고, 보관탱크 관리 미숙으로 인한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 - 테러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가능성 있으며 이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활동 전개 ○ 방사능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의 분실, 누출, 비정상취급(밀수, 도난), 운반사고, 방사능누출을 포함하는 화재 등의 사건 - 원자력추진 인공위성의 대기 진입시의 추락사건, 외국 또는 미등록 방사선원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등의 방사선 사고 -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
현장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은 화재발생으로 연결되거나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법상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발생된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체류된 지역에 점화원이 가해질 경우 폭발성 화재 발생 ○ 유독물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 또는 대기환경의 피해유발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되어 기화된 유독물은 주변지역으로 급속 확산 가능성 있음 -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활동 필요 ○ 주변 하천에 유출 시 상수도 및 각종 용수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보호를 위한 긴급오염통제팀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현장활동 곤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물질 취급시설의 화재 또는 인사상사고의 처리시에는 반드시 방사능사고 대응활동 검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대한 방사선피폭 여부 확인 및 통제선 설치 - 방사선보호복 및 관련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활동 - 피폭구역 내에서 허용된 대응활동 임무만 수행 ○ 방사선재난은 인명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된 사상자는 방사선환자 처리능력이 있는 병원에 수용 - 현장활동 중 사용된 보호장구 등 피폭된 물건을 수거 후 폐기하거나 안전조치 필요 - 주변 수질,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통제활동 필요

특성	형태
<p>대규모 자원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특수장비의 동원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문팀의 지원필요 - 보호장비와 제독장비를 갖춘 전문처리대의 투입 필요 ○ 유출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에 대한 제독과 응급처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물질에 노출된 사람 중 부상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독 실시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p>전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재난의 대응활동은 관련 기술전문 대응부서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방사선사고의 대응활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무책임. -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활동은 테러사건대책본부(본부장 경찰청장)가 주무책임
<p>생화학 사고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징후 판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새, 자극취, 유색연기 등 - 희생자 증상 - 대량 사상자 발생 - 살포장치 - 경보제공 또는 방송 전파 ○ 2차 징후 판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새 등의 사망 - 희생자 진술 - 현장 이외의 것 - 이상한 액체

2.4.2 부서별 대응활동

가. 총괄지휘부

- 각종신고 및 통보에 의해 누출정보를 접수한 경우 비상연락망에 의해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지
 - 국정원 또는 환경부에 반드시 통보하여 단순 유출 또는 테러에 의한 살포행위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조치
 - 출동하는 유관기관의 대원들은 관련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통보
-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차량진입에 따른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긴급방제 작업에 불필요한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 유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위협에 노출될 때, 언론매체를 통해 대중에 통지
 - 비상방송시스템을 작동하여 비상경고메시지를 방송하도록 요청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위험지역 설정
 - 풍향 및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방향을 파악하여 위험확산방향 분석
 -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시 위험지역 주민에게 비상경고메시지 전파
 - 예측된 위험영향지역 내 특별시설(요양소, 교도소, 학교, 병원과 공장 등)의 존재여부 확인 및 위험상황 통지
-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대중정보센터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나. 대응계획부

- 사고유발경위, 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오염확산정도, 사고현장 시료채취분석 등 사고 발생원인 조사 실시
- 화재, 폭발, 질식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한 장소로 이동 검토
- 위험물질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의 자문으로 재난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응계획 수립
 - 위험물질과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신체적 위험성 고려
- 위험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다. 자원지원부

- 추가 대응인력의 동원체계 확립
 - 추가대응자원은 인접 소방관서의 인력, 군 및 경찰인력, 각 지원기관의 인력, 유관기관 및 업체의 인력, 자원봉사자 등 활용
 - 재난대비단계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원동원체계 확립
- 외부자원의 대응활동 편의 제공
 -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위하여 숙박시설이나 야영지를 준비하고 음식과 식수 등을 공급
 - 지역 사정에 익숙지 못한 외부자원에 대해서는 출영(出迎)과 안내를 담당할 요원을 지정
- 재난규모 확대시의 예비 인원자원의 확보
 - 군,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 타 시·도의 지원인력
 - 의료관계 종사자 등

- 화학물질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자원동원 체제 유지
 - 유출물질 성상별 대응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 동원
 - 유독물 유출시 중화, 회수 할 수 있는 자재 확보

라. 현장지휘대

- 현장지휘본부와 유기적 협조하에 현장진입 및 구조구급활동 진행
 - 현장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활동은 방사선사고대책본부가 자문하는 처리절차에 의해 이행
 - 현장활동대원의 방사선 노출방지 등 안전조치 이행
 - 2차 확산사고가 발생 않도록 지속적 감시활동 수행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후 임무수행
 - 오염물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 의해 제독 및 병원이송 조치

마. 긴급복구부

- (시·도 / 시·군·구별 해당 업무 추진부서)와 연대활동
- 유출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제방을 설치작업 실시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모래, 흙 등으로 적절한 높이의 턱을 만들어, 누출된 액체가 배수관, 하수도 또는 강에 스며들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위험물질 소량 유출시는 모래나 흙으로 유출된 제품 흡수조치

2.4.3 대응단계별 주요활동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유독성, 위험성이 없을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누출 일상적 출동대로 현장조치 종료 [운송사고]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거나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발생하지 않음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이 확인됨 ○ 수송차량 이동 조치 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불필요 ○ 수송로 변경이 불필요함 [저장시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거나 누출가능성 없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요원 관할구역내 비상대기 • 지역 위험지도를 통한 방사능 오염지역 판단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긴급통신연락관계 유지 • 대응자원(인력·장비·물자)의 점검 •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통신망 확인 • 비상경고계획 확인 및 가동 준비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국지적 누출피해 발생, 기초행정단위 긴급사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운송사고]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 ○ 수송차량 탱크 및 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정성 의심 ○ 수송차량 이동 조치전에 내용물(유해화학물질)의 별도 이동조치가 필요 ○ 수송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 ○ 사고발생지역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저장시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이 사고에 관계되며 누출가능성이 있음 ○ 소방관서 및 지방환경청 외 지원기관의 협조 필요 ○ 사고발생대상물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행정단위,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 • 각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재난대응구역별 재난초기 현장지휘체계 확립 후 소방서 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으로 확대 운영 • 현장 지휘소 설치 • 지역재난사태 선포준비 및 필요시 사전 선포 • 재난상황의 긴박한 위협(위험)의 정도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인 긴급구조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잠재적 재난위험지역 내 피해 예방적 긴급피난조치 • 위험지역 통제범위 지정확인 및 위험지역 우회 교통로 지정발표 • 대중매체에 정확한 재난상황정보 제공, 필요시 대중정보센터 및 유언비어 통제시스템 가동 • 피해상황분석 보고서 작성 및 통신보고(대책본부장, 총리, BH) • 소방본부 통제단 (시·도 통제단)이 필요에 따라 부분 가동 • 부분 가동되는 시·도 통제단의 각 부장들은 각 부별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 통제단장에 즉시 보고 • 보건소 및 응급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사실 통보 • 소방본부 및 소방청에 대한 초기보고서 준비 및 제출 • 최소 30분 간격으로 시설 소유자/운전자로부터 최신 상황정보 수집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 공공정보센터의 가동 및 시설정보소유자(소유자, 관리직원, 안전담당직원)의 비상대기 고려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광역행정관할 내 폭넓게 분포된 누출피해 발생 또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광역적 비산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역행정단위 긴급사태 [운송사고]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진행 중 ○ 사고발생 지역 및 주변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저장시설사고]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내부 직원의 방호조치(피난/내부대피) 필요 ○ 사고가 시설내부에 국한되지만 외부배출 및 확산 가능성 ○ 지원기관의 협조가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대응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사태 선포 고려 • 비상경고체계(비상방송시스템) 가동 준비 • 당해지역 내 거주주민에 대한 경고방법 검토 및 임무분담 • 위험지역 내 주민에 대한 최신상황 및 방호조치정보 지속적 제공 •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긴급대피에 필요한 대응인력 비상근무 전환 • 부분적 통제단 및 상황실 가동 • 소방서, 보건소 및 응급의료센터, 시설소유자/운전자,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필요한 방호행동조치 검토 및 시행 • 현장대응요원 및 위험지역 출입허가자의 안전장구 수준 지정 및 출입허가증 발급 • 긴급피난 가능성 있는 경우 다음사항 결정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 주민 수, 긴급대피소 현황(개방된 대피소명, 수) - 긴급대피로,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 긴급대피의 가능성 및 기타 방호조치 등 피해예방활동에 대비토록 위험지역 내 주민에 긴급홍보 • 비상대응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료 기록 유지
대응3단계	<p>○ 정의 : 광역적 누출피해, 유해화학 물질의 비산 또는 폭발·화재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동원되고 중앙통제단이 전면 가동되어야 할 때.</p> <p>[운송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이 사고에 관계되며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위험반경 내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p>[저장시설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대량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이 진행 중이며, 당해 사고로 주변의 다수 주민 또는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시설주변의 위험반경 내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해 긴급대피 필요

대응단계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통제단장 : 재난대응 활동상황과 추가자원의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 통제단장에게 즉시 보고, 대응자원의 총동원 • 중앙 통제단 : 조정, 통제 기능 수행, 국제적 지원에 대비한 외국자원의 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시행 • 각급 통제단장 : 신속·정확한 피해분석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대책본부) • 모든 상황분석자료와 메시지가 도상에 표시되고 기록 확인 • 현장지휘대, 지원기관, 시설소유자/운전자, 기타 주요 관련 공무원과의 통신확립 및 유지 • 모든 대응요원에 비상소집 및 임무 부여 • 지역지도, 항공정찰정보, 위성정보의 취합 및 분석 • 위험반경 내 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 지역 주민의 방호조치를 지도하기 위한 경고시스템(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및 기타 보조 경고수단 강구 •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통합대중정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소, 통제단, 통합대중정보센터에 대한 안전경계활동 • 방호조치가 필요한 정확한 위험범위 확인 • 다음의 방호조치 이행(내·외부 긴급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긴급대피소 개방, 교통통제 확인 - 독자적으로 피난이 불가능한 주민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 특별시설(요양소, 학교, 병원 등) 수용인원의 피난 지원 - 위험지역 통제범위 및 출입통제소 설치 - 대피장소 및 지역에 안전 제공 • 통제단과 대중정보센터는 다음의 최신정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대피경로, 긴급대피소 명 및 위치, 긴급대피 주민의 수 - 위험지역 출입 통제소 및 도로와 이용가능한 도로(통로) 변경사항 - 유언비어 내용 및 확산범위, 위험반경 및 지리적 범위 • 위험지역 통과 철도, 항공, 선박 통행금지 및 시설 폐쇄 • 현장응급의료소 및 응급의료센터 의료인력에 대한 재난상황 정보 제공 • 위험 경계지역 내 출입 통제소 설치

부 록

1. 각종현황
2. 서식
3. 참고자료

목 차

1. 각종현황	1
1. 각 지원기관 지휘소	1
2.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통제단	1
3.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1
4.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2
5.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3
6.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4
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5
8.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6
9. 주요기관 목록	7
10.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8
11. 2019년 진주시 중점관리대상 현황	9
12.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라디오 방송국)	10
13.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10
14. 현장응급의료소 및 의료기관 현황	11
15. 지하대피소 현황	14
2. 서식	18
1. 긴급구조대응지침서	18
2. 상황예측 매뉴얼	19
3. 상황요약절차	20
4. 상황요약양식	21
5. 재난상황보고서	22
6. 재난상황보고서(통보서)	23
7.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24
8.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25

9. 응급부담 명령서	26
10. 응급부담 확인서	27
11. 지휘권이양협약서	28
12. 긴급통제단 운영일지	29
13. 병원별 수용능력표	35
14. 사상자 이송현황	36
15.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37
16.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	37
17. 사상자 조치현황	38
18.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39
19. 자원동원매뉴얼	43
20.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44
21. 피해상황분석편람	45
22. 최초보고서	46
23. 지원요청서	47
24. 대중정보보고서	48
25. 피해상황최초보고서	49
26. 피해상황분석반 표준작전절차	50

3. 참고자료 51

1. 표준현장지휘체계	53
2.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구조대응매뉴얼	54
3. 지진 규모별 상황관리	55
3-1. 지진규모 및 진도에 따른 현상	55
4.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56
5. 비상경고메시지(예시)	57
6.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59
7.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73

【붙임 1】

《 각 지원기관 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

지원기관	위 치	전화번호
진 주 시	진주시 동진로 155	주.야) 749-2229 Fax) 749-2834
진 주 경 찰 서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750-0329, Fax) 750-0388
진 주 시 보 건 소	진주시 월아산로 2026	741-4000, Fax) 749-5719
공 군 교 육 사 령 부 (기 지 작 전 과)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사서함 306-21	750-4021~5
공 군 제 3 훈 련 비 행 단 (제 3212 부 대 기 지 작 전 과)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사서함 336-13	850-5022, Fax) 850-5454
육 군 제 8 9 6 2 부 대 (작 전 과)	진주시 호탄동 산 282	755-8962, Fax) 761-0297
대 한 적 십 자 사 서 부 회 망 나 눔 봉 사 센 터	진주시 솔밭로 80번길 - 7	762-2252, Fax) 762-2253
K T 진 주 지 사	진주시 진주대로 1110	761-0199, Fax) 754-1000
한 국 전 력 진 주 지 사	진주시 동진로 279	750-3267, Fax) 750-3335

【붙임 2】

《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통제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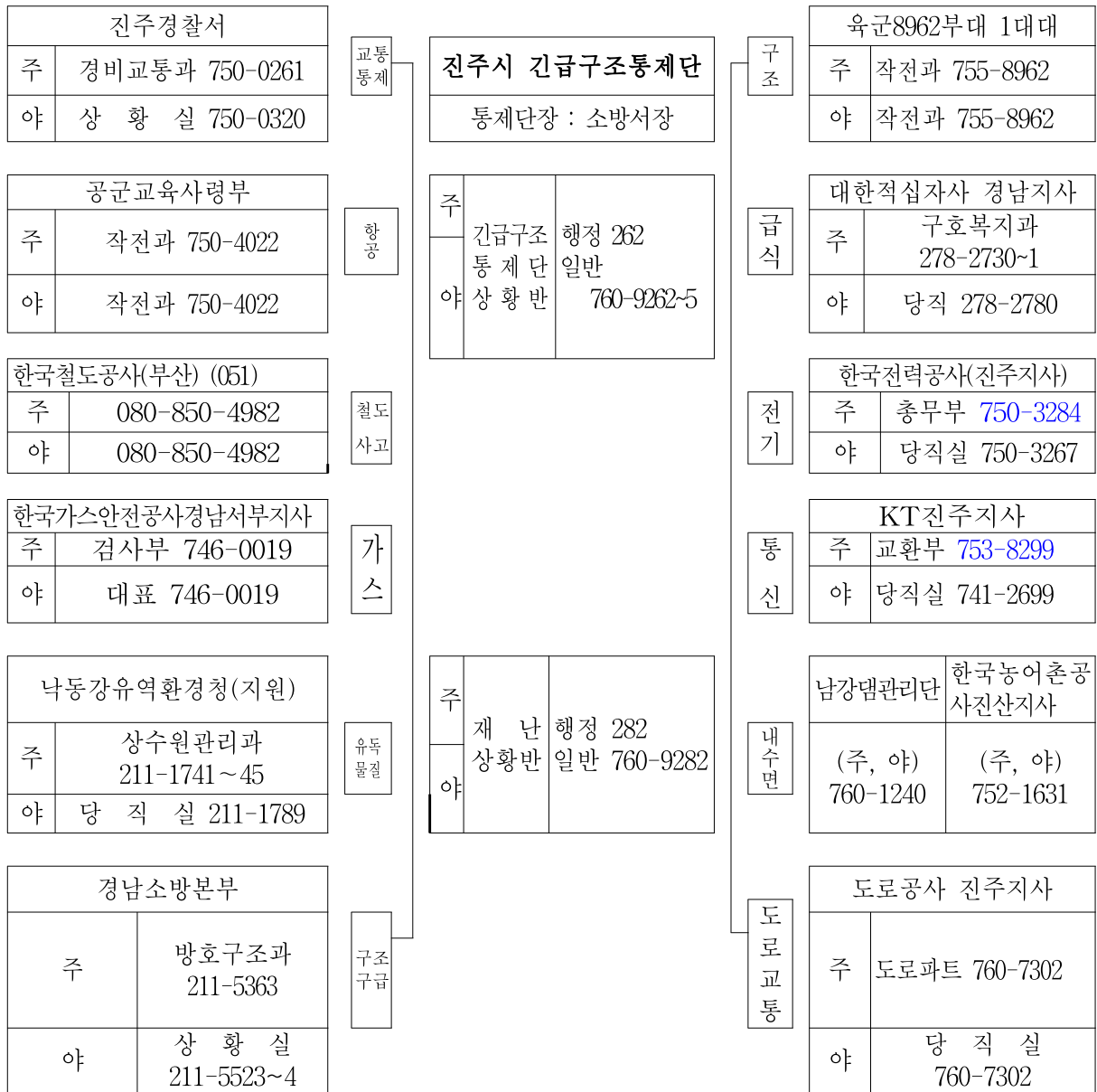
인근 자치단체 소방관서	위 치	전화번호
사천소방서	사천시 남일로 29	830-9282, Fax) 830-9289
함안소방서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580-9282, Fax) 580-9289
산청소방서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	970-9282, Fax) 970-9289

【붙임 3】

《 경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

부서명	주소 / 위치	연락 이름과 전화번호
119종합상황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5323~5524
방호구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5462~5465

【붙임 4】 주요 공무원 비상연락망(통제단 지휘그룹)



구 호 대	
진주시 보건소	의약계 749-4932
경상대학 병원	응급의료 750-8000 센 타 750-8282

인력,장비동원(진주시)	
시민안전과	행정 5730 일반 749-5730
하천과	행정 2283 일반 749-2283

인력,장비동원(진주시)	
환경보호과	행정 5378 일반 749-5378
건설과	행정 5453 일반 749-5453

【붙임 5】 자연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기관임무 재난대응기능	진주소방서	진주경찰서	진주시청	진주보건소	군부대	한국전력	K T	수자원공사	적십자사
접근통제	책	지		지	지				
고립거주자구조(구호)	책		책						지
심리 상담		지		책					지
피해 평가	지		책			지	지	지	
쓰레기 제거			책		지				
비상방송	책	지	책		지				
긴급대피	책	지	지						
식품검사				책					
홍수감시			책					지	
기관간 협조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대중 급식/보건									책
실종자 구호	책	지	책	지					
관련 공무원 비상연락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현장지휘소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비상전력/조명	지					책			
식수제공	지		책					지	
교통차단(격리)	지	책			지				
안전점검	지		책			지	지		
모래자루/제방쌓기 /배수	지		책		지				
탐색과 구조 는 제거	책	지			지				
오도가도 못하는 차량 운전자 구원	책	지	지		지				
긴급 대피소	지		책						
태풍 기상감시	지		책						
교통통제	지	책							
구호시설 협조			책			지	지		지
차량제거	지	책							
희생자 신원확인		책							
물 사용 제한								책	

【붙임 6】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2 (야간) 010-9898-2320	F. 02-397-7292
	방재환경과	02-397-7352 (야간) 010-9898-2320	F. 02-397-736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	상황실(24시간)	080-004-4949	F. 042-868-0406
	방사선보안대책실장	042-868-0146	휴대폰 자동연결
	방사선원보안대책실	042-868-0027	F. 042-868-0356
	당직실(야간)	042-868-0402	F. 042-861-1700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상황실장(24시간)	080-002-0049	휴대폰 자동연결
	테러및방호상황실(주간)	042-860-9782	
	당직실(야간)	042-860-9800	F. 042-860-9849
한국원자력 의학원	사고접수(24시간)	02-970-2300	
	비상진료센터(주간)	02-3399-5931	
	당직실(야간)	02-970-2121	F. 02-970-2404
방사선 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	031-289-3560	F. 031-289-3569
	24시간 응급	031-719-8780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111(신고센터) 02-572-3023	F. 02-572-5671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	02-2008-6119 02-2008-6340	F. 02-3412-8064
경찰청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112 02-3150-2461	02-3150-1234 (치안상황실)

【붙임 7】 유해화학물질 재난시 유관기관 임무와 기능도표

기관단체명 재난대응 기능	소방서	경찰서	시·군	보건소	군부대	한국전력	K T	수자원공사	적십자사	환경관리청
접근통제	책	지			지					
사고대응 지원		지	지		지					
보조동력	지					책				
사건분류	지	책	지							
현장지휘소	책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제한	책	지	지		지					
봉쇄	지	책			지					
청소			책							
피해평가	지	지	책			지		지		지
오염제거			책		지			지		지
환경/보건 평가			지	지						책
피난/내부 보호	책	지	지		지					
음식/농작물/동물보호			책	지						
급식			지						책	
유해화학물질 확인	책	지	지		지					지
지휘	책	지	지		지					
기상정보	책	지	지		지					
실종자 구호				지				지		책
대기/물 오염 감시			지	책						
영안실 서비스			지					책		
공공 용수 보호			책							
기록유지			책							
복구/재 점유		책								
루머통제	책									
안전			책							
대피처/피난센터			책							
특별한 대중 교통수단		책	지		지					
교통통제		책	지		지					
희생자 수송	지			책	지					

책=책임기관 지=지원기관

【붙임 8】 대량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대 상	위 치	물질명	양	
무림파워텍(주) (760-1100)	진주시 남강로 1317번길 24	HCl	10m ³	
무림페이퍼(주) (751-1432)	진주시 남강로 1003	NaOH	100m ³	
메탈화학(주) (759-4047)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 303번길 37-8	H ₂ SO ₄ HNO ₃ H ₂ O ₂ NaOH	14m ³ 5m ³ 15m ³ 29m ³	
한경티이씨(주) (010-8585-4230)	진주시 사봉면 산업단지 44번길60	H ₂ SO ₄ 암모니아수 HNO ₃	200m ³	
(주)삼화크린클럽 (763-4972)	금곡면 문산로 429	디메틸포름 아미드 (99.9%) 디메틸포름 아미드 (70%)	498m ³	
동일팩키지(주) (755-1211)	남강로 1303	NaOH	500m ³	
남강제지(주) (752-1717)	남강로 1367번길 36	메틸알콜 (CH ₃ OH) NaOH	1960m ³	
대창가스 (752-9509)	진주시 돛골로 61	칼슘카바이드 (제3류 자기발화성물질)	4.450kg	

※ 특별한 대응방법 및 절차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및 지역도 포함할 것

【붙임 9】 주요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주 소	전화 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직책	비고
			전 화	FAX		
1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155	749-2229	749-2834	시민안전과	
2	공군교육사령부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사서함 306-21	750-4021~5		기지작전과 재난통제담당	
3	공군제3훈련비행단 (제3212부대)	사천시, 읍 수석리 336-13	850-5022	850-5454	기지작전과 재난통제담당	
4	육군8962부대 (진주대대)	진주시 호탄동 산 282	755-8962	755-8962	작전과장	
5	진주경찰서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주)750-0261 야)750-0329	750-0388	경비교통과 재난담당	
6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263-6178	263-6356		
7	진주시보건소	진주시 월아산로 2026	741-4000	749-5719	보건행정과	
8	한국전력 진주지사	진주시 동진로 279	750-3267	750-3335	배전운영과	
9	KT진주지사	진주시 대신로 265	761-0060	758-3342	고객전송과	
10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진주시 가호로 144	760-7332	760-7309	관리과	
11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진주시 남강로 50	746-8670 748-2637	740-5412	보수과	
12	한국전기안전 공사경남서부지사	진주시 동진로 255	760-3100	752-9057	검사기술부	
13	한국가스안전 공사경남서부지사	진주시 동부로310	746-0019	746-0161	검사부	
14	진주시 교육지원청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740-211~3	752-5786	행정지원과	

【붙임 10】 긴급대응협력관 비상연락망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긴급대응협력관				당직실 (상황실)
			직급	성명	휴대전화	일반전화	
1	진주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 담당	오송환	010-2041-7214	749-6622	
2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정재훈	010-6287-9295	750-0258	
3	육군8962부대 1대대	군수과	군수 과장	박건규	010-4052-9314	755-8962	
5	경상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	재난 담당자	하석현	010-4490-3908	750-8607	
6	고려병원	관리부	안전 관리자	구진본	010-4620-2050	751-2748	
7	제일병원	시설과	팀장	김현철	010-5564-5139	750-7108	
8	반도병원	관리과	대리	김현수	010-4874-5720	749-0674	
9	한일병원	총무부	시설 계장	박성준	010-6523-0930	750-1391	
10	세란병원	총무부	차장	김희근	010-2589-6507	760-7590	
11	복음병원	관리부	과장	공영인	010-8850-9464	749-7130	
12	재난구조협회		회장	이부근	010-3288-6599	763-9113	
13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사	배전운영부	차장	박종민	010-8473-9222	750-3281	
14	KT 진주지사	영업기획팀	차장	문태중	010-9863-1472	762-1501	
15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검사1부	차장	박석준	010-9317-1970	790-9327	
16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점검부	과장	이종무	010-8506-3790	900-1422	야)1588-7500
17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운영부	대리	조현우	010-6757-2035	760-1228	
18	한국농어촌공사 진산지사	수자원 관리부	대리	김철현	010-4015-5558	760-2589	

【붙임 11】 2020년 진주시 중점관리대상

연번	대상명	소재지	특수장소	층수	연면적	비고
1	삼전프라자 (탑마트)	진주시 도동로 251(하대동)	복합	14/2	31,639	
2	홈플러스	진주시 대신로 304(상대동)	판매	8/3	52,054	
3	무림페이퍼	진주시 남강로 1003(상평동)	공장	6/1	93,993	
4	골든트리에센셀 남강호텔	진주시 동성동 남강로673번길 16	숙박	2/16	8657.33	
5	이마트	진주시 진양호로477(인사동)	판매	2/4	43,462	
6	중앙시장	진주시 진양호로 547번길 8-1(대안동)	판매	2	13,944	
7	호텔동방	진주시 논개길 103	숙박	10/3	12,174.75	
8	롯데시네마	진주시 진양호로521(중안동)	기타(영화)	9/3	8,176	
9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시 축석로207번길5 (평안동)	판매	8/5	53,444	
10	탑마트평거점	진주시 평거동 새평거로136	판매	1/4	25637.49	
11	경상대학병원	진주시강남로 79(칠암동)	의료	7/1	91,626.91	
12	제일병원	진주시진주대로 885(강남동)	의료	6/1	13,393.67	
13	동성가든타워	진주시 진주대로 901(강남동)	복합	18/3	45,611.36	
14	MBC문화방송	진주시 가호로 13(가좌동)	기타	8/1	21,389	
15	이현종합상가	진주시 신안로 165(이현동)	판매	5/3	22,087.15	
16	진주노인요양병원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번길 49-6	의료	5/1	12,448.62	
17	고려병원	진주시 동진로 2(칠암동)	의료	7/1	8,695.09	
18	롯데몰 진주점	진주시 동진로 440(충무공동)	복합	7/4	99,184.24	
19	제이스퀘어호텔	진주시 솔밭로 107(상평동)	숙박	10/3	18,205.00	
20	우방아이유셀 스카이팰리스	진주시 평거동 진양호로 221	복합	3/35	65651	
21	진주중앙지하상가 (에나몰)	진주시 진주대로 1035(대안동)	기타(지하가)	0/1	7,665.57	
22	엠마우스요양병원	진주시 남강로 25	노유자	4/1	9,560.32	
23	무림과워텍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기타	4/1	9,108.58	

【붙임 12】 언론매체 연락처 명단(TV·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채널	주파수	주소	전화번호	보도국 전화번호
진주문화방송	11	89.3	진주시 가호로 13	771-2112	FX 771-2139
KBS진주방송국	15	91.1	진주시 신안로 85	740-7100	FX 740-7199

【붙임 13】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FAX번호	비고
1	진주문화방송	진주시 가호로 13	771-2112	771-2139	방송국
2	KBS진주방송국	진주시 신안로 85	740-7100	740-7199	방송국
3	서경방송	진주시 진양호로 532	748-3001	748-0525	케이블
4	경남일보	진주시 남강로 1065	751-1000	757-1722	신문사
5	경남매일	진주시 동진로 210	741-8700	762-6774	신문사
6	경남도민일보	진주시 축석로 89	758-3200	757-2525	신문사

【붙임 14】 현장응급의료소 및 의료기관 현황

현장응급의료소 구성



※ **인력기준** : 응급의학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인, 간호사 4인, 보조요원 1인 이상으로 구성(최소기준)

- 관련근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관련

※ **인력편성** :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인 인력을 고려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구성·운영하되, 의료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장에게 현장 응급의료소 인력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1. 진주보건소 인력현황

구	분	직	책	성	명	비	고
총	괄	보	건	소	장	황	해
재	난	의	료	담	당	오	송
의		공	중	보	건의	송	준
간	호	간	호	6	급	정	희
간	호	간	호	8	급	최	분
행	정	보	건	6	급	박	태
구	급	운	전	원		박	용
	차					대	

2.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31개소)

구 분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응급 병상수	영안실	연락처
계	553	1,835	21	4,871	118	28	
경상대학교병원	314	681	1	919	46	12	750-8119
제일병원	49	169	1	273	20	6	750-7138
고려병원	29	165	1	239	10	2	751-2735
한일병원	19	112	1	213	10	2	750-1374
복음병원	14	73	1	129	10	0	743-2580
반도병원	21	79	1	168	10	0	747-6000
바른병원	13	61	1	124	4	0	790-7590
세란병원	12	41	2	148	6	0	760-7590
미래여성병원	8	27	1	37	-	0	760-8000
서울아동병원	3	14	1	46	-	0	752-0011
센텀병원	2	5	1	98	-	0	795-2200
미래아동병원	3	13	1	41	-	0	756-6557
튼튼소아청소년과병원	3	22	1	63	-	0	744-7552
진주건병원	5	12	1	153	-	0	771-8888
진주본병원	6	27	1	126	-	0	746-5111
공공교육사기지병원	14	13	3	53	-	0	750-2603
목화노인요양병원	8	27	1	37	-	0	760-7000
진주노인요양병원	13	46	1	465	-	2	790-2222
예손요양병원	3	18	1	160	-	0	791-7575
엠마우스요양병원	8	35	1	366	-	4	749-1130
센텀요양병원	8	22	0	353	-	0	795-2200
중앙요양병원	5	25	0	257	-	0	921-9000
한일요양병원	2	9	0	114	-	0	750-1300
진주정신병원	7	24	1	400	-	0	790-2222
새진주정신병원	3	11	1	180	-	0	790-2222
진주성남병원	5	16	1	299	-	0	790-0001
진주한방병원	1	4	0	50	-	0	748-3400
진주장덕한방병원	6	6	0	84	-	0	748-5555
우리들치과병원	2	4	0	0	-	0	758-2804
라온치과병원	3	6	0	0	-	0	781-0300
진주미르치과병원	6	10	0	0	-	0	745-8180

3. 민간이송업체 현황

업 체 명	소재지	구급차명	구급차 수량	전화번호
계			3	
(주)하트세이브	진주시 모덕로64번길 3-2	특수구급차	1대	753-2119
(주)중앙911구급대	진주시 진양호로 589번길 13	특수구급차	1대	747-0912
(주)EMS응급환자이송단	진주시 진주대로 942번길 24-2	특수구급차	1대	759-2117

【붙임 15】

○ 지하대피소 현황(2017. 12. 31. 기준)

연번	대상명	주소
1	축석아파트	진주시 술밭로92번길 5(상평동)
2	제일병원	진주시 진주대로 885(강남동, 제일병원)
3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진주시 대신로 570(초전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4	(주)알리안츠생명보험	진주시 진주대로 973(강남동)
5	전윤숙조리직업전문학교	진주시 동진로 125-0 (상대동)
6	대림아파트(상평동)	진주시 남강로 951(상평동, 대림아파트)
7	삼전3차아파트	진주시 하대로106번길 14(하대동, 삼전3차아파트)
8	진풍 빌라	진주시 진주성로178번길 8-5(상봉동, 진풍아파트)
9	국민3차아파트	진주시 남강로1069번길 4-1(상평동, 국민주택3차)
10	국민4차아파트	진주시 남강로1093번길 14(상평동, 국민1차아파트)
11	국민1차아파트	진주시 남강로1093번길 14(상평동, 국민1차아파트)
12	삼호맨션	진주시 하대로106번길 13 (하대삼호맨션)
13	국민2차아파트	진주시 공단로236번길 24(89상평국민주택(2차))
14	동국1차아파트	진주시 큰들로66번길 12(상평동, 동국강변아파트)
15	무림페이퍼(주)	진주시 남강로 1003 (상평동)
16	일신아파트	진주시 하대로34번길10(일신아파트)
17	하영파크맨션	진주시 말티고개로100번길16-6(하영파크아파트)
18	삼전프라자아파트	진주시 도동로 251(하대동, 삼전프라자)
19	대화맨션	진주시 하대로105번길 4-1(하대동, 대화파크맨션)
20	그린타운(구)삼진빌라	진주시 석갑로156번길 19(신안동, 그린타운)
21	하대대림아파트	진주시 도동천로 310 (하대동, 하대대림아파트)
22	한일병원	진주시 대신로 120 (상평동, 한일병원)
23	동국2차아파트	진주시 돛골로19번길 10 (상평동, 동국강변타워)
24	도동대림아파트	진주시 하대로40번길 4(하대동, 도동대림아파트)
25	흥한아파트(하대동)	진주시 선학산길 97-1(하대동, 흥한하대아파트)
26	대경아파트(하대동)	진주시 도동로264번길 31(하대동, 대경하대아파트)
27	대영아파트	진주시 말티고개로 102-5(하대동, 하대대영아파트)
28	동국한양빌라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4 (한양빌라)
29	삼전빌라	진주시 의병로243번길 4(봉래동, 삼전빌라)
30	초전일동아파트	진주시 초전북로 20-1(초전동, 초전일동아파트)
31	동성가든타워	진주시 진주대로 901(강남동, 동성가든타워)
32	덕산아파트	진주시서장대로178번길17(이현동, 진주덕산아파트)
33	현대아파트 102동	진주시 진양호로51번길 6-7(판문동, 현대아파트)

34	현대아파트 103동	진주시 진양호로51번길 6-7(관문동, 현대아파트)
35	대경그린파크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21(평거동, 대경그린파크)
36	하영그린맨션A동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8-3(평거동, 하영그린맨션)
37	한보타운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19-6 (평거동, 한보타운)
38	벽산동신2아파트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22-12(벽산동신2아파트)
39	강남빌딩	진주시 진주대로 977 (강남동)
40	초전대림아파트	진주시 말티고개로 113 (초전동, 초전대림아파트)
41	홍한스위트아파트	진주시 신안로 94 (신안동, 홍한스위트)
42	현대아파트 104동	진주시 천수로 315 (신안동, 현대아파트)
43	현대아파트 105동	진주시 천수로 315 (신안동, 현대아파트)
44	현대아파트 106동	진주시 천수로 315 (신안동, 현대아파트)
45	대경강변맨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 7 (신안동, 대경강변맨션)
46	홍한1차아파트	진주시 진양호로328번길 4(신안동,신안1차홍한타운)
47	홍한2차아파트	진주시 평거로139번길 11-3 (한타운2차아파트)
48	평거현대2차아파트	진주시 신안들말길 58(신안동, 평거2차현대아파트)
49	한보하이타운	진주시 순환로553번길 7 (평거동, 한보하이타운)
50	쌍용아파트	진주시 말티고개로108번길 5(진주쌍용아파트)
51	복음병원	진주시 진양호로 370 (신안동, 복음병원)
52	신안한주빌라	진주시 남강로477번길 7 (신안동, 신안한주빌라)
53	신안2차주공	진주시 신안들말길 47 (신안동, 주공2차아파트)
54	올림픽아골든맨션	진주시 모덕로270번길 12 (올림픽아골든맨션)
55	성창아파트	진주시 모덕로 283 (하대동, 성창조합주택)
56	임광아파트	진주시 모덕로 293 (하대동, 임광아파트)
57	한보타워아파트	진주시 모덕로306번길 2 (하대동, 한보타워맨션)
58	삼전2차아파트	진주시 모덕로306번길 17 (하대동, 삼전2차아파트)
59	한보힐타워	진주시 상대로143번길 11-2 (한보힐타워맨션)
60	럭키강변아파트	진주시 남강로 1407 (하대동, 럭키강변아파트)
61	하대한보아파트	진주시 남강로 1399 (하대동, 하대한보아파트)
62	현대아파트(하대동)	진주시 하대로 142 (하대동, 현대아파트)
63	망경한보아파트	진주시 망경로 234-5 (망경동, 망경한보타운)
64	상봉한주타운지하주차장	진주시 진주대로1208번길 16 (상봉한주타운)
65	화인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주시 상봉대룡길 18 (상봉동, 화인아파트)
66	유곡한보아파트	진주시 진주대로1270번길 11-1 (유곡한보아파트)
67	삼성아파트	진주시 동부로43번길 10-13 (호탄동, 삼성아파트)
68	현대아파트(초전동)	진주시 초전남로 60 (초전동, 현대아파트)
69	청구타운(초전동)	진주시 대신로475번길 16-5 (초전동, 청구타운)

70	상대현대아파트 지하	진주시 모덕로181번길 7 (상대동, 상대현대아파트)
71	신안3차주공	진주시 석갑로 58 (신안동, 주공3차아파트)
72	들말한보	진주시 평거로39번길 9 (평거동, 들말한보타운)
73	옥봉대림아파트	진주시 향교로115번길 10 (옥봉동, 대림아파트)
74	옥봉새마을금고	진주시 진산로 5 (옥봉동)
75	남강한주아파트	진주시 남강로736번길 6-3 (옥봉동, 남강한주타운)
76	경상대학교 병원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경상대학교병원)
77	문화예술회관	진주시 강남로 215 (강남동)
78	칠암한주아파트	진주시 강남로 101 (칠암동, 칠암한주아파트)
79	대화강변아파트	진주시 도동천로 311 (하대동, 대화강변마을)
80	동서훼밀리아파트지하	진주시 선학산길 22 (상대동, 동서훼밀리)
81	들말대경	진주시 석갑로53번길 10 (평거동, 들말대경아파트)
82	신안1차주공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들말길 17 (주공1차아파트)
83	현대아파트 101동	진주시 진양호로51번길 6-7 (관문동, 현대아파트)
84	경상대학교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경상대학교)
85	한보프라자 지하	진주시 동진로 111 (상대동, 한보프라자)
86	남척빌딩(기아자동차)	진주시 남강로 726 (옥봉동)
87	근로자복지회관	진주시 동진로263번길 14 (근로자가족복지회관)
88	진주소방서	진주시 동진로 249 (상대동, 진주소방서)
89	상대홍한아파트	진주시 대신로243번길 12 (상대홍한아파트)
90	김양수일천빌딩	진주시 진양호로 505 (중안동)
91	도남빌딩	진주시 축석로 121 (봉곡동)
92	용산당	진주시 진주대로 1206 (봉곡동)
93	대경아파트	진주시 가호로 79 (호탄동, 대경빌라트)
94	진주시청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진주시청)
95	상대한보아파트	진주시 도동천로 120 (상대동, 상대한보아파트)
96	주약한보은빛아파트	진주시 진주대로 789 (주약동, 한보은빛마을)
97	금호석류마을	진주시 강남로 45 (주약동, 금호석류마을)
98	대동아파트	진주시가호로44번길 7(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99	초전홍한황토방아파트	진주시 초전남로 30(초전동, 초전홍한황토방아파트)
100	덕성빌딩	진주시 진양호로 568-1 (장대동)
101	지하상가	진주시 진주대로 지하 1035(대안동, 진주지하상가)
102	가좌그린빌주공아파트	진주시 내동로348번길 10 (가좌그린빌주공아파트)
103	가좌3주공아파트	진주시 진주대로568번길 12 (주공3차아파트)
104	가좌제일풍경채아파트	진주시 가좌안골길21번길 5 (가좌제일풍경채)

105	이현웰가아파트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317
106	영채메디컬센터	진주시 향교로 13 (수정동)
107	견성스타뷰	진주시 진주대로1178번길 8 (봉곡동, 견성스타뷰)
108	진주문산코아루아파트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117번길 5
109	상평동일스위트아파트	진주시 공단로 30 (상평동, 상평동동일스위트아파트)
110	(주)한화갤러리아진주점	진주시 진주대로 1095 (평안동, 한화갤러리아백화점)
111	주약현대아파트	진주시 진주대로815번길 11 (주약동, 주약현대아파트)
112	동명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주시 돛골로 165 (상대동, 동명아파트)
113	한주그린아파트 지하	진주시 선학산길 46 (상대동, 상대한주그린아파트)
114	교보생명	진주시 진주대로 884 (칠암동)
115	대덕아파트	진주시 진주대로942번길 16 (칠암동, 칠암대덕아파트)
116	진주롯데인벤스	진주시 향교로 3 (평안동, 진주롯데인벤스)
117	에스디푸른마을	진주시 상봉대룡길 37 (상봉동, 에스디푸른마을)
118	진주초전푸르지오1단지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7
119	진주초전푸르지오2단지	진주시 초장로14번길 29
120	휴먼시아4단지	진주시 새평거로 75 (평거동, 평거휴먼시아4단지)
121	평거엘에이치5단지	진주시 새평거로 70 (평거동, 평거엘에이치5단지)
122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1단지	진주시 사들로 157 (충무공동)
123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4단지	진주시 사들로 126 (충무공동)
124	들말홍한아파트	진주시 석갑로 45 (평거동, 들말홍한아파트)
125	평거휴먼시아3단지	진주시 새평거로 111 (평거동, 평거휴먼시아3단지)
126	더 퀸즈웰가	진주시 새평거로 25 (평거동, 더퀸즈웰가)
127	엠코타운 더 프라하	진주시 새평거로 30 (평거동, 엠코타운더프라하)
128	초장엠코더이스턴파크	진주시 초북로 77 (엠코타운 더 이스턴파크)
129	초전해모로루비채2단지	진주시 초북로 88 (초전동, 초전 해모로 루비채 2단지)
130	초전해모로루비채4단지	진주시 초북로 55 (초전동, 초전 해모로 루비채 4단지)
131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 5단지	진주시 충의로 67(충무공동,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5단지)
132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 8단지	진주시 사들로 35(충무공동, 혁신도시엘에이치아파트8단지)
133	한림풀에버	진주시 소호로 39 (충무공동, 한림풀에버)
134	진주문산파란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48번길 15
135	LH아파트9단지	진주시 사들로 13 (충무공동, 혁신도시)
136	평거하우스토리	진주시 진양호로239번길 13 (평거동, 평거하우스토리)
137	엘크루아파트	진주시 새평거로 112 (평거동, 진주평거엘크루)
138	건영아모리움	진주시 진양호로225번길 13 (평거동, 건영아모리움)

2. 서식

【서식 1】 긴급구조대응지침서

재 난 명	
작성일시	
대응기간	
일반대응목표	
대응지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 상황(해결해야 할 문제 위주 개조식 기술) 2. 임 무(해결해야 할 하위 대응목표) 3.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각적 조치사항 - 12시간 예측에 따른 조치사항 4. 대응지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응지침 - 문제점 - 개 선 5. 필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단체 현장대응자원 협조사항 - 긴급대피소 협조사항 - 시설, 기타 물품 협조사항 6. 통신(음성전달, 데이터통신, 항공통신, 무선) 7. 일기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기상상태 - 24시간 후

【서식 2】 상황예측 매뉴얼

《 상황예측 매뉴얼 》

계획부는 변화하는 재난상황을 예측하여 현장지휘대장, 자원지원부장, 긴급복구부장, 통합지휘팀에 제출한다. 계획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예측 지침을 이용한다.

1. 상황은 어떻게 변하는가?
 - 호전되는가?
 - 악화되는가?
 -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는가?
2. 수색 및 구조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 피해 도로 긴급복구 소요 시간은?
 - 교량이 파손되었나?
 - 긴급구조 및 대피장소에 가기 위한 대체 도로는?
 - 주요 자원의 현장동원을 위한 대체 도로는?
4. 전기, 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긴급복구활동과 소요 시간은?
5. 긴급복구로 인한 잔해물 적치장소는? 잔해물 중 위험물질은 없는가?
6. 긴급대피소 및 대응자원의 숙소가 필요한가? 장기적으로 필요한가?

【서식 3】 상황 요약 절차

《 상황 요약 절차 》

1. 계획부 각 반별 운영요원을 임무별로 조직한다.
 - 상황분석반 :
 - 상황보고반 :
 - 작전계획부 :
 - 메시지센터 :
2. 지역 지도에 재난발생 지점을 모두 표시한다.
3. 현장지휘대장과 만난다.
4. 현장지휘대장에게 대응지침서를 전달한다.
5. 자치단체장에게 초기(1차) 브리핑을 준비한다.
6. 연락공보담당이 자치단체장에게 초기 브리핑을 하도록 요청한다.
7. 현장지휘대장, 자원지원부장, 긴급복구부장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
8. 브리핑을 한다. 주요 요점은,
 - 재난(사고) 위치
 - 재난의 성격(화재, 위험물질 등)
 - 인명구조 및 구급(응급의료) 상황
 - 12 시간 이후에 대한 상황평가(예측)
 - 자원배치 현황
 - 유관기관 상호협조
 - 건의 및 증점지원사항
10. 계획을 준비한다.
11. 12시간 예측을 준비한다.

【서식 4】 상황 요약 양식

《 상황 요약 양식 》

1. 현 재난 상황/위험 분석

2. 조치상황

3. 상황예측(12시간)

4. 필요 자원

5. 장기적 대응목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5】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6】 재난상황 보고서(통보서)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 조치 사항

○ 동원 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 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7】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수신: 귀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1. 종사명령 사유:
2. 종사 업무 및 소지 자격:
3. 종사 기간: . . . 부터 . . . 까지
4. 종사 장소:
5. 참고사항

절 취 선

응급조치종사명령 수령증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에게 대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관계: 본인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8】 응급조치종사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수신: 귀하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난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유한 자격	
응급 조치	종사기간	. . .부터 . . .까지
	종사 장소	
	종사 내용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9】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응급부담 명령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응급조치를 위한 응급부담을 명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부담자의 인적 사항

- 가. 성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소

2. 응급부담 명세서

- 가. 부담 목적
- 나. 부담 기간
- 다. 부담 대상
- 라. 부담 내용
- 마. 그 밖의 사항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2.6>

【서식 10】 응급부담 확인서

문서번호: (일련번호)

수신: 귀하

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급부담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급부담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응급부담	기 간	. . .부터 . . .까지
	장 소	
	내 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00년 00월 00일)

재난개요 : ※육하원칙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			
부 서 별	시각 (간)	운 영 내 용	판단근거
통 제 단 장	▪ 18:45	▪ 상황접수 및 각 부장 소집 상황판단회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지휘통제계획
	▪ 19:05	▪ 00시장에 상황개괄 보고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건의	▪
	▪ 19:30	▪ 전체상황 재판단	▪
	▪	▪	▪
	▪	▪	▪
	▪	▪	▪
	▪	▪	▪
	▪	▪	▪
	▪	▪	▪
	▪	▪	▪

○○긴급구조통제단장 소속 : 계급 : 성명 인

부 서 별		시각 (간)	운영내용	판단근거
총 괄 지 휘 부	통합지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연락관 해당 소속기관 지원현황 출력 및 상황판단회의 참석 	
	연락공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방송국에 비상경고, 대중정보 메시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정보비상경고계획
	안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현장 구역으로 평가 위해 진입 	

총괄지휘부장

소속 :

계급 :

성명



부 서 별		시간 (각)	운영내용	판단근거
대 응 계 획 부	상황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상황분석 준비 	
	상황보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7 1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진압반으로부터 상황 접수 구조진압반으로부터 상황접수 후 중요사항 상황분석반 및 작전계획반에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정보비상경고계획
	작전계획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전운용상 고려사항 검토 준비하면서 피해상황분석반과 교감시작 	

대응계획부장

소속 :

계급 :

성명



부 서 별		시간 (각)	운영내용	판단근거
자 원 지 원 부	서비스지원반	▪ 18:45	▪ 구조진압반의 현장지휘소 장비 등 조달 실시	
		▪ 19:05	▪ 자원지원반으로부터 판단 내용 접수 개시	
	자원지원반	▪ 18:50	▪ 유무선 교신 내용 모니터링 시작	▪ 대중정보비상경고계획
		▪ 19:00	▪ 예상 지원자원 리스트 정리 및 나열 대기상태 완료	▪
		▪	▪	▪
		▪	▪	▪
		▪	▪	▪
		▪	▪	▪
		▪	▪	▪
		▪	▪	▪

자원지원부장

소속 :

계급 :

성명



부 서 별		시간 (각)	운영내용	판단근거
현 장 지 휘 대	구조진압반	18:47	현장지휘소 설치 및 대원 조 편성, 상황실에 비상소집 요구하고 대응계획부에 보고	
		18:51	탐색구조반 투입, 차량 장비 부서 할당 후 대응계획부에 보고	
	현장통제반	18:53	교통안전지원팀 긴급 투입, 배치	
	응급의료반	18:55	현장응급의료소 설치하고 분류·처치·이송구역 나눔	대중정보비상경고계획
		19:05	임시영안소 지정, 권역 응급의료센터 연락 대기요청	
	항공통제반	19:00	인근지역 농연확산 예측정보 상황실로부터 접수, 관할 공항 관제소에 비상 연락	

현장지휘대장

소속 :

계급 :

성명



부 서 별		시간 (각)	운영내용	판단근거
긴 급 복 구 부	긴급구호 지원반	▪ 16:10	▪ 00공설체육관에 임시수용시설설치 후 자원지원부에 모포, 라면 및 긴급식수요청	
		▪	▪	
		▪	▪	
		▪	▪	
		▪	▪	
	긴급시설 복구반	▪ 18:45	통제단 파견 연락관으로부터 자원 대기 준비상태 연락 접보	
	긴급오염 통제반	▪ 18:45	통제단 파견 연락관으로부터 자원 대기 준비상태 연락 접보	▪
		▪	▪	▪
▪		▪	▪	
▪		▪	▪	
▪		▪	▪	

긴급복구부장

소속 :

계급 :

성명



【서식 15】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 응급의료소 운영상황 보고 》

- * 사망자 수
- * 병원시설 피해상황
- *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 * 특수재해시 현장활동요원들의 보호장구 착용수준 및 유의사항
- * 응급의료활동에 필요한 비 의료자원 현황
- * 사망자 명단

【서식 16】 언론매체 모니터 일지(기록양식)

월. 일	시간	TV	라디오	신문	기타	언론매체 전화번호	기록자	비고

【서식 17】 사상자 조치상황

- 사망자 : 총 명 (남 , 여)
- 안치사항

안치장소	사체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사망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안치장소	비고(주소,직업)

- 부상자 : 총 명 (남 , 여)
- 입원조치사항

병원별	부상자 수	성 별		비고
		남	여	
계				

- 부상자 명단

성명	연령	성별	입원병원	비고(주소,직업)

【서식 18】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원조사서

1 0000(기관명)

① 일반현황

기관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 ○ - 전화 사무실 : _____ 휴대폰 : _____
참여가능한 재난유형	예) 지진, 태풍·홍수, 대설, 화재·폭발,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전기·가스, 통신, 수도, 감염병, 기타()	
재난현장 에서의 주요기능	피해상황분석, 인명구조(붕괴, 수난, 산악, 화생방), 화재진압, 응급의료, 오염제독, 긴급복구(도로, 통신, 전기, 수도, 가스), 긴급구호, 기타()	
상황실 (당직실)	- 부서(기구)명 : _____ (근무형태 : 주간 00명, 야간 00명) - 전화번호 : _____ Fax : _____	
긴급구조 통제단 파견 연락관 지정	- 근무부서 : _____ 직책 : _____ 성명 : _____ - 사무실전화 : _____ 휴대전화 : _____	
긴급대응 협력관 지정	- 근무부서 : _____ 직책 : _____ 성명 : _____ - 사무실전화 : _____ 휴대전화 : _____	
재난대응 관련부서	1) 부서명 : _____ (관련사무 : _____) - 담당과장 : _____ /☎Of: _____, Hp: _____ - 담당팀장 : _____ /☎Of: _____, Hp: _____ - 담당자 : _____ /☎Of: _____, Hp: _____ 2)	
우리 기관의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현황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_____ (서명 또는 인) 확인자 _____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귀하		

② 전문인력 : 총 명

구 분	보유자원 현황	비고(의견 등)
<p>가. <u>긴급구조 관련 교육*</u> <u>14시간** 이상 이수자</u></p> <p>* 시행령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p> <p>** 교육기간: 18. 1. 1. ~ 11. 30</p>		
<p>나. <u>긴급구조 관련 업무*</u> <u>3년** 이상 종사자</u></p> <p>* 긴급구조대응계획상 긴급 구조 자원관리 지원업무 등</p> <p>** 긴급구조관련 업무 누 계합산산정(재난관련업 무포함)</p>		
<p>다. <u>긴급구조 관련 해당 분야 자격*</u> 보유자</p> <p>* 「자격기본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국가자격 또 는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p>		

③ 시설·장비·물자 : 중 점

구 분	보유자원 현황	비고(의견 등)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 구조지원 요청 접수·처리가능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및 물품		
라.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마.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바.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③ 재난현장대응 운영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확인결과 (○ 또는 ×)	비고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 전달 및 조정 체계	- 재난현장 대응조직 편성 및 운영 체계 구축 여부		
나. 재난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과약과 효율적 배치·관리체계	- 재난현장 자체 자원관리 체계 구축 여부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 현장연락관 파견 사전 지정 여부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여부 ('15년 평가에서는 제외 / '16년부터 평가)		

④ 기타(작성기관 의견)

-

-

-

【서식 19】 자원동원매뉴얼

- 통제단장에게 자원동원부서 상황을 보고하고 초기 지침서를 입수 후 자원동원부 요원의 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을 할당한다.
- 활동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 전반적 자원동원 연대 조직을 확립한다.
- 통제단 가동초기 1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지휘부장, 대응계획부장, 긴급복구부장과 만난다.
- 통제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문제점을 검토한다.
- 현장지휘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 계획된, 예상된 작전에 필요한 자원동원, 업무지원 사항을 확인한다.
- 요청된 자원동원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한다.
- 재난구역별 담당자와 통신연락을 확립한다.
- 필요한 모든 일지를 기록하고 작성 한다.
- 상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잠재적 자원수요나 문제점을 예측 조치한다.

【서식 20】 자원집결지 설치절차

- 도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은 재난 인근지역에 자원집결지를 지정 운영할 책임이 있다.
- 자원집결지는 대응단계 2 또는 3에서 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 복구, 구호자원을 재난지역 전체에 배치 및 배포하고, 부상자 외부수송 지원을 위한 임시집결지점의 기능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장소가 도의 자원집결지로 운영된다.
 - 경남도 본청 내 운동장 :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 마산역 광장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 마산종합운동장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창원종합운동장 : 경남 창원시 반송로 104
- 사전 지정된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기타 도 소유 건물, 공터, 학교 등 육해공 수송수단의 활용이 편리한 곳이 집결지로 사용된다.
- 인근 자치단체, 소방청, 각 중앙부처(청)의 지원자원은 지정 공표된 집결지에 집결한다.
- 자원집결지에는 각 재난현장으로 배치되는 자원을 수송할 수송대기지역이 지정 운영된다.
- 이 수송대기지역의 운영은 자원지원부 시설(서비스)지원반 수송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첨부 2

【서식 21】 피해상황분석편람

● 사망(부상)자 피해상황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망위치	사망(부상)원인	부상 부위	비고

● 부동산 피해상황

피해물건명	피해의종별 (소손,수손,기타)	수량 또는 면적	경과년수	비고

● 동산 피해상황

품명	수량	피해액	피해의종별 (소손,수손,기타)	피해장소	비고

【서식 22】 최초보고서

수 신 : 경상남도지사

재 난 명 :

1. 사고개요

- 일 시 : (접수 : , 출동 :)
- 장 소 :
- 원 인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사망 , 부상 , 실종)
 - 재산피해 : 원 (건물 , 기타)

2.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의료기관 명, 공무원 명, 자원봉사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중장비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3. 지원 및 조치사항

-
-

【서식 23】 지원요청서

수 신 : ○ ○ 기관장

제 목 :

1.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사고내용 :

2. 지원요청사항

- 인 원 :
- 장 비 :
- 물 자 등 :

3. 협조사항

- 지원시기 :
- 지원지역 :
- 지원사유 :
- 행동요령 :

4. 행정사항 : ○기관 인원 및 장비 등을 ○○년○○월 ○○일○○시
까지 ○○장소로 집결토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경상남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서식 24】 대중정보 보고서

수 신 :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장)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실종 명, 부상 명)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 기 타 :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공무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서식 25】 피해상황 최종보고서

수신 :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원 인 :
- 내 용 :

2.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원(동산 원, 부동산 원)

3. 동원인원 및 장비

- 인 원 : 명(소방 명, 경찰 명, 군 명, 공무원 명, 기타 명)
- 장 비 : 대(헬기 대, 구조차 대, 소방차 대, 특수차 대, 기타 대)

4.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

-
-

5. 환자이송현황

- 사망자 : 명(남자 명, 여자 명, 미상 명)
- 부상자 : 명(중상 명, 경상 명)
- * 병원 명, 의료원 명, 병원 명.
 병원 명, 대학병원 명.

【서식 26】 피해상황분석반 표준작전절차

- 재난발생 우려 시 사전위험성 분석활동 및 재난 초기조사
- 피해상황 정보의 조사·수집·전파
- 상황 및 분석보고, 정보의 표시, 기록유지 등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확보한 재난상황 정보의 수집 및 종합분석
-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상황분석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
-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
- 연락공보 담당이 대중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긴급구조대응 활동과 관련된 사항 기록정리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포함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일지, 비디오, 사진 등을 보관
- 소방청 및 대책본부 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비하여 각종 피해관련 자료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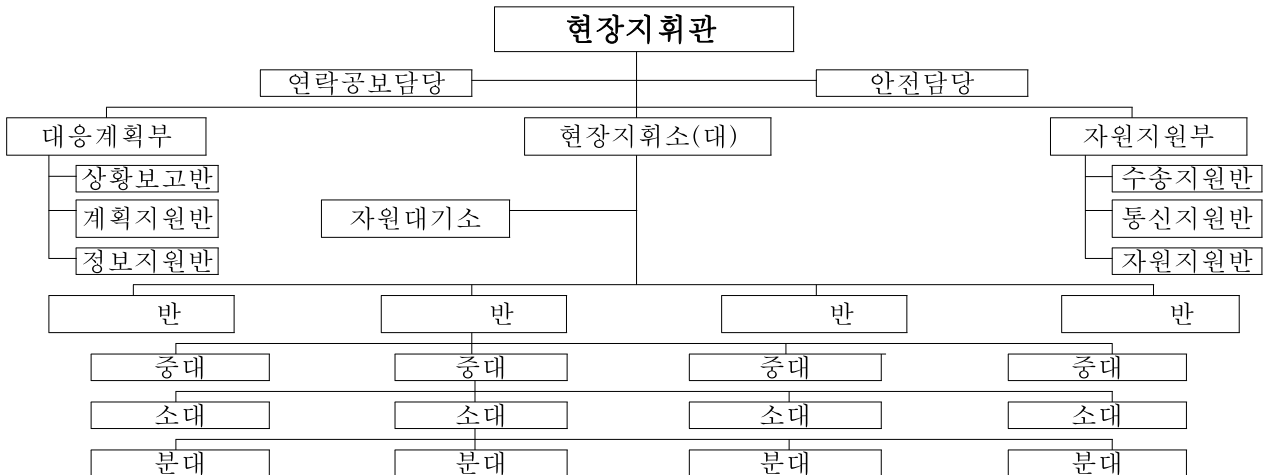
참 고 자 료

【참고 1】 표준현장지휘체계

3.4.1 기본지휘구조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재난시 긴급구조기관 및 각 지원기관의 일상적 행정조직을 대체하여 긴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운영조직이 된다.
- 재난상황에서는 아래의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가 이용된다.

<표준현장지휘체계(예시)>



※ 소방서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3.4.2 적용상황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이용된다.
 - 소방, 경찰, 응급의료소에 의한 재난현장 공동 대응
 - 각 지원기관 현장지휘소에서
 - 000시 통제단을 통하여 000시 전체의 대응조직 운영할 때
 - 각 재난대응구역 내의 소방서 통제단에서

3.4.3 표준현장지휘체계 운영원칙

- 표준현장지휘체계는 모든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며,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 또는 다수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상황에 표준현장지휘모델로 적용한다.
- 표준현장지휘체계의 표준화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대응계획부 : 재난상황과 자원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현장대응계획을 문서화한다. 현장대응계획을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에 전달하고, 상황예측에 따른 필요자원을 예측한다. 현장지휘대 및 통합지휘팀과 함께 대응지침서와 현장대응계획서를 개발한다.
 - 현장지휘대 : 대응계획에 따른 현장 대응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통제한다.
 - 자원지원부 : 현장대응 및 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장비, 인력자원을 제공하고 긴급히 소요되는 재정지원임무를 수행한다.

【참고 2】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긴급구조대응 매뉴얼

	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사전 대비 (-D7 ~ 3일 전)	<p>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급경사지 및 대형공사장 등 재난취약지역 파악 - 강·하천 주변,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전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철저 지시 풍수해 대응활동에 필요한 자원 정비·점검 지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p>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이력(예상이동경로, 크기, 강도, 최대풍속, 이동속도 등) 호우 등 기상청 예비특보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서별 재난취약지역 등 파악·취합하여 중통단 보고 - 강·하천 주변,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고립예상 지역 등 내근 및 외근근무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현행화 기상특보에 따른 인명구조대책 수립 시달 - 재난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및 수방장비 점검 철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교육 지시(현장안전점검관 지정) 	<p>기본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동차량 정비 등 출동태세 확립 및 개인안전 장비 점검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등 대응전술 숙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강·하천 주변 등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비상연락망 점검 및 초기대응 준비 - 긴급단 운영을 위한 단계별·조별 비상소집 명단 정비 -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자체 등의 동원자원 파악 소방차량 및 풍수해 대응자원 정비·점검 기타 상급부서 지시사항 이행 등 								
내습 전 (-D2 ~ 1일 전)	<p>상황판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 중통단 운영준비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 일선 소방관서장 상황중료시까지 지휘선상 근무 지시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통단 조별 근무자 명단작성 및 비상연락망 확인·점검 - 기상특보에 따른 대기 예경 발령 중대본 구조구급반 인력 파견(정보교류 및 지원사항 요청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서(119구조과) 정위치 근무 긴급조치사항 시·도 소방본부 및 119중구본 지시 -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p>상황판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 총괄지휘부 구성 운영 및 상황실요원 보강 등 - 119신고 폭주 대비 상황실 접수대 증설방안 강구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및 소방서 조별 근무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확인 - 기상특보에 따른 예비단계 비상 예경 지역재난대책본부와의 협업체계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철저 지시 소방력 재배치로 동시다발 긴급구조 출동대비 - 피해예상 집중지역 → 필요시 즉시 중통단으로 요청 태풍경로, 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적극 홍보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판단회의 실시로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 유지 - 기상상황, 위험요소, 소방력 동원 등 판단·이행 - 총괄지휘부 등 상황요원보강 계획 등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요시 붕괴 및 침수우려지역 집중 순찰실시 및 대처요령 홍보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재배치로 대응태세 유지 - 매년 상습 침수지역 및 예상지역 센터에 집중 배치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운영에 따른 근무자 명단 작성·정비 								
내습 중	<p>중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및 시·도 통보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즉보체계 확립 지시 피해사항 및 지원사항 등 상황보고체계 확립 <p>긴급지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소방본부 및 중앙119구조본부 강조 지시 - 내습지역 : 대응단계별 긴급단 운영준비 철저 - 기 타 :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비·대응태세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활동 지휘·조정·통제 강화 인근 시도 지원 및 중앙단위 출동체계 확립 기타 긴급구조 사항 추가지시 등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상황조정 운영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비상소집</td> <td>필요시 필수요원 동원</td> <td>정원 30%</td> <td>정원 50%</td> </tr> </table> <p>※ 기상특보, 지역실정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통단과의 핫라인 등 상황 즉시보고 체계 유지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 대응 시 직원 안전사고 절대방지 재강조 지시 - 특히 주변 동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장지휘 강화 상습 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강화 지시 - 해안가, 유원지 및 붕괴우려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피해발생 큰 지역에 대한 소방력 우선 배치 등 탄력적 운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소집	필요시 필수요원 동원	정원 30%	정원 50%	<p>지통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피해범위,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탄력 운영 <p>주요추진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구조대응시 직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안전점검관 센터별 지정운영 지시 - 수난구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현장활동 준수 필요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및 출입통제 - 순찰차 및 펌프차 등을 활용 사이렌 취명 및 안내방송 실시 시·군·구 통합지원본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 상황공유 및 필요한 물자·자원 등 지원요청 필요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 예방활동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비상소집	필요시 필수요원 동원	정원 30%	정원 50%								
내습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황, 긴급구조 실적 및 미담사례 등 보고준비 복구 및 민생활동에 가용 소방력 최대 지원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현황 및 긴급구조 실적·미담사례 등 파악 통합지원본부와의 지원관련 물자 등 관련 정보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구 및 민생활동에 가용 장비 및 소방력 최대 지원 								

【참고 3】 지진 규모별 상황관리

구분	구성기준	
자체대응	지진	규모 3.5 ~ 3.9(해역 4.0 ~ 4.4)
1단계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규모 4.0 ~ 4.9(해역 4.5 ~ 5.4)
		규모 4.0 ~ 4.9(해역 4.5 ~ 5.4)
2단계 시,도 통제단 운영		해저지진(규모 7.0 이상)이 발생하여 예상 파고가 0.5m ~ 1.0m 미만 발생 시
		규모 5.0 이상(해역 5.5 이상) 지진해일

【참고 3-1】 지진규모 및 진도에 따른 현상

규모	진도	내용
2.9 미만	I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
3.0~ 3.9	II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 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 진동.
	III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을 느끼며 지속 시간이 산출됨.
4.0~ 4.9	IV	지진동안 실내에 서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실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 밤에 잠을 깨며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냄.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주고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뚜렷함.
	V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어떤 곳에서는 석고에 금이 가며 불안정한 물체는 뒤집어 짐. 나무, 전신주 등 다른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며 추시계가 정지.
5.0~ 5.9	VI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벽면의 석고가 떨어짐.
	VII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수준. 잘 설계된 건물에 피해가 없을 수 있으나 보통 건축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음.
6.0~ 6.9	VIII	잘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 피해가 있고 보통 건축물에는 부분적인 붕괴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심하게 피해가 발생되는 수준. 창이 있는 벽이 무너지고 기둥, 벽들이 무너짐. 무거운 가구가 뒤집어 지며 모래와 진흙이 솟아남. 우물 수면이 변하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음.
	IX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수준.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일반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남. 땅은 명백하게 갈라지며 지하파이프도 구부러짐.

7.0 이상	X	잘 지어진 목조구조물이 파괴되는 수준. 대부분의 석조건물과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지며, 땅이 심하게 갈라지고 철도가 휘어짐. 강둑이나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생기며 독이 붕괴됨.
	XI	남아있는 석조구조물이 거의 없는 수준. 교량이 부서지고 땅이 넓은 균열이 발생되며,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됨. 연약한 땅이 폭 꺼지고 지층이 어긋나며, 기차 선로가 심하게 휘어짐.
	XII	전면적인 피해 수준. 지표면에 파동이 보이고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리고 물체가 하늘로 던져짐.

MM척도(Modified Mercalli scale) : 12등급의 진도계급으로 세계적으로 널리쓰임

【참고 4】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절차(예시)

1. 비상경고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한다.(첨부 참조)
2. 000시 긴급구조 통제단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코드암호를 얻는다.
3. 아래에 열거된 순서대로 방송국에 연락한다.
 - KCB 전화 765-4074, 팩스: 765-4080로 연락
 - KCB가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
4. 전화가 두절된 경우, 비상용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연락한다.
5.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고, 비상방송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특정 암호 숫자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면, 암호숫자 우측 옆에 나타난 암호로 대답한다.
6.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기 작동개시라고 말하며, 5, 4, 3, 2, 1, 0를 읽고, 메시지 양식에 있는 메시지를 읽는다. 주의하여 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읽는다. 그리고 메시지 양식의 맨 끝부분에 “방송완료” 라고 말한다. 메시지가 완료되었을 때, KCB 비상방송 담당자가 녹음완료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끊는다.

【참고 5】 비상경고메시지(예시)

□ 메시지 1---재난발생 후 최초 메시지

1. ____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공지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 사고가 (장소명)에서 발생했습니다. ____로 인하여 ____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명)의 (반경 Km)내의 모든 사람들은 본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은 북쪽으로 (이름)도로, 동쪽으로 (이름)도로, 남쪽으로 (이름)도로, 서쪽으로 (이름)도로입니다.
2. 지금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마십시오 대피가 필요하게 되면 대피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대피지시를 듣게 되면 즉시 보호장소를 찾아서 대피하십시오. 119대원(소방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메시지 2 --- 위험지역 내 보호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 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〇〇〇-〇〇〇〇 ~ 〇번입니다.

□ 대피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기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00-0000 ~ 0번입니다.

【참고 6】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연락공보담당은 비상경고메시지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연락공보담당은 외국어로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번역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로 언론에 제공되는 메시지 및 비상경고메시지의 샘플이다.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2. 지진(최신 정보)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10. 도로폐쇄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물탱크의 균열)
14. 비상방송메시지(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1. 지진(알려진 정보 없음)

이 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_____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는 피해나 부상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그 곳에서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심한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진동이 시작되면 재빨리 견고한 가구 밑이나 지탱할 수 있는 문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원차단기를 내리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지진(최신 정보 제공)

이곳은 _____의 _____입니다. 오늘 __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_인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과학적 설명)

긴급구조통제단에 _____명의 사망자 _____명의 부상자 _____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상황 요약을 계속한다)

여진이 사고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면 즉시 견고한 가구 밑이나 문간으로 대피하십시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3. 지진(언론 매체에 발표할 내용)

메시지 1

오늘 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__지역을 강타 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__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부상, 사망, 재산피해액, 화재 기타 내용을 알린다.)

강도 _____의 여진이 이어졌지만 추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피해사례를 열거한다.)

_____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적십자는 이재민들을 위해 _____에 대 피소를 설치하고, _____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_____일 _____시에 시장은 (시간) (날짜)에 (지역)에서 지역재난이 일어났음을 선포 하고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피 해액은 _____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시지 2. 단기에보용 메시지

(기상청의 지진예보경고를 참고한다.)

기상청은 _____동 주변지역에 _____시간이내 지진이 발생할 것을 (시간) (장소) 발 표하였습니다. 지진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진에 대비한 계획 을 세워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개인과 기업 등은 즉시 지진을 대비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_____ 지역에는 더 큰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도를 참고한다)

(다음의 지진 대비활동을 제공한다.)

- *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안전한 곳으 로 대피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은 철근이 없는 오래된 석조건축물이다.(보통 벽돌건물임)
- * 온수기, 불안정한 가구(예를 들어 높은 파일 캐비닛인 서랍장), 실험실 선반 위 의 화학약품, 고정되지 않은 높은 물건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십시오.

4. 지진예보(지진예보나 보고의 해제)

기상청에서 발표된 지진예보는 _____시부로 해제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_____의 모든 지역은 언제라도 지진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_____의 건물 설계기준은 지진의 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언급한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예보, 홍수예보 등과 마찬가지로 지진예보는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진예보가 상황실에 접수될 때마다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보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_____은 대중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신중하게 대비해야한다.

5. 지진(긴급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명된 경우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명확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용은 (기관명)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예보된 지진은 아주 미미하거나 진앙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피해가 _____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언비어통제와 대중정보 제공 외에는 이 예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지시되지 않았습니다.

6. 위험물질(교통혼잡지역에서 발생한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유출)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특정지역명)에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방출)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 도로는 _____입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이 그 물질의 성분을 조사한 후 결과를 가능한 빨리 전달할 것입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위험물질(위험도가 낮은 물질의 유출 : 대피할 필요 없음)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위험물질인 (물질명)의 소량이 ____에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도로가 폐쇄되었고 교통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물질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하지만/강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_____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____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도로는 ____입니다. 위험지역과 가까운 곳에 계신 경우에는 출동한 소방관(또는 비상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반복해줄 것을 요청)

8. 위험물질(위험도가 높은 물질의 유출 : 긴급한 대피가 필요)

이 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인 (물질명)의 (다량/소량)이 ____에서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당국은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____ km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지금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밖에 있는 친구나 친척의 집 또는 (장소)에 설치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십시오. 차량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의 이웃을 태우고 가십시오. 차량이 필요하다면 ____로 전화하십시오.

(학교목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소)의 대피소로 대피할 것입니다. 학생을 태우기 위해 학교로 가지 마십시오. 학교당국이 대피소로 학생을 대피시킬 것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경청하십시오.

그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높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험지역 밖의 병원이나 (장소)에 있는 대피소에 구조를 요청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 지역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9. 위험물질(언론매체에 제공할 요약된 내용)

오늘 (오전/오후) 약 ____시경에 위험물질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의 (유출/방출)사고를 (신고자)가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소방/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출/방출)된 물질은 피부에 접촉하면 ____증상을 나타내는 (위험한/무해한) (화학약품/물질/가스)인 (물질명)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출이 발생한 ____지역에서 (기관명)이 약 ____명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기관명)의 위험물질요원들이 현장으로 파견되어 상황을 수습한 후 주민들을 귀가조치 시켰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는)

(소방/경찰)관을 포함하여 ____명이 ____을 위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는)

(모든/숫자)명이 치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____입니다.

10. 도로폐쇄

여기는 ____의 ____입니다. 최근의 폭풍우로 인하여 시의 (몇 개의/많은) 지역에 (심각한/심하지는 않은)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도로의 통행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도로에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모든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쇄된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 도로폐쇄정보를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십시오.

11. 폭풍에 따른 피해나 다른 피해안내

여기는 ____의 ____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지역 내에서 구경을 하려고 해선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폭풍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다음의 장소는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곳입니다.

(장소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 비상방송메시지(대피에 대한 지시)

이 곳은 _____입니다. _____시의 _____지역에는 홍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즉시 빨리 _____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지역의 경계, 대피경로를 쓴다.)

생필품인 구급약,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만,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은 실지 마십시오.

대피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집에 머물 수 없다면 _____에 있는 적십자 대피소(중 한 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적십자 대피소에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덩치가 큰 애완동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 준다)

차량이 없거나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_____로 전화하십시오.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__지역(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를 해야 합니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전체 메시지를 반복)

13. 비상방송메시지(작은 위험물 탱크의 균열)

이곳은 ____의 ____입니다. 우리는 ____물탱크에 작은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장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관한 최신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추가정보와 지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국에 계속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14. 비상방송메시지(위험물 탱크의 균열 : 대피 필요)

이곳은 ____입니다. ____탱크의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____은 수주/수시간/수일 이내에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고 ____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____ 지역을 떠나십시오.

(대피지역 경계와 대피경로를 말해준다)

적십자는 ____ 에 대피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지역 밖의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 머물 수 없다면 다음의 대피소 중 한군데로 대피하십시오.

약품, 비상식량, 개인적인 물건, 아기용품, 옷, 돈, 그리고 귀중한 서류 등 생필품과 주요한 물건만 챙기십시오. 차에 너무 많은 물건을 싣지 않도록 하십시오. 집을 떠나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창문과 문을 잠그고, 수도와 가스를 잠그고,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차량이 없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음의 승차장소 중 한곳으로 가십시오. 차량이 없는 사람은 들고 갈 수 있는 물건만 챙기십시오. 버스가 당신을 적십자 대피소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승차장소에 갈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____로 전화하십시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승차장소 안내)

애완동물은 적십자 대피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피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맡길 수 없다면, (지시 사항을 말해준다). 애완동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덩치가 큰 동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지시사항을 말해준다).

재난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이 방송국에 주파수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흥분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해 주십시오. 당신이 협조하신다면 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15. 비상방송메시지(지진해일에 대한 경고)

(기관명)_____으로부터 지진의 발생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발생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메시지 표본

1. (발신기관명)로부터
2. (수신기관명)으로
3. (해일 도착시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4. (발생지역) 00시 남서쪽 00km 지점
5. (진도) 8.4
6. (성명), (관측소)

1. 2번 설명 생략.

3번--지진에 의한 파도가 육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칭한다.

4번--지진이 발생한 위치나 지역을 나타낸다. 때때로 막연한 방향이나 대략적 거리가 주어진다.

5번--리히터 지진계에 나타난 지진의 규모

6번--보고를 보낸 직원의 이름

16. 지진해일에 대한 뉴스전달

기상청은 ___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해일이 ___해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일은 약 ___에 ___해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해일로 인하여 홍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지역 안내)

위험지역내의 모든 사람들은 ___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상황은 여섯 시간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위험지역의 출입을 통제할 것입니다.

(유사 재난의 사례 설명)

지진해일은 ___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64년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지진해일도 ___에서 12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제때에 대피를 하지 않았거나 대피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 지진해일은 ___지역에도 피해를 입혔다. 1960년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경고가 발표된 지 6시간이 지난 후 ___에서 61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___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___에서 ___명의 사람들이 지진해일로 생명을 잃었고, ___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해서 발생하는 파도입니다.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를 받을 때까지 위험지역 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파도는 이 지역해안에서 한 시간 거리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 ___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지역에서 지진해일의 크기나 진폭을 미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지진해일이더라도 한 해변에서는 크고, 수마일 거리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지진해일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지진해일을 보러 해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파도는 당신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_____해안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지역 유선TV 방송국이나 뉴스 라디오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사태 동안, 지역 경찰, 소방 그리고 비상활동 임원들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17. 지진해일에 대한 설명

대부분의 지진해일은 바다 속에서, 특히 태평양 가장자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원인이다. 잠재적 위험지역은 해안지역, 항구와 낮은 고도의 만이다. 즉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15m 이하의 지역, 지역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경우, 해발 30m이하의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 * 지진해일은 하나의 파도가 아니라 연속적인 파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위험지역(항구, 만, 바다어귀와 해안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 * 지진해일의 크기는 예측할 수가 없다. 지역에 따라 파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즉 한 지역에서는 작은 파도로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큰 파도로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지진 해일은 위험하다.
- *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 경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60년에 첫 번째 파도가 도착하기 10시간 전에 경고가 발표되었지만, 하와이 힐로에서 61명이 사망했고, 수 백명이 부상당했다.
- *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진해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1983년 5월에 해안 근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고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혼슈 서북쪽 해안이 지진해일에 의해 강타되었고 일본에 있는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 * 지진해일의 접근은 해안선을 따라 해발의 높이가 눈에 띄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예고할 수 있다. 이 신호는 항상 경고로 받아들여야한다.
- * 절대 지진해일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가선 안 된다. 파도가 밀어닥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참고 7】 현장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 ○○ 소방서장(또는 현장대변인) ○○○입니다.

- 오늘 오후 ○○시 ○○분경에 ○○군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및 붕괴사고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고개요'입니다.

- ○월 ○일 ○○시 ○○분에 ○○시 ○○구 ○○동 ○○문화체육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체육시설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동호회원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 사고 당시 체육센터에는 동호회원 ○○명, 센터운영직원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동호회원과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고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현황입니다.

- 총 사상자는 ○○명입니다.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으로 추정(잠정)되고, 정확한 인명피해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건물 안에 있던 ○○명을 구조해 인근 ○○으로 대피시켰습니다.
- 재산피해는 체육센터 1동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에 대비하여 인접 주민들을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추가붕괴 및 화재확장에 대비하여 경찰과 협조하여 주변도로를 폐쇄하고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은 ○○의료원, ○○병원 등에 분산 이송하였고,
- 부상자도 중증도에 따라 ○○의료원과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 정확한 사상자 명단은 나눠 드린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김○○씨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추가 피해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다음 브리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브리핑은 ○○시 ○○분(구체적인 시간 예시)에 지금 이 장소(구체적인 장소 예시)에서 실시하겠습니다.